

# 행형관련법령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Study on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Criminal  
Administration Code

연구자 : 이훈동(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Lee, Hun-Dong

이주일(세명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Lee, Ju-Il

2004. 11. 30.

## 국문 요약

법은 인간에게 유용한 생활도구이어야 한다. 생활도구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좀더 실용적이면서 실생활에 알맞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도구로 개선되어 한다. 있어야 할 법이 무엇인가 이는 현재 있는 법의 문제점을 개선에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법은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행복실현에 봉사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에 기여하는데 그 존재가치가 있다.

전문가만이 법을 독점해서는 안되고, 만약 그리되면 국민의 신뢰상실이 뒤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의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보더라도 법에 있어서 국가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어렵고 까다로운 용어가 널리 법률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을 국민에게 일일이 설명·해설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인권적인 측면에서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이후 지속되어온 법령의 한글화 요청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로 구성되고 이는 곧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령의 우리말화와 순화에 대한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행정관련 법령을 순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쉬운 문장과 용어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법은 한번 고쳐지면 새로 고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새로운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기술이나 용어를 만들어 내는 입법학을 도입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키워드 : 군행형법, 법령용어, 소년법, 입법학, 행형법,

## Abstract

Law must be a necessary tool of livelihood. The tool of livelihood must improve more than practical and easier in life. The purpose of law render services to pursuit of happiness for people and exist to contribute the dignity of man. Therefore,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have a important thing of democratic principles and legalism.

This report make a description of criminal administration code for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All the while, criminal administration code make a description of difficulty and incomprehensibility. Accordingly, people of all thinks that law is difficulty and incomprehensibility and disapprove understanding and approach.

This report make a description of criminal administration code and a related code of this for understanding and approach of people. For this subject, we need to research and study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more than practical and easier people of all.

※ 키워드 : criminal administration code, criminal code, terminology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 목 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9
제 1 절 문제의 제기 .....	9
제 2 절 연구목적과 범위 .....	10
제 3 절 연구방법 .....	11
제 2 장 행정법령의 한글화와 용어순화에 대한 검토 .....	15
제 1 절 행정법의 한글화와 용어순화 .....	15
제 2 절 행정법시행령에 대한 한글화와 용어순화 .....	51
제 3 장 군행형법의 한글화와 용어순화 .....	73
제 4 장 소년법의 한글화와 용어순화 .....	97
제 5 장 소년원법에 대한 한글화와 용어순화 .....	109
제 6 장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한글화와 용어순화 .....	115
제 7 장 보안관찰법의 한글화와 용어순화 .....	119
제 8 장 결 론 .....	145

**【부 록】**

- 행정관련법령의 한글화와 용어순화 대비표 - .....	147
1. 행정법 대비표 .....	148
2. 행정법시행령 대비표 .....	163
3. 준행정법 대비표 .....	173
4. 소년법 대비표 .....	183
5. 소년원법 대비표 .....	189
6.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대비표 .....	194
7. 보안관찰법 대비표 .....	196
참고문헌 .....	20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의 제기

“법은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이어야 한다.” 즉 보통 시민이면 누구나 법률문장을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의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률문장은 대단히 어려워서 시민들은 물론 전문 법조인조차도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된 법률에 대한 욕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사실상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의 현행 법제가 고유한 전통적인 범문화를 계승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일체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법을 수용하여 오늘에 이른 것도 이유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이미 해방 후 50년이 훨씬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는 설득력은 크지 않다. 법률 문장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입법기술상의 문제,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특수성,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는 점은 실정법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법률이 일부 전문가들만의 도구로 전락하여 일반시민은 법과의 별개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법이 시민의 도구임에도 교육 또한 대단히 국한된 영역에서만 실시되어왔고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시민이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고 이를 배울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에게 법에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시민이면 누구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항변하여도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상적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문장을 순화하거나 한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도 건국 직후인 1948. 10. 9.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이 제

정되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로 표기하기 어려운 말은 한자어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글화 또는 우리말화 할 것을 선언하였다. 공용문서인 법률의 경우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 그동안 한글과 한자로 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이 제외되기도 하여 한자를 습득하지 못한 세대가 증가하고 이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에도 한자를 사용하고, 한자적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은 더욱더 법률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몇몇 법에서 한글화 또는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법학자와 국어학자를 중심으로 있어 왔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일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연구성과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행법법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행형관련법이 주로 수형자의 생활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형을 집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어서 일반인이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그 용어의 사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행형관련된 연구나 용어 사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이 일본의 용어를 대부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법률문장에대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제 2 절 연구목적과 범위

법률 문장은 한꺼번에 한글화하거나 우리말로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률문장의 한글화와 순화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쉬운 용어와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명확하게 하여 다른 의문점을 남기지 않는 방향이 최선일 것이라 본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를 가진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했다.

이 글은 현행 행형법령의 본래 의미를 지켜면서 법률문장과 용어를 한글화, 순화하여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법률을 읽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글의 제목은 행형관련법령에 대한 한글화와 용어의 순화이지만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따라서 연구의 대상은 형형법, 행형법 시행령, 균형형법, 소년법 소년원법,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보안관찰법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이 글에서 행형관련 법령에 대한 용어의 순화와 문장의 간결화,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해를 쉽게하려는 목적등을 고려하여 문장이나 용어를 정리하였다. 다만 이 글에서는 용어를 통일화하는 일에 대하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글은 행형관련된 법령에 대한 한글화와 용어순화의 지침을 제공하는 완벽한 것이 아니고 실례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형제도와 관련된 법률문장은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던 다른 영역과는 달리 연구도 거의 없었고, 일반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수용자와 관련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서,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대단히 많았다. 그 용어를 순화하거나 한글화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행형관련 법률은 수용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특히 소년법이나 소년원법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시민에 비하여 훨씬 크고, 법령이 명확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 자명하므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용어의 순화를 통한 쉬운 법률문장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 제 3 절 연구방법

이 글의 연구방법은 행형관련법령에 직접적인 관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어와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글이 쓰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글은 기존에 나와있는 법령의 한글화와 용어순화에 관련된문헌들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예를 들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내지는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로 고치고,<sup>1)</sup> 이해하기 어려움이 없어도 한자어로 표기된 법률용어에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혹은 문장의 간결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 아니면 한자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글화하였다.<sup>2)</sup> 그리고 가장 비중을 둔 부분 중 하나가 법령이 대부분 일본식 문장으로 된 것이 많았다.<sup>3)</sup> 그래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리고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 표현들을 고치고,<sup>4)</sup> 어색하거나 문법적으로 잘못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조사나 의미의 사용을 잘못하거나 문어체<sup>5)</sup>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순화하였다. 그리고 다른 범영역

- 
- 1) 제3장의 “戒護”는 사전적 의미가 “경계하여 지킴, 또는 교도소 안에서 치안을 확보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계호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기 지나치게 어렵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계호”는 그 목적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통하여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풀어서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라고 표제를 고치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바람직하다.
  - 2) 행형법 제8조의 2에 “신입자”라는 한자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이긴 하지만 굳이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새로들어온사람(또는 새로들어온자)”으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1호의”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시작과 끝으로 표현하여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고 한글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타소”는 한자어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다른 곳”으로 하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3) 법령에 자주 등장하는 “...한 者”는 일본의 모노(もの)라고 혼동하는 것을 우리는 음독한 것으로서, 형사법의 여러 규정에 등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인식보다는 “者”의 훈이 놈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를 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sup>1)</sup> 물론 “...한 사람”으로 순화하는 것이 법령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버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람은 법의 해석상<sup>1)</sup> 또 다른 문제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이다.
  - 4) “委託할 수 있다.”에서 위탁이라는 한자어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여도 위탁이라는 한자어는 반드시 필요한 한자어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맞은 용어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본 조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맡길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 권위적인 인상을 가진 법령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치려는 생각과도 일치한다.
  - 5)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문어체로 문장의 간결성을 침해하고 있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문장이 되고 있으므로 “...소년수형자에게는”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문장이 된다.

에서 진행된 연구는 전체 법령을 토대로 하여 위의 조목을 목차로 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글은 그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개별 법령에서 법령의 순서대로 조문마다 검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방식이 법령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글은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조문을 적고 조문마다 문제점을 지적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제 2 장 행형법령의 한글화와 용어순화에 대한 검토

### 제 1 절 행형법의 한글화와 용어순화

**第 3 條** (區分收容의 예외) ①未決收容者를 收容하기 위하여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안에 未決收容室을 둘 수 있다.

②拘置所에 炊事 기타 作業에 필요한 受刑者를 收容할 수 있다.

③矯導所등의 長(이하 “所長”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第2條의 規定에 따라 다른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로 이송하여야 할 受刑者를 6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收容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④第3項의 경우에는 受刑者와 未決收容者, 成年과 少年을 分離收容한다.

[全文改正 1995·1·5]

1) 제3조 제2항에서 구분수용의 예외에 대한 규정에서 “구치소에 취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구치소에 취사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구치소의 취사나 기타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가 그 의미를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炊事”라는 한자어도 한자어의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한자로 표기된 경우에 일반인이 그 음을 읽기 어렵고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취사라는 표현은 군대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용어이다. 취사란 사전적 의미가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풀어서 음식을 장만하거나로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나 일상에서는 급식이라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쉽고 그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급식이라는 용어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취사라는 용어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 취사(取捨)(쓸 것은 쓰고 버릴 것

은 버린다는 의미)라는 용어와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따라서 제2항을 “수형자 중 음식의 장만이나 기타 작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혹은 “수형자를 급식 기타 작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로 고치면 될 것이다.

**第 4 條 (異性の 隔離 <改正 1995·1·5>) 男子와 女子는 隔離收容한다.**

1) 행정법 제4조의 표제에 이성의 격리는 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녀를 분리 또는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표제를 “남녀의 분리(구분)”라고 하고 남자와 여자는 분리(구분)수용한다고 하면 될 것이다. 격리라는 표현은 한자어로 권위적인 용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第 4 條의 2 (矯導所등 設置·운영의 民間委託) ①法務部長官은 矯導所등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法人 또는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에 있어서 委託을 받을 수 있는 者の 資格要件, 矯導所등의 施設基準, 收容對象者의 선정기준, 收容者 處遇의 기준, 委託節次, 國家의 監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1) “처우”라는 표현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다. 처우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추어 대우한다”는 의미이다. 처우와 대우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는 “대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대우”로 용어를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委託할 수 있다.”에서 위탁이라는 한자어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여도 위탁이라는 한자어는 반드시 필요한 한자어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맞은 용어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본 조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맡길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 권위적인 인상을 가진 법령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第 5 條** (矯導所等の 巡廻點檢 등 <改正 1995.1.5>)

- ①法務部長官은 矯導所등을 巡廻點檢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巡廻點檢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999.12.28>
- ②判事와 檢事は 矯導所등을 隨時로 視察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 ③第2項에 規定된 者외의 者가 學術研究 其他 正當한 理由로 矯導所등을 參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여 當該所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改正 1980·12·22, 1999.12.28>
- ④削除<1995·1·5>

1) 행정법 제5조 제1항의 순회점검은 전국을 차례도 돌면서 낱낱이 검사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표현은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1항을 법무부 장관은 전국의 교도소 등을 돌아보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돌아보게 할 수 있다고 고치더라도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항의 시찰할 수 있다는 표현 또한 돌아볼 수 있다고 고치면 될 것이고 제3항에서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에서 참관은 참가하여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으로 고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당해소장”은 해당소장 또는 그냥 그 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고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당연히 살펴보고자 하는 교도소의 소장에게 허가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해”라는 표현은 한자어를 일상적인 용어와 달리 뒤집어 사용함으로써 권위적인 이미지를 가지려는 법령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된다.

**第 6 條 (請願)** ①收容者は 그 處遇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法務部長官 또는 巡廻點檢公務員에게 請願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999.12.28>  
②法務部長官에게 請願하고자 하는 收容者は 請願書を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所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③所長은 請願書を 開封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④巡廻點檢公務員에 대한 請願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巡廻點檢公務員이 口述에 의한 請願을 聽取하는 때에는 矯導官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新設 1995·1·5>  
⑤所長은 收容者の 請願을 阻止하거나 請願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2.28>  
⑥請願에 대한 決定은 文書로서 하여야 하며 그 決定書는 당해 所長이 지체없이 이를 請願人에게 傳達하여야 한다. <新設 1995·1·5>

1) 행정법 제6조 제1항에서 “收容者は 그 處遇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法務部長官 또는 巡廻點檢公務員에게 請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불복은 사전적 의미가 명령 따위에 불복중한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수용자가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청원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자는 그 대우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공무원(또는 제5조제1항의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고치는 것이 적당하고 의미도 쉽게 전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聽取하는 때에는…”에서의 청취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한자어로서 “청원을 들을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당해소장” 해당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혹은 그냥 소장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 8 條의 2** (告知事項) 所長은 新入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告知하여야 한다.

1. 刑期の 起算日 및 終了日
2. 接見 및 書信에 관한 사항
3. 規律·懲罰 및 請願에 관한 사항
4. 기타 收容生活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본조신설 1999.12.28]

1) 행형법 제8조의 2에 “신입자”라는 한자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이긴 하지만 굳이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새로들어온사람(또는 새로들어온자)으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1호의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시작과 끝으로 표현하여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고 한글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第 9 條** (傳染病에 걸린 者の 收容拒絶 <개정 1995.1.5, 1999.12.28>) 所長은 **다른 사람에게** 傳染의 念慮가 있는 疾病에 걸린 者の 收容을 거절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999.12.28>

1) 행형법 제9조는 표제는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한 수용거절”이라고 하면서 “所長은 **다른 사람에게** 傳染의 念慮가 있는 疾病에 걸린 者の 收容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 표제와 내용이 그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겨날 수 있다. 전염병에 걸린자와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는 차이가 있음에도 표제는 전염병에 걸린자라고 하고 내용은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라고 하여 소장이 수용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제를 “전염병등에 걸린자의 수용거절”로 고치고 그 내용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에서 다른 사람을 빼고 “소장은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라고 고쳐도 문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전염의 의미는 당연히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병을 옮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第10條** (寫眞撮影 등) ①所長은 新入者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識別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寫眞撮影·指紋採取·收容者番號指定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收容중인 者에 대하여도 所長이 收容目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1) 행정법 제10조 제1항에서 “다른 사람과의 識別을 위하여…”에서 식별은 사전적 의미가 사물의 성질이나 종류 따위를 구별하는 것으로 변별이라고도 한다. 식별은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식별이란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고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일상적이므로 이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하여…”고 고쳐도 무방할 것이다.

**第11條** (獨居收容) ①收容者는 獨居收容한다. 다만, 必要한 境遇에는 混居收容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999.12.28>  
②混居收容의 境遇에는 收容者의 刑期, 罪質, 性格, 犯數, 年齡, 經歷等を 參酌하여 居室을 區別 收容한다. <改正 1995·1·5>  
③作業場의 就業에 있어서도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1980·12·22>

1) “獨居收容”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독방수용” 혹은 “단독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2) “混居收容”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이지 않아, “共同收容” 또는 “단체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라 생각된다.

3) “혼거수용의”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하여 일본식 표현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동수용을 할” 혹은 “공동수용 할”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에서도 일본식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취업”이라는 한자어도 법령상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반드시 한자어로 표기할 이유가 없고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은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는 등 일상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3항을 “작업장에 일할 경우에도…” 혹은 “작업장에서 일할 때에도…”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12條** (收容者の 移送 <개정 1995.1.5>) 收容者の 收容, 作業, 教化 其他 處遇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當該所長은 法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收容者を 다른 矯導所등에 移送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999.12.28>

1) 행형법 제12조를 비롯하여 “당해소장”이라는 표현은 “당해”의미가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지만 해당이라는 것과 의미상 큰 차이가 없고,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므로 “해당소장” 또는 그냥 “소장”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移送”이라는 한자어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반드시 사용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화하는 것이 좋고 이 경우에도 “다른 교도소등에 옮길 수 있다.”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第 3 章 戒 護**

1) 제3장의 “戒護”는 사전적 의미가 “경계하여 지킴, 또는 교도소 안에서 치안을 확보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계호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

용되는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기 지나치게 어렵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계호”는 그 목적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통하여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풀어서 “교소도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라고 표제를 고치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바람직하다.<sup>6)</sup>

**第14條 (戒具)** ①矯導官은 收容者의 逃走·暴行·騷擾 또는 自殺의 방지 기타 矯導所등의 安全과 秩序維持를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戒具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戒具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5·1·5>  
1. 捕繩  
2. 手匣  
3. 사슬  
4. 顔面 保護具  
③戒具는 懲罰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2.28>  
④戒具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使用節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戒具의 모양·規格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1999.12.28>

1) 행정법 제14조의 “戒具”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해당한다. 계구는 교도소등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교도소등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도구 또는 장비”라고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문의 간결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일상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의 거부감을 주는 것보다는 나은 것으로 생각된다.<sup>7)</sup>

2) 그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제1호의 “포승”은 과거에 사용되어오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낡고 권위적인 표현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포승의 사전적 의미가 “죄인을 묶는데 사용하는 노끈”을 말하므로 그냥 줄 혹은 노끈으로 표현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균형법에서는 이를 “경계감호”라는 표제로 바꾸었다.

7) 균형법에서는 이를 “보호기구”라는 용어로 순화하였다.

3) 제3항의 용어 중 “懲罰”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굳이 현재 이러한 용어가 잘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징벌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앞날을 경계하는 뜻으로 벌을 줌, 또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응징하는 뜻으로 주는 벌”이라고 하여 벌을 말하는 것으로 그냥 “벌의 수단…” 혹은 “벌칙의 수단…”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第14條의2 (強制力の 행사) ①矯導官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強制力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強制力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自殺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自害行爲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逃走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기타 矯導官 및 收容者의 安全과 收容秩序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強制力의 행사에 있어서는 收容者를 制壓하기 위하여 身體的인 有形力을 행사하거나 矯導棒·가스분사기·催淚彈등 保安裝備를 사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強制力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收容者에게 이를 警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狀況으로 警告를 할 만한 時間的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1) 제1항에서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는 표현은 어법상 어색한 면이 있다. 따라서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라고 고치는 것이 어법상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2) 제1호의 경우에 “自殺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自害行爲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의 표현은 “자살 또는 자해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라고 고치는 것이 어법상 자연스럽다.

3) “逃走”라는 한자어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 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아니며, 더욱이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망하거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제4호에서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의 표현은 “현저히 해치거나 해치려 할 때”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이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強制力의 행사에 있어서는 收容者를 制壓하기 위하여 身體的인 有形力을 행사하거나 矯導棒·가스분사기·催淚彈 등 保安裝備를 사용한다.”는 문장에서 문어체적이거나 관형격 조사 “의”의 남발로 인하여 일본식 표현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어법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수용자를 제압할 수 있는 신체적 유형력을...”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強制力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收容者에 게 이를 警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狀況으로 警告를 할 만한 時間的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문장에서도 전항처럼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다만, 경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第15條 (武器의 使用)** ①矯導官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事態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暴行 또는 脅迫에 사용할 危險物을 소지하여 矯導官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暴動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4. 逃走를 하고자 하는 者가 矯導官의 制止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逃走를 하고자 하는 때
5. 第1號 내지 第4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人命·身體·建物 기타 施設과 器機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矯導官은 矯導所등의 안(矯導所등의 밖에서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대한 防護, 收容者에 대한 奪取의 沮止, 建物 기타 施設과 武器에 대한 危險防止를 위하여 緊急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收容者外的 者에 대하여도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新設 1980·12·22, 1995·1·5, 1999.12.28>

③第14條의2第1項 後段 및 同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矯導官의 武器使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신설 1999.12.28>

1) “**해당하는 때에는**”은 문장의 시제가 잘못되어 어법에 맞지 않는 문사이므로 이를 고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해당할 때에는**” 혹은 “**해당할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8)</sup>

2) 제1항 제1호의 “**위해(危害)**”는 사전적 의미가 “**위험한 재해, 특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나 위험**”을 의미한다. ‘위해’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이므로, 그 의미를 풀어 “**생명의 위협을 가하거나**”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문장의 간결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전체문장을 “**다른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라고 고치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이해하기도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3) 제1항 제4호는 “**逃走**”를 하고자 하는 者가 矯導官의 制止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逃走를 하고자 하는 때”라는 표현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표현이 어색하다. 왜냐하면 도주하는자에 대한 저지가 필요한 것이지 도주하고자 하는 자는 교도관이 미리 알고 있으므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지를 가할 수 있고 따라서 “**도망 하는 자로…**”로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후단에도 “**도망하는 자…**”라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법령에 자주 등장하는 “**…한 者**”는 일본의 모노(もの)라고 혼동하는 것을 우리는 음독한 것으로서, 형사법의 여러 규정에 등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인식보다는 “**者**”의 훈이 높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를 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sup>10)</sup> 물론 “**…한 사람**”으로 순화하는 것이 법령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버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람은 법의 해석상<sup>11)</sup> 또 다른 문제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이다.

8) 김문오,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1, 172면 이하 참조.

9) “**도주**”라는 한자어도 반드시 사용해야할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김동욱,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본 우리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46면.

11) 법에서 사람은 일상적인 것과 달리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자연인을 말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第18條 (接見)** ①收容者は 所長の 許可를 받아 다른 사람과 接見할 수 있다.  
②所長은 教化 또는 處遇上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여야 한다.  
③所長은 收容者의 接見에 矯導官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과의 接見은 예외로 한다.  
④接見의 횟수·時間·場所 및 接見參與 기타 接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1) “接見”은 그 의미가 어렵지는 않지만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한 자어로 제1항을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다.”고 고쳐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쉬운 문장이 된다. 이에 따라 제3항은 “...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만날때에...”로 고치고 “...변호인과 만날 때에는 예외...”로 고치면 될 것이다.

2) “處遇上...”은 대우상으로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에 해당할 것이다.

3)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도 문어체로 어색한 문장이므로 이를 “소장이 참여시킬 수 있다.”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4) 제4항도 마찬가지로 “만나는 횟수...만남에 참여 기타...만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sup>12)</sup>

**第18條의2 (書信)** ①收容者は 所長の 許可를 받아 다른 사람과 書信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②所長은 教化 또는 處遇上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여야 한다.

12) 우선 어색해 보이는 것은 오랫동안 한자어와 문어체적인 문장에 익숙한 탓이다.

③所長은 收容者의 書信을 檢閱할 수 있다. 다만, 第66條第2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과의 書信은 예외로 한다.**

④**書信의 檢閱·發送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所長이 교부를 許可하지 아니한 書信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釋放할 때 本人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書信의 檢閱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1) 본 법에 사용되고 있는 서신은 과거에 사용되어 왔던 것이지만, 지금을 오히려 편지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편지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여도 해석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2) 제2항의 “처우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우상”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따라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과의 書信은 예외로 한다.”의 문장에서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어 문법적으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고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각호 이외의 부분에서 본문에서 규정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4) 제4항의 경우에도 “書信”은 편지로 고치고, “발송”이라는 한자어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 이지만 본문의 내용에서 반드시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발송’은 보내는 것으로 교부는 받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장의 간결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별 차이가 없다면 한글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편지의 검열·보내는 것 및 주는 것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第19條** (書信等の 領置) 收容者에 交付된 書信 其他 文書는 本人이 閱覽한 後 이를 領置한다. 다만, 敎化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999.12.28>

1) “영치(領置)한다”라는 표현은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지만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사전적 의미는 “형사 소송법상, 법원이나 수사 기관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등이 유류(遺留)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처분”을 말하는 바, 이를 일상적인 용어인 보관이라고 고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수용자에 교부된…서신” 수용자에는 조사가 잘못 사용되어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수용자에게”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交付’라는 한자어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법령상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어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문장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용자에게 주어진 혹은 보내진”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본인이 閱覽한 後”에서도 ‘열람’이라는 한자어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 이지만 반드시 사용이 불가피한 한자어도 아니므로 이를 의미에 맞게 한글화하는 것이 옳고, ‘본인이 보다는 의미 혹은 읽다’로 고치더라도 의미가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後’라는 한자어도 한글화하여 ‘뒤에’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자어는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없거나 해석상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나 혹은 문장의 간결성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필요가 없다.

4) 본문의 후단 “다만 敎化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는 문장도 문어체로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이를 문장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第20條** (給與) ①收容者에게는 일정한 衣類·寢具 기타 生活用品을 給與한다.

②衣類·寢具 기타 生活用品의 給與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1) 침구(寢具)는 이부자리나 베개를 말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이므로 이를 한글로 침구라고 표현하여도 의미상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침구라는 한자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는 아니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침구는 “이부자리”로 고쳐도 의미상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이부자리고 고치면 될 것이다. 더욱이 군행형법 제17조에서 이부자리라고 개정하였으므로 행형법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給與”는 일한 대가 혹은 급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수용자에게 의류나 침구 및 생활용품은 일한 대가 혹은 급료의 개념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료’라는 표현은 그 의미상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말로 풀어서 “준다”고 하면 적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용자에게 일정한 의류, 이부자리 기타 생활용품을 준다. 혹은 지급한다”로 고치는 것이 문장의 내용과 일치한다.

3) 제2항의 경우에도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하지 말고 문장을 일본식이 아닌 우리 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류…생활용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21條** (給與 <改正 1995·1·5>) ①收容者에게는 體質, 健康, 年齡과 作業等を 參酌하여 必要한 食糧을 給與한다. <改正 1995·1·5>

②食糧給與의 基準은 法務部令으로 定한다.

1) 제1항의 “參酌하여”는 사전적 의미가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수형자의 사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 수용자의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참작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덜 일상적이고 일상적으로 고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만 차라리 참고라는 용어가 이해하기는 더 쉽다고 생각되고 보통의 경우에 이해하기 쉬운 “참고하여”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평이한 용어의 사용이 될 것이다.<sup>13)</sup>

2) “급여”(給與)는 “금품 등을 준다는 의미와 관공서 등에서 지급하는 급료”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해되기는 급여란 일정한 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료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급여는 지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급여라는 것은 일한 대가로 식량을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식량을 급여하는 것이 일한 대가를 주는 것이고 일하지 않으면 식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 혹은 “준다”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3) 제2항의 경우에도 “식량급여”는 “식량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도 쉽다.

**第31條 (教誨) ① 削除<1980·12·22>**

②受刑者가 그가 信奉하고 있는 宗派의 教義에 依한 特別教誨를 請願할 때에는 當該所長은 그 宗派에 委囑하여 教誨를 할 수 있다.

1) 교회(教誨)라는 한자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로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용어이다. ‘교회’의 사전적 의미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가르치고 일깨운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다. 이는 제2항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교화의 종류이다. 교회는 한글로 표기할 경우 특정한 종교의 교당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오해도 있으므로, 장차 한글전용으로 갈 경우

13) 참작은 “각종 사정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감안이라는 말과도 비슷하다(박영도, 법령용어사례집-유사법령용어-, 한국법제연구원, 2001, 189면 이하). 따라서 참작이라는 용어는 “고려”로 바꾸는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용어를 “고려”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정완 외 공저, “형사법령용어의 순화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44면 참조).

그 표현을 어떻게든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풀어 “종교에 의한 교화” 혹은 “종교적 가르침(교육)”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當該”는 법령상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 이지만 일상적으로는 “해당” 혹은 “그” “바로 그”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권위적이지도 않으므로 한자를 뒤집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第32條 (教育) ①無教育者 또는 少年受刑者에 對하여는 年齡, 知識程度 其他事情을 參酌하여 그에 상응한 教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心身微弱者 또는 老衰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개정 1999.12.28>**

1) 제1항의 “老衰者”는 “늙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한 자”를 말하는데 보통은 노쇠자란 노인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으로 고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보통 “노약자”라는 표현이 일상적인데 이는 노인과 약자를 포함한 즉 노약자는 어린아이도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교도소의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므로 노약자라고 표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일반인의 인식 속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문어체로 문장의 간결성을 침해하고 있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문장이 되고 있으므로 “...소년수형자에게는” 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문장이 된다.

3) 제1항의 “參酌하여”는 사전적 의미가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수형자의 사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 수용자의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지급한다는 의미 이다. 참작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덜 일상적이고 일상적으로 고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만 차라리 참고라는 용어가 이해하기는 더 쉽다고 생각되고 보통의 경우에 이해하기 쉬운 “참고하여”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평이한 용어가 된다.<sup>14)</sup>

14)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고려”로 바꾸어도 좋을 것이다.

**第33條의2**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視聽) 所長은 收容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聽取와 텔레비전 視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本條新設 1995·1·5]

1) “라디오의 청취나 텔레비전의 시청”이라는 표현은 알기 쉬운 한자어이지만 굳이 청취나 시청이라는 한자어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냥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게 할 수 있다”라고 고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sup>15)</sup>

2) 그리고 텔레비전은 외래어 표기법상 “텔레비전”으로 고쳐야 한다.

3)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법이 어색하여 의미의 전달이 정확하지 않고 따라서 문장을 간결하고 어법에 맞게 손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에 따라서...” 라고 고치는 것이 간결성과 어법에 맞아 이해하기 쉽다.

**第33條의3** (執筆) ①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文書 또는 圖畫를 작성하거나 文學·學術 기타 사항에 관한 執筆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矯導所등의 安全과 秩序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教化上 부적당한 경우

②執筆用具의 관리, 執筆의 時間·場所, 執筆한 文書 등의 보관 및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1) “문서 또는 圖畫를 작성하거나...”에서 문서는 작성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지만 도화를 작성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문장의 간결성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도화는

15) 군행법에서 개정된 내용이므로 행정법도 이렇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상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해석상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도화는 우리말의 그림으로 바꾸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도 쉽다. 따라서 “문서의 작성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에서는 시제가 맞지 않아 어색한 문장이다. 따라서 시제를 맞게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 맞다.

3) “執筆用具”에서 집필용구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아니고 오히려 ‘집필도구’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라고 본다.

**第34條** (教育規程 등) **教育의 科目・時間과 新聞・圖書의 閱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1) “教育의 科目・時間과 新聞・圖書…” 교육의 과목이란 표현은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한 일본식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육할 과목…”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第35條** (作業) ①作業은 受刑者の 年齡, 刑期, 健康, 技術, 性格, 趣味, 職業과 將來의 生計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課한다.  
②受刑者の 社會復歸와 技術習得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外部企業體등에 通勤作業하게 할 수 있다. <新設 1995・1・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勤作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新設 1995・1・5>

1) 제1항의 “參酌하여”는 사전적 의미가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수형자의 사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 수용자의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지급한다는 의미 이다. 참작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덜 일상적이고 일상적으로 고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만 차라리 참고라는 용어가 이해하기는 더 쉽다고 생각되고 보통의 경우에 이해하기 쉬운 “참고하여”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평이한 용어의 사용이 될 것이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外部企業體 등에 通勤作業하게 할 수 있다.”는 어법상 시제와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어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을 시킬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의미를 전달하는데 쉽고 문법적으로 올바르다.

3)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通勤作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는 문장도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어 어색한 문장이다. 따라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근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조사의 사용이 문법적으로 맞아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36條** (休日の 作業) ①國家慶祝日, 日曜日 其他 公休日에는 作業을 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炊事, 清掃, 看護, 經理 其他 特히 必要한 作業은 例外로 한다.<개정 1999.12.28>  
②作業時間과 臨時作業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

1) “취사”는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음식을 장만하는일” 혹은 “급식”으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이다. 그리고 청소는 한글로 표기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한자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2) “作業時間과 臨時作業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구조는 아니지만 어법상 주어를 앞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 맞다.

**第37條** (作業의 免除) 受刑者중 父母·配偶者·子女 또는 兄弟姉妹의 死亡通知를 받은 者는 2日間, 父母 또는 配偶者의 忌日은 1日間 作業을 免除한다. 다만, 당해 受刑者가 作業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作業을 免除한다.”는 표현은 어법상 어색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 “작업에서 면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2) “...당해 受刑者가 作業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의 문장은 당해수형자를 해당수형자로 바꾸고, 시제가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해당 수형자가...계속할 것을 원할 때에는...”로 고치면 이해하기 쉽고, 문법적으로도 맞는 문장이 된다.

**第38條** (申請에 依한 作業) 禁錮와 拘留刑을 받은 者에게는 申請에 依하여 作業을 課할 수 있다.

1) “禁錮와 拘留刑을 받은 者에게는 申請에 依하여 作業을 課할 수 있다.” 불필요한 조사와 한자식 표현으로 문장이 일상적이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본문의 의미가 금고형이나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업에 부과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금고와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에 작업을 과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어법상 자연스럽다.

**第39條** (作業收入等) ①作業收入은 國庫收入으로 한다.

②受刑者에게는 法務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作業의 種類, 成績과 行刑成績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作業賞與金を 支給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第2項의 作業賞與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支給한다. 다만, 本人의 家族生活扶助 또는 教化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釋放前이라도 그 一部 또는 全部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1980·12·22, 1999.12.28>

1) “作業收入은 國庫收入으로 한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2) “受刑者에게는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事情을 參酌하여…”의 문장에서는 문장이 간결하지 못하고 어법상 맞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앞부분을 “법무부장관이 규정에 따라서 수형자에게…기타 사정을…”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그리고 뒷부분의 “참작하여”는 “고려”하여 혹은 “참고”하여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평이한 용어이다.

3) “…作業賞與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支給한다.”라는 자동사를 사용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피동사인 “지급된다.”고 고치는 것이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第40條** (慰勞金, 弔慰金) ①受刑者가 作業中 負傷을 당하거나 障礙人이 된 때 또는 死亡한 때에는 그 情狀을 參酌하여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慰勞金 또는 弔慰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慰勞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弔慰金은 그 相續人에게 各各 支給한다.

1) “…情狀을 參酌하여…法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문장은 우선 정상이라는 한자어는 법령상 널리 사용되는 한자이지만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오히려 “사정”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이므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이다.

2) “참작하여”는 사전적 의미가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수형자의 사정을 참고하여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참작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아니며, 일상적으로 고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만 차라리 참고라는 용어가 이해하기는 더 쉽다고 생각되고, 보통의 경우에 이해하기 쉬운 “참고하여”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될 것이다.

**第41條** (携帶金品の 領置) ①收容者の 携帶金品은 矯導所등에 領置한다. 다만, 領置의 價値가 없는 것은 例外로 한다. <改正 1995·1·5, 1999.12.28>  
 ②第1項 但書の 規定에 該當하는 物品을 本人이 相當한 期間內에 處分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廢棄할 수 있다. <改正 1980·12·22>

1) “收容者の 携帶金品은…”은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한 일본식 표현이다. 그리고 휴대금품에서 “휴대”는 형법상 그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문에서 휴대금품이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한자어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수용자가 가지고 있던 금품은…” 혹은 “수용자가 지닌 금품은…”으로 고치는 것이 한글화의 취지에 맞다.

2) “다만, 領置의 價値가…”에서 관형격조사 의(の)가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다. 따라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영치”라는 한자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이지만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고 따라서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강제성을 띄고 있어 보관이라는 표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도소등에 보관한다고 하면 별 차이 없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일상적인 용어로 이해하기도 쉽다. 따라서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은 例外로 한다.”고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3) “…物品을…本人이…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문 의 의미는 영치할 가치가 없는 물건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장이 간결하지 못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으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第42條** (收容者에 對한 金品交付 <改正 1995·1·5>) ①收容者에게 金品の 交付를 申請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特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事由가 없는 限 當該所長은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1995·1·5>

②所長은 收容者에게 送付된 金品으로써 本人이 受領을 拒否하거나 또는 그 物品을 本人에게 交付함이 特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이를 그 送付人에게 還付한다. <改正 1995·1·5>

③所長은 第2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 送付人 또는 그 送付人의 住所가 不明한 境遇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한 後 6月이 經過하여도 交付를 請求하는 者가 없을 때에는 그 金品은 國庫에 歸屬된다. 다만, 價値가 없다고 認定되는 物品은 廢棄할 수 있다. <改正 1980·12·22, 1999.12.28>

1) 제1항의 당해소장은 소장 또는 해당소장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고 보다 익숙한 표현이어서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2) 제2항에서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이 규정에서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오히려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어색하므로, 이를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을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뒤의 문장도 이를 “송부인에게 환부한다”는 한자식의 표현은 이해에 어려움은 없지만, 굳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보낸 사람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제3항의 “送付人”이라는 한자어는 “보낸사람”으로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는 또한 한자식 표현으로 한자를 사용해야만 의미를 전달하거나 문장을 간결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습관적으로 한자어를 사용한 문장으로 “돌려달라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으로 한글로 사용하여도 어색함이 전혀 없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한글순화의 목적에도 맞다.

4) “第2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조사가 잘못 사용되어 어법에 맞지 않고 또한 문장의 간결을 위하여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라고 하고 있지만, 본문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고, 따라서 “소장은 물품을 돌려줄 경우...” 혹은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라고 하여 ‘있어서’를 삭제하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고, 어법에도 맞다.

**第43條** (領置金品の 還付) ①領置金品은 釋放할 때에는 本人에게 還付한다.  
 ②死亡者의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相續人에게 交付한다. 다만, 死亡後 1年을 經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된다. <개정 1999.12.28>  
 ③逃走者의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그의 配偶者나 直系尊屬 또는 直系卑屬에게 交付한다. 다만, 逃走後 1年이 經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된다. <개정 1999.12.28>

1) 제1항의 “還付한다”는 법령에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그 의미를 일상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꼭 한자어를 사용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돌려 준다”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제2항과 제3항의 “交付한다”한다는 준다는 의미이므로 “상속인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3) “死亡者의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相續人에게 交付한다.”의 문장은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어 어색한 문장이다. 그러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상속인이 청구하면 교부<sup>16)</sup>하여야 한다.”<sup>17)</sup>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4) “逃走者의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그의 配偶者나 直系尊屬 또는 直系卑屬에게 交付한다. 다만, 逃走後 1年이 經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된다.”는 문장에서 “도주자”라는 한자어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반드시 한자어로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자”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문장의 어법이 잘못되어 어색하므로,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도망자의 유류금품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청구하면 교부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16) “교부하여야 한다.”도 역시 한자식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문장으로서 한글로 바꾸어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주어야 한다.”고 고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7) “상속인이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한다.”로 고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第44條** (分類·處遇 및 歸休) ①所長은 受刑者를 個別的으로 審査分類하여 그에 相應한 處遇를 하여야 한다.

②行刑成績이 優秀하고 社會生活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受刑者에 대하여는 開放施設(逃走防止를 위하여 통상적인 收容設備 또는 措置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 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收容하여 社會生活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處遇를 할 수 있다. <新設 1995·1·5>

③1年以上 服役한 受刑者로서 그 刑期の 3分の 1(無期刑의 경우에는 7年)을 경과하고 行刑成績이 優秀한 者에 대하여는 1年중 10日이내의 歸休를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歸休期間은 刑執行期間에 算入한다.<개정 1999.12.28>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受刑者에 대하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歸休許可要件 및 歸休期間에 불구하고 5日이내의 特別歸休를 許可할 수 있다. <신설 1999.12.28>

1. 直系尊·卑屬, 配偶者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이 死亡한 때
2. 直系卑屬의 婚禮가 있는 때

⑤分類·處遇 및 歸休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全文改正 1980·12·22]

1) 제1항에서 “...그에 相應한 處遇를 하여야 한다”는 한자식 표현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굳이 이러한 한자식 표현을 사용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알맞는 대우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더 쉽다고 생각된다.

2) 제3항의 “...1년중 10일 이내의 歸休” 여기서 귀휴는 사전적 의미가 “고향이나 집에 돌아와 쉬. 특히, 근무 중에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휴가를 얻어 집에 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귀휴는 휴가를 얻어 고향집에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휴가와는 사전적 의미가 다르지만 일상적으로 휴가란 말속에는 군대 등에서 일정기간 집으로 보내지는 것도 보통 “휴가”라고 표현하므로, 우리에게는 귀휴라는 말보다는 휴가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고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휴가라고 표현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귀휴’라고 한다고 하여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행정성적이 좋은 자 중에서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3) “歸休許可要件”…“歸休期間”…“特別歸休.”는 귀휴라는 표현이 “휴가허가요건”, 휴가기간…특별휴가 등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된다.

4) “…사망한 때”에서 시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망했을 때” 그리고 “…婚禮가 있는 때”라는 표현도 혼례라는 한자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결혼식이 있을 때”로 고치는 것이 시제를 맞추고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第45條** (規律 등) ①收容者는 矯導所등의 安全과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規律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收容者는 所長이 정하는 日課時間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收容者는 矯導官의 職務上 指示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1) “…收容者는 矯導所등의”에서 조사 “의”는 일본식 표현으로 잘못이다. 처소격 조사인 에서를 사용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수용자는 교도소 등에서”라고 하는 것이 옳다.

**第46條** (懲罰) ①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를 한 때에는 懲罰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刑法·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등의 刑罰規定에 저촉되는 行위  
 2. 自害行爲  
 3. 정당한 이유없이 作業·教育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行위  
 4. 凶器·酒類 등 許可되지 아니하는 物건을 製作·소지·사용·授受 또는 은닉하는 行위  
 5. 기타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規律을 위반하는 行위  
 ②懲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80·12·22, 1995·1·5, 1999.12.28>

1. 警告
  2. 1月이내의 新聞 및 圖書閱覽의 제한
  3. 2月이내의 申請에 의한 作業의 停止
  4. 作業賞與金の 전부 또는 일부의 削減
  5. 2月이내의 禁置
- ③ 懲罰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賦課할 수 없으며, 행위의 動機 및 輕重, 행위후의 情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收容目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1999.12.28>
- ④ 懲罰을 賦課함에 있어서 必要한 基準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개정 1999.12.28>

1) 제1항 제4호의 “授受하거나 隱匿하는 행위”의 한자어는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사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그 의미를 풀어서 사용하여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고 의미의 전달이 어려울 것이 없으므로 “주고받거나 숨기는 행위”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제1항의 “參酌하여”는 사전적 의미가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수형자의 사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 수용자의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참작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덜 일상적이고 일상적으로 고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만 차라리 참고라는 용어가 이해하기는 더 쉽다고 생각되고 보통의 경우에 이해하기 쉬운 “참고하여”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평이한 용어의 사용이 될 것이다.

3) “행위를 한 때에는...”에서 시제를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행위를 할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다.

4) “懲罰을 賦課할...”에서 징벌을 부과할은 어떤 법문에서는 “과할” 어떤 법문에서는 부과할이라고 하여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저촉되는 행위”라는 표현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차라리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 동법 제1항 제5호에서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2月이내의 申請에 의한 作業의 停止”는 관형격조사 노(の)에 해당하는 ‘의’를 남발하여 일본식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2월이내<sup>18)</sup>에서 신청한 경우 작업의 정지”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7) “作業賞與金の 전부 또는 일부의 削減”에서도 관형격조사 노(の)에 해당하는 ‘의’를 남발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작업상여금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이라고 고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8) “1月이내의 新聞 및 圖書閱覽의 制限”이라는 문장은 관형격조사 노(の)에 해당하는 ‘의’를 남발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1월 이내에서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금치(禁置)”라는 한자어는 가두어 둔다는 의미를 지닌 것인데 사전에서도 없는 어려운 한자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는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치는 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수용자를 교도소 등에서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는 벌칙이므로 금치를 “가두어 둘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문장이 된다.

10) “懲罰을 賦課함에 있어서…” 문어체로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징벌을 부과할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懲罰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이 문장은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二重, 혹은 중복이라고 하기 쉬운 법령에서 “거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글화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거듭하여가 어찌면 “중복”하여 라는 한자어 보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글화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8)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일상적으로는 2월과 2개월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다.

第47條 (懲罰委員會) ①懲罰은 懲罰委員會의 議決로써 定한다.

②懲罰委員會는 3人以上 5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長은 當該所長이 되고 委員은 委員長이 當해 矯導所등의 副所長과 課長(支所의 경우에는 7級 이상의 矯導官) 및 矯正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外部人士中에서 任命 또는 위촉한다. <改正 1995·1·5, 1999.12.28>

1) 제2항의 당해소장은 그냥 소장 또는 해당소장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해”는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해당이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타당하다.

2) “해당 교도소등의 부소장과 과장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의 문장의 의미는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도소장이 되고 위원은 부소장과 과장을 포함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하여 구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부소장과 과장(지소에서는 7급이상의 교도관)은 당연히 위원이 된다는 의미임에도 문맥이 어색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해당교도소 등에서 부소장과 과장을 포함하고 외부인사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한다.”고 하는 것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 된다.

3) 제2항 뒤의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의 사전적 의미가 “남에게 맡겨 부탁한다”이고 임명은 “직무(일)를 맡긴다”는 의미로 사전적으로 그 차이를 크게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임명과 위촉이 의미가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임명은 보통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촉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므로 이를 “임명 또는 위탁한다”라고 하여도 훨씬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표현이 될 것이다. 아니면 임명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여 “외부인사중에서 직무를 맡긴다.”고 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 “懲罰은 懲罰委員會의 議決로써 定한다.”의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순서가 바뀌어 어법이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지 않지만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징벌위원회는 의결로써 징벌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도 쉬운 문장이 된다.

**第53條** (釋放) 收容者의 釋放은 赦免, 刑期終了 또는 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 依하여 關係書類를 調査한 後 所長이 이를 行한다. <改正 1995·1·5>

1)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는 표현은 관계서류라는 표현보다는 “관련서류”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좀더 쉽지 않을까 한다.

2) “收容者의 釋放은 赦免, 刑期終了 또는 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 依하여 關係書類를 調査한 後 所長이 이를 行한다.”의 전체 문맥도 조사의 사용이나 어법이 잘못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어법에 맞게 고치고 조사의 사용도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장은 사면…형기만료 또는 권한…명령에 따라서 관계서류를 조사한 뒤 수용자를 석방한다.”고 고치는 것이 문장의 어법에 맞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第54條** (釋放時期 <개정 1999.12.28>) ①赦免, 假釋放, 刑의 執行免除, 減刑에 依한 釋放은 그 書類 到達後 12時間以內에 行하여야 한다.

②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 依한 釋放은 書類 到達後 5時間以內에 行하여야 한다.

③刑期終了에 依한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行하여야 한다.

1) “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 依한…”은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하여 일본식 표현이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한이 있는 자가 명령한 석방은…”으로 관형격 조사 “의”를 주격조사 “가”로 고치는 것이 옳다.

**第55條** (被釋放者의 收容) 被釋放者가 疾病으로 因하여 歸家하기 困難한 때에는 本人의 請求에 依하여 一時 矯導所등에 收容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피석방자가…”도 굳이 피석방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석방된자”혹은 석방되는자로 그 의미를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쉽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글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석방되는자가 병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이 요구하면 잠시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第56條** (歸家旅費等) 被釋放者가 歸家旅費 또는 衣類를 所持하지 아니한 때에는 旅費 또는 衣類를 當해 矯導所 등에서 貸與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999.12.28>

1) “...당해 교도소등에서 대여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굳이 한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여할 수 있다는 “빌릴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한글순화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도 의미를 전달하거나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2) “所持하지”는 법령상 널리 사용되는 한자이지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한자어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 없을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해당 교도소 등에서 빌릴 수 있다.”로 고쳐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색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3) “歸家旅費”는 문장의 간결성을 위하여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이를 풀어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 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평이한 용어라고 생각된다.

**第57條** (死刑의 執行) ①死刑은 矯導所와 拘置所 안의 死刑場에서 執行한다. <改正 1995·1·5>  
②國家慶祝日, 日曜日 其他 公休日에 死刑을 執行하지 아니한다.

1) “死刑은 矯導所와 拘置所안의…”에서 “구치소 안의”는 일본식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 안에 있는…사형장에서 집행한다.”로 고쳐야 한다.

**第58條** (屍體의 假埋葬等 <개정 1999.12.28>) 收容者가 死亡한 때에 그의 親族 또는 親知가 그 屍體를 即時 引受하지 아니하면 이를 假埋葬하여야 하며 必要한 때에는 火葬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999.12.28>

1) 본조의 경우에는 “…수용자가 死亡한 때에…”에서 시체를 고치는 것이 적절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수용자가 사망했을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第59條** (屍體, 遺骨의 交付) 屍體 또는 遺骨은 請求에 依하여 親族 또는 親知에게 交付한다. 다만, 合葬後에는 交付를 請求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1) 본 조에서 시체나 유골을 청구하여 교부 받는 자는 친족이나 친지이므로 주어를 앞으로 가져오는 어법이 옳다. 따라서 “친족 또는 친지가 시체 또는 유골을 청구하면 교부한다.”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第61條** (屍體의 解剖) 收容者의 屍體는 學術研究上 必要한 때에는 本人의 遺言 또는 相續人의 承諾이 있는 境遇에 限하여 解剖하기 爲하여 病院 其他 研究機關에 交부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999.12.28>

1) 본조에서 수용자의 시체를 학술연구나 해부하기 위하여 병원에 보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 본인이나 상속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본인이나 상속인의 승낙이 전제되는 행위

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앞으로 보내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도 쉽다. 따라서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으면 수용자의 시체를 학술연구상 필요한 해부를 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연구 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교부라는 한자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교부이지만 시체를 기증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기증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第64條** (未決收容者의 分離收容) 未決收容者로서 事件에 相互關聯이 있는 者는 分離收容하고 相互接觸을 禁止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1) 본조는 어법이 어색하여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법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조의 의미는 미결수용자는 보통은 공동수용 하지만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된 자인 경우에 함께 수용하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조작하거나 서로 협의하여 재판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상호”라는 한자어는 널리 법령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용되고 있지만 법령의 한글화하려는 뜻에는 맞지 않고 따라서 이도 가능하면 한글화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여도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건에 상호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하고 서로 접을 금지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65條** (未決收容者의 理髮<改正 1995·1·5>) 未決收容者의 頭髮과 수염은 特히 必要한 境遇 以外에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改正 1995·1·5, 1999.12.28>

1) “頭髮”은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는 아니고 한자로 쓰여진 경우 일반인이 읽기도 어려운 한자어로 고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두발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도 않고, 해석의 문제를 남기는 것도 아니므로 “머리카락”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머리카락이라고 표현하여도 무방하고 문장의 간결성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

**第66條** (辯護人과의 接見 및 書信) ①未決收容者와 辯護人(辯護人이 되려고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接見에는 矯導官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聽取 또는 錄取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未決收容者를 監視할 수 있다.

②未決收容者와 辯護人과의 書信은 檢閱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矯導所등에서 상대방이 辯護人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書信에 麻藥 등 所持禁止品이 포함되어 있거나 逃走, 證據湮滅, 矯導所등의 規律과 秩序의 파괴 기타 刑罰規定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疑心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1999.12.28]

1) “聽取 또는 錄取”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로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는 아니고 반드시 한자로 표기하여야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굳이 어려운 한자어인 聽取나 錄取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고, 그 표현을 “듣거나 또는 녹음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도 칭취나 녹취보다는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2) “書信”은 법령상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자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아니고, “편지”라는 표현이 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도 쉽다. 서신을 편지라고 하여도 해석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3)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문장은 시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다.

4) “逃走”라는 한자어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므로 “도망”이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67條 (作業과 敎誨)** ①未決收容者에 對하여는 申請이 있는 境遇에 限하여 作業을 課하거나 敎誨를 行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第31條·第35條第1項·第36條·第37條·第39條 및 第4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決收容者의 作業과 敎誨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1995·1·5>

1) “未決收容者에 對하여는 申請이 있는 境遇에 限하여 作業을 課하거나 敎誨를 行할 수 있다.”에서 敎誨(敎誨)라는 한자어는 일상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로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용어이다. ‘敎誨’의 사전적 의미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가르치고 일깨운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다. 종교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敎誨의 종류이다. 敎誨는 한글로 표기할 경우 특정한 종교의 敎堂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오해도 있으므로, 장차 한글전용으로 갈 경우 그 표현을 어떻게든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풀어 “종교에 의한 敎誨” 혹은 “종교적 가르침(敎育)”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sup>19)</sup>

2) 제1항의 경우 전체적인 문장에서 주격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본 항의 의미는 미결수용자는 자신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부과하거나 종교적인 것을 통한 교정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데 문맥이 어색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결수용자는 신청한 경우에만 작업을 부과하거나 종교에 의한 敎誨를 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고 이해하기도 쉬운 것이다.

3)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決收容者의 作業과 敎誨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어있다.

19) 표제어 “敎誨”는 어떻게 고치는 것이 적당할지가 문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교에 의한 敎誨”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 제1항에서 규정한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종교에 의한 교화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第68條** (留置場) 警察官署에 設置된 留置場은 未決收容室에 準한다.

1) “設置된”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한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한글로 표현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설치 된”은 “있는”이라고 고치면 될 것이다.

## 제 2 절 행정법시행령에 대한 한글화와 용어순화

**제 3 조** (판사등의 시찰) ①판사 또는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교도소등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는 조사의 사용이나 시제를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판사 또는 검사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교도소 등을 시찰할 때에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문장도 한글로 전용되었을 뿐 조사의 사용이나 조사등을 일본식으로 잘못사용하고 있고

시제도 틀려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따라서 “소장이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에게 시찰을 할 곳을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적어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제 4 조 (참관) ①소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의 참관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그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1) “소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의 참관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그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문의 경우 전체적으로 조사의 사용이나 문장형태가 일본식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따라서 “소장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를 참관하는 것을 허가할 때에는 그 성명·직업·주소…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문맥이 어법에도 맞아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2) “소장은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하여야 한다.” 는 문장이 전체적으로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어 문법에 맞지 않고,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그러므로 “소장은 참관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아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3)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문장에서 “규정에 의하여”는 일본식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규정에 따라서”로

고쳐야 할 것이다.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은 문장이 어색하므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으로 고치는 것이 문장이 간결하고 조사의 사용이 맞게 되어 타당하다.

**제 6 조** (순회점검공무원에의 청원) ①소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술청원을 받은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1) 제6조의 표제에서 “순회점검공무원에의 청원”은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되어 어색하다. 차라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이라고 고치는 것이 조사의 사용이 올바르다.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의 문장에서 일본식표현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공무원에게 청원을 하려는 수용자가 있으면 그 성명을…”로 고치는 것이 문맥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는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제 7 조** (순회점검공무원의 직책등) ①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인정되는 것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못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한 때에는 소장은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

1)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일본식 조사의 사용을 고치는 것이 좋다. “...순회점검공무원이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문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문장이 된다.<sup>20)</sup>

2)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sup>21)</sup> 것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어법에 맞게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문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규정에 따라서 받은 청원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문장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한 때에는 소장은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문장에서 다른 법문과 달리 어순을 바꾸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어려운 문장이다. 따라서 다른 문장처럼 주어를 앞으로 하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순회점검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한 때에는 소장은 청원인에게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서를 전달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문맥을 간결히 하고 이해하기 쉬운 어법으로 고치는 것이 된다.

---

20) 이 규정은 개정 1995.8.26, 2000.3.28에 2차례 개정되었지만 문맥을 평이하게 바꾸는 것에는 무관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1) 여기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에서 본문의 의미를 보면 순회공무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보고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청원은 순회공무원이 인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관적으로 중요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굳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9 조** (소장과의 면담) ①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0.3.28>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1)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의 문장에서 수용자는 소장에게 수용시설내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개인사정이 있으면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우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아니므로 대우라고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신상”이란 한자어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자로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한자어이지만 꼭 사용이 필요한 한자어는 아니고 일신상이란 의미가 개인의 신상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상적이므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용자는 대우 및 개인사정에 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2) 제2항의 내용은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으면 그 성명을 면담부에 적고 기재한 순서에 따라서 면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수용자에게 한 면담의 요지를 면담부에 적어야 한다는 것인데 문장이 간결하지 못하고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서 면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그 성명을 면담부에 적고 순서 대로 면담하여야 하며 해당 수용자와 면담한 요지를 면담부에 적어야 한다.”<sup>22)</sup>라고 고치는 것이 한글화하고 의미를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22) “기재하여야 한다”에서 기재라는 한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본 문에서 꼭 사용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재”는 적는다. 혹은 기재라는 표현보다는 기록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이므로 기록하여야 한다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10조** (신입자의 인수) ①소장은 수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신입하는 자(이하 “신입자”라 한다)를 인수한 때에는 그를 인수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수서를 그 신입자의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에는 신입자의 성명·연령 및 인수년·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입자”라는 한자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이긴 하지만 굳이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새로들어온사람(또는 새로들어온자)으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2) “소장은 수용자로서<sup>23)</sup> 교도소등에 신입하는 자(이하 “신입자”라 한다)를 인수한 때에는 그를 인수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수서를 그 신입자<sup>24)</sup>의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의 문장은 어법이 맞지 않고, 시제 등에서 어색하여 어려운 문장이 되고 있다. 본문의 의미가 새로들어온 수용에 대하여 교도관이 인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호송인에게 교부한다는 것이다. 평이한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도 쉽다. 예를 들어 “소장은 교도소 등에 새로 들어온 수용자를 인수할 때에는 그를 인수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인수서를 호송인에게<sup>25)</sup> 교부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에는…”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인수서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23) 자격격 조사 “…로서”는 수용자를 뒤로 보내면 필요 없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로서와 로써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가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

24) 종래의 당해신입자를 “그 신입자”로 용어를 순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5) “신입자의 호송인에게”에서 문장의 내용에서 당연히 새로들어오는 자의 호송인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장에서 신입자의 라는 단어를 빼고도 의미를 파악하거나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므로 빼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11조** (형의 집행절차) ①미결수용자로서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집행지휘서로써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부터 10일내에 판결서 기타의 적법한 서류를 교도소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1) 제11조는 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고 있다. 여기서 미결수용자가 자유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형의 집행을 지휘하여 형의 집행이 개시된다는 것인데 번역문의 형태로 되어 있어 문법에도 맞지 않고, 어법상 어색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었다. 더욱이 검사가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인데 주어의 뒤에 두어 이해가 더욱 어렵다. 이를 어법에 맞게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검사는 확정판결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집행지휘서를 가지고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제12조** (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교도소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교도소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는 관형격 조사 “의”를 남발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도소 등에서 의무관이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새로들어온 자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제13조** (유아인도) ①소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수용자에게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유아를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이 허가된 유아가 생후 18월에 달하거나 소장이 양육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1) 제13조는 소장이 여자수용자에게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보호를 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조사의 사용이나 시제 등 문법이 맞지 않고 문장도 간결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장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여자수용자에게 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한 때는 그 유아를 보호할 만한 인수인이 없으면 그 유아를 해당 교도소등을 관할하는 소재지<sup>26)</sup>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2) 제2항의 문장은 어법이 맞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된 양육이 허가된 유아가 생후 18월이 되거나 소장이 양육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만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문장이 될 것이다.

**제16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절)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수용을 지휘한 기관과 당해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8.29, 1995.8.26>

26) “소재지를 관할하는”에서 관할이 어떠한 효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관할이라고 하면 당연히 소재지 관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중복되어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인 것 같다. 따라서 그냥 관할하는...라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1) 제16조는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당교도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조사의 사용이나 시제 등, 그리고 어색한 한자어 등을 사용하여 어려운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수용을 지휘한 기관과 해당교도소등을 관할하는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문장으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7조**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1) 소장이 수용자를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나 시제 혹은 어순이 어색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장은 수용자에게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로 고치는 것이 불필요한 관형격 조사 의를 없애고, 평이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다.

**제21조** (신입자의 수용) ①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부터 3일은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8.26>  
 ③소장은 20세미만의 신입자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의 내용은 새로들어온 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온 날로부터 3일은 새로들어온자의 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입자란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가 아니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고, 조사나 시제를 고쳐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새로들어온 수용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신입한 날로부터 3일은 새로들어온자의 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화하는 생각에 맞는 문자이고 평이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된...”으로 고치는 것이 간결한 문장이되고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에서 “수용된 자에게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문장도 간결하게 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제27조** (독거수용자의 시찰 등) ①소장 및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의 지시를 받아 독거수용자를 시찰한 교도관은 시찰사항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  
③소장은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계속하여 독거수용함이 당해 수용자의 건강 또는 교화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

1) 제1항의 경우 관형격조사 “의”가 사용된 일본식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장 및 교소도 등에 소소된 의무관은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sup>27)</sup>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다.

2) 제3항의 경우에는 소장이 독거수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계속적으로 혼자서 수용되어 있는 것이 그 수용자의 건강 또는 교화상 유해한 경우에는 혼자서 수용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조사나

27) 시찰이라는 한자어도 그 의미는 어렵지 않지만 고치는 것이 우리말로 고치는 것이 가능하면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당한 용어로 대체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어 아쉽다.

어법이 잘못사용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장은…건강진단 결과 해당 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 또는 교화를 위해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3) “獨居收容”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독방수용” 혹은 “단독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순화된 용어라 생각된다.

**제28조** (여자수용자의 시찰)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교도관은 야간에 거실안에 있는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

1) 제28조의 경우 소장이 여자수용자를 시찰하는데 야간에는 남자 교도관이 시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에서도 소장이 그 사유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특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그 사유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주된 내용은 남자교도관이 야간에 여자수용자의 거실을 시찰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으로, 이를 문장의 주된 내용이 되게 어순을 변경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교도관은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에 거실안에 있는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제31조** (혼거수용)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수 있다.

1.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혼거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 5.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 등 교도소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수용할수밖에 없는 경우

1) 독거수용은 독방수용이라고 순화하고 당해수용자는 해당수용자 또는 그 수용자 아니면 그냥 수용자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독방수용이 해당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다…”로 고치면 될 것이다.

2) “混居收容”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이지 않아, “共同收容” 또는 “단체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라 생각된다.

3) “사회성의 함양” 함양은 사전적 의미가 “차차 길러낸다”이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아니며, 이러한 의미를 굳이 한자어로 표기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무방한 한자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 의미를 풀어서 사회성을 기르는 등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수용이 사회성을 기르는 등 해당 수용자에게 교화를 위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고치면 될 것이다.

4) 제3호에서는 종래의 일본식 표현을 고쳐 어법에 맞게 고치려는 흔적이 보인다. 다만 당해수용자를 고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5) 제5호의 경우도 앞에서 말한 대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타 교도소 등에서 수용인원이 너무 많거나<sup>28)</sup>, 독방 부족등의 사정에 비추어 공동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다.

28) “과다”라는 한자어는 지나치게 많다는 의미인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한자어는 사용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4조** (수용자의 자리지정) 소장은 혼거실·교실·교회당·작업장 기타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2000.3.28>

1) 소장이 수용자가 사용할 자리를 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혼거실”은 “공동실 또는 공동방”로 바꾸는 것이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법을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되고 불필요한 관형격조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장은 공동실…작업장 등에서 수용자가 사용할 자리를 정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제35조** (혼거실의 대용금지) 혼거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0.3.28>

1) 문장이 간결하지 못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장을 간결하게 할 수 있으면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법률문장으로도 어울린다. 따라서 “공동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로 고치는 것이 간결하여 이해하기 쉽다.<sup>29)</sup>

**제36조** (거실앞의 이름표) 거실의 앞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 상부에는 수용자의 성명·연령·죄명·형명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용자번호 및 입소연월일을 각각 기재하되 상부의 남은 이를 가리어 두어야 한다. <개정 1995.8.26>

1) 관형격 조사 “의”를 남발한 일본식 표현이므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거실의 앞에는”은 “거실앞에는”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29) “대용금지”는 다른 것으로 전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혹은 다른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용금지가 일상적인 용어는 결코 아니므로 대신할 우리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적당한 용어를 찾지 못했다.

2) “그 상부에는”에서 이름표를 붙인 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위에는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인데, 불필요하게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법률용어가 권위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그 하부에는”이라는 표현도 “그 밑에는”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거실앞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 위에는 수용자의 성명…그 밑에는 수용자…위의 난은 이를 가리어 두어야한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7조** (혼거실의 정원등의 표시) 혼거실에는 그 면적·정원 및 현재인원을 기재한 수용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5.8.26>

1) “혼거실”은 공동방 혹은 공동실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제38조** (외부인의 출입) 교도관외의 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외에는 당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출입하지 못한다.

1) 당해소장은 해당소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2) 본조의 내용이 교도관 이외에는 근무시간이외에는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공무원복무규정이다. 따라서 조사등을 바로잡아 본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교도관 이외의 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근무시간외에는 해당소장의 허가 없이는 교도소등에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제39조** (수용자의 계호등) ①교도소등의 외문·출입구·거실·작업장 기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이를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일시 개방하는 때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교도소등의 자물쇠와 열쇠는 지정된 교도관이 보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고 받지 못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1) “외문”은 교도소 등의 바깥에 있는 문을 말하는 것으로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일상적이지 않고, 따라서 굳이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문”은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계호”는 사전적 의미가 “경계하여 지킴, 또는 교도소 안에서 치안을 확보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계호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기 지나치게 어렵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계호”는 그 목적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통하여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풀어서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라고 표제를 고치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바람직하다.

**제40조** (거실개방 및 출입) 교도관은 **당해 소장**의 명령이나 다른 교도관의 참여없이 수용자의 거실을 열거나 또는 수용자를 거실밖으로 나오게 하지 못한다. 다만, **병실에 있어서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1) “당해소장”은 해당소장 또는 그 소장으로 혹은 소장으로 고쳐도 무방할 것이다.

2) 제40조의 내용은 교도관이 혼자서 수용자를 출입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고려한 규정이다. 그런데 단서에서 “다만 병실에 있어서나...”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병실에 있는 경우나...”로 고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제42조** (거실 및 작업장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용자의 거실 및작업장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1) “교도관으로 하여금”은 문어체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이 아니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소장은 교도관에게…수시로”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5조** (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1) “계구”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해당한다. 계구는 교도소등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교도소등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도구 또는 장비”라고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문의 간결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일상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의 거부감을 주는 것보다는 나은 것으로 생각된다.

2) 당해소장은 해당소장으로 바꾸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다.

**제46조**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개정 1995.8.26>

②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5.8.26>

③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1) “자해의 우려가”에서 관형격 조사 의를 고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자해할 우려가 있는 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그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포승”은 과거에 사용되어오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낡고 권위적인 표현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포승의 사전적 의미가 “죄인을 묶는데 사용하는 노끈”을 말하므로 그냥 줄 혹은 노끈으로 표현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제를 맞게 하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그러므로 “인정될 경우”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7조** (강제력의 행사 등) 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 없이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즉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도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1) 본조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어 어색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 제14조의2에 규정한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없이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즉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2) 제2항의 경우에도 규정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어법에 맞지 않고 시체가 잘못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된다. 이를 고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 되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소장은 교도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49조** (일시석방) 소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일시 석방하는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할 시기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1) “...에 의하여”는 일본식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장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라고 고치는 것이 옳다.

2) “석방하는 때에는”은 시제를 맞게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석방할 때에는”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제50조 (타소 이송시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송받을 교도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1) “타소”는 한자어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다른 곳”으로 하면 될 것이라 생각된다.

2)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은 문어체로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의무관에게”라고 고치는 것이 쉬운 문장이 되어 타당하다.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이송을 정지한 때에는...”에서는 시제가 잘못되어 문법에 어긋난 문장으로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송을 정지할 때에는”으로 하여야 옳다.

**제52조 (도주시의 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소재지 및 그 부근 또는 도주한 자가 숨을 만한 지방의 경찰서에 도주자의 사진 또는 인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1) “도주”는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는 아니다. 따라서 도주라는 한자어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옳다. “도망”으로 고쳐도 무방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주자”는 도망자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되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sup>30)</sup>

**제55조** (접견의 허가)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전문개정 1995.8.26]

1) 제55조는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하는 것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허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맥이 어색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근무시간내에만 이를 허가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제56조** (접견의 횟수) 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3.28>  
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전문개정 1995.8.26]

1) “처우”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므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대우를 받는”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2)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에서 “증가”는 늘린다는 표현으로 접견횟수를 늘리 수 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증가라는 표현이 비록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라 하여도 한글화 할 수 있는 것은 고치는 것이 좋다.

30) “첨부”는 덧붙인다는 의미로 첨부라는 한자어도 널리 법령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꼭 첨부라고 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덧붙인다는 의미로 풀어서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제2항의 문장도 일본식표현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를 사용하는 것에서 주격조사를 사용해야 할 부분에서 관형격조사를 사용하고 있어 고치는 것이 문법에 맞다. 예를 들어 “미결수용자와의 접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다.

**제57조** (접견의 예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1) 제57조는 문장이 전체적으로 조사 등이 잘못 사용되어 이해하기 어렵고, 문법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문의 내용은 소장이 수용자를 교화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견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와의 접견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 맞게,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장은(이) 수용자를 교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와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제58조** (접견시의 기록등) 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1.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한자**
2.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소장은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접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접견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0.3.28>

1. 범죄를 선동·**조장하는 때**
2. 증거인멸, **도주의 기도** 등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때**
4. 기타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1)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에서 시제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신청한 자가 있을 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2)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는 접견을 허가받은 자가 접견자인데…이를 중복적으로 표현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주의사항 고지하여야 하며…”로 고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3)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당해사건은 해당사건 또는 그 사건 또는 그냥 사건이라고 하여도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4) “교화상…”은 “교화를 위하여”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다.

5) “교도관으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으며”라는 표현은 문어체로 간결하지 못하며,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교도관에게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6) “이에 불응한 때에는”이란 문장은 “이에 불응하면”으로 간결하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7) “조장하는 때”는 시제를 고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다. 따라서 “조장할 때”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도주의 기도” 도주는 도망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기도는 사전적 의미가 “어떤 것을 꾀함”이므로 “도망을 꾀하는 등”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도 쉽다. 그리고 시제를 바꾸는 것이 문법적으로 옳다. 따라서 “질서를 위태롭게 할 때…”로 고치면 될 것이다.

### 제 3 장 군행형법의 한글화와 용어순화

**第 1 條 (目的)** 이 法은 軍事法院에 의하여 懲役刑·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者를 隔離保護하여 矯正敎化하고, 건전한 國民思想과 견고한 軍人精神을 함양하여 社會 또는 軍에 復歸하게 하며, 아울러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의 收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1) “隔離保護하여”는 그 의미가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수용하여 교정 교화한다는 의미로 강력한 인상을 주기 하지만, 불필요한 권위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분리보호하여…” 혹은 “분리수용”하여로 고치거나 “따로수용” 혹은 “따로보호”등으로 용어를 순화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그리고 후단의 “아울러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의 收容에…”의 문장 또한 “아울러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수용에…”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당연히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므로 이를 굳이 형사피고인, 형사피의자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第 2 條 (矯導所등의 設置)** ①軍行刑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 소속하에 軍矯導所(이하 “矯導所”라 한다)를 두며, 矯導所에는 필요에 따라 支所를 둘 수 있다.  
 ②矯導所(支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當해軍 參謀總長(이하 “參謀總長”이라 한다)이 指揮·監督한다.  
 ③矯導所에는 懲役刑·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者(이하 “受刑者”라 한다)를 收容한다.

④參謀總長은 필요한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受刑者 또는 刑事被疑者나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이하 “未決收容者”라 한다)를 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女子受刑者 또는 女子未決收容者는 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된 受刑者 및 未決收容者(이하 “收容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行刑法을 적용한다.

⑥矯導所의 명칭·位置 및 職制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未決收容者를 收容하기 위하여 矯導所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部隊안에 未決收容室을 둘 수 있다.

⑧矯導所長·支所長 또는 未決收容室이 設置된 部隊의 長(이하 “所長”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矯導所로 移送하여야 할 收容者를 3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속하여 收容할 수 있다.

1) 제1항의 “管掌”은 그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한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어는 전체문장에서 사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관장한다는 표현보다는 담당한다는 표현이 더 일상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고치거나 “...사무를 담당하는...”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2항의 “당해군”은 “해당 군”으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 “刑事被疑者나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이하 “未決收容者”라 한다)”의 문장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고치는 것이 문장이 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第 4 條 (請願) ①收容者가 그 處遇에 不服하는 때에는 參謀總長 또는 巡廻點檢公務員에게 請願할 수 있다.**

②收容者가 參謀總長에게 請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書面을 所長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矯導官은 請願書를 開封하지 못한다.

③巡廻點檢公務員에 대한 請願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巡廻點檢公務員이 口述에 의한 請願을 듣는 때에는 矯導官을 참여 시키지 못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參謀總長이 請願에 대한 決定을 하는 때에는 文書로써 하여야 하며, 所長은 그 決定書를 지체없이 請願人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처우”라는 용어는 행형법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따라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도 처우라는 용어보다 더 일상적인 용어인 “대우”로 고치는 것이 용어를 순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일상적인 용어이므로 이해하기도 쉽다.

2) 제2항의 경우에 “수용자가…청원하고자 하는 때에는…”는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문어체로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므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참모총장에게 청원할 때에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시제를 맞게 고쳐서 문법적으로도 올바르다.

3) “개봉”이라하는 한자어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로 이해하기 어려움은 없지만 법령의 한글화하려는 요청에는 부합하지 않고, 그 의미를 풀어서 사용하여도 문장의 간결성이나 이해에 어려움이 없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글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청원서를 열어보지 못한다”로 고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제3항의 “巡廻點檢公務員에 대한 請願은…”은 그 의미가 청원하고자 하는 자가 순회공무원에게 청원할 경우에는 그 방법이 구술이나 서면으로 가능하고,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로 하는 청원을 들을 때에는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어미의 부적절한 사용과 시제의 불일치 그리고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시킬 수 없다고 하여, 능동태의 문장으로 사용하면 될 것을 피동태의 문장으로 사용하여 어려운 문장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때에는 서면이나 구술<sup>31)</sup>로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들을 때에는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다.

5)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參謀總長이 請願에 대한 決定을 하는 때에는 文書로써 하여야 하며, 所長은 그 決定書를 지체없이 請願人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에서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서”로 고치는 것이

31) “구술”이라는 한자어도 법령상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없는 한자어로 이를 “말”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법상 맞고, 일상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참모총장이 청원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시제를 맞게 하여 올바른 문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해하기도 쉬운 문장이다.

**第 6 條** (新入者의 收容等) ①所長은 收容者로서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新入하는 者(이하 “新入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執行指揮書 및 裁判書 기타 書類를 調査·確認한 후 收容하여야 한다.  
②所長은 新入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軍醫官의 健康診斷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 결과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서 適當한 治療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者와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傳染病에 걸린 者에 대하여는 第2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1) 제1항은 문장이 지나치게 문어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항의 문장을 “소장은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새로 들어온 자에 대하여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서류…”로 고치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어법에도 맞아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본 항은 번역문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문장이 어색하다.

그리고 新入者는 알기에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한자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의미를 풀어 우리말로 고치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2) 제2항 또한 “소장은 새로들어온 자에 대하여…”로 고치면 될 것이다.

**第 7 條** (身體檢查等) ①所長은 新入者의 身體와 衣類를 檢查하고 指紋을 採取하며 寫眞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受刑중인 者에 대하여도 身體와 衣類를 檢查하고 指紋을 採取하며 寫眞을 촬영할 수 있다.

1) 제1항의 신입자는 “새로들어온 자”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용어라고 생각된다.

**第 8 條** (收容方法) 收容者는 獨房收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共同收容할 수 있다.

1) 종래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독거수용혹은 혼거수용이라는 표현을 독방수용, 공동수용이라는 용어로 순화한 것은 그 동안의 권위적인 표현을 청산하고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第 9 條** (共同收容) ①共同收容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居室을 區別하여 收容한다. 다만, 收容者의 罪質·性格·犯數·年齡·經歷 또는 刑期등을 고려하여 居室을 별도로 品別하여 收容할 수 있다.

1. 將官級將校 및 이와 동등의 軍務員
2. 將官級외의 將校, 准士官 및 이와 동등의 軍務員 또는 士官候補生
3. 兵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者

②第1項의 規定은 作業場의 就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教育·教誨·診察하거나 病室에 收容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의 “...거실<sup>32)</sup>을 별도로 품별하여...” 품별한다는 한자어는 사전적 의미가 “품질이나 품종에 따라 구별하는 것 또는 그 구별”을 의미한다. 제9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의 계급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 수용의 경우에도 거실을 별도로 나누어 사용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1항서는 그냥 “거실을 별도로 나누어”로 고치는 것이 무난할

32) 거실은 사전적 의미가 “거처하는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실은 가족이 생활하는 서양식 방을 말하는 것이다(이희승 감수, 민중 국어사전, 민중서림, 2002, 77면). 따라서 거실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방과 거실은 사전적 의미가 같지만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고, 수용자는 독방수용이 원칙이므로 방에 수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용어인 방으로 바꾸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각호에서 어떤기준으로 나눌것인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1항에서 품별이라는 독음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그 의미가 “물건 등을 구별하는것”으로 사용되는 등 일반인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범수나 연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반드시 한자어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범수”는 범 죄를 범한 횡수를 줄여서 범수라고 한 것인데 이는 죄수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라 생각된다. 그리고 연령은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한글로 전용하여 나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작업장의 취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에서 “취업”은 사전적 의미가 “일을 한다”<sup>33)</sup>이지만 일상적으로 취업은 직장등을 얻어 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기 쉽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이므로, 반드시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제1항의 규정은 작업장에서 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다.

4) 제3항의 경우에 “敎誨·...아니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교회는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적이 아닌 한자어로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의 사전적 의미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가르치고 일깨운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다. 이는 주로 종교적인 것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교화의 종류이다. 교회는 한글로 표기할 경우 특정한 종교의 교당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오해도 있으므로, 장차 한글전용으로 갈 경우 그 표현을 어떻게든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풀어 “종교에 의한 교화” 혹은 “종교적 가르침(교육)”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33) 민중예센스국어사전, 1886면.

**第10條** (收容者の移送) 所長은 收容者の 收容・作業・教化 기타 處遇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參謀總長の 승인을 얻어 收容者を 다른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移送할 수 있다.

- 1) “處遇上”은 “대우를 위해”로 바꾸는 것이 더 일상적이다.
- 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은 시제를 고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 된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문법적으로 옳다.

**第11條** (死刑囚의 收容) 死刑의 宣告를 받은 者は 未決收容室에 收容한다.

- 1) 본조의 경우에 사형수 즉 사형선고를 받은 자를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사형의 선고를”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한 일본식 문장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사형선고를 받은 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라고 고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수를 수용하는 것이므로 “사형을 선고 받은 자는...”으로 고쳐도 좋을 것이다.

### 第 3 章 警戒監護

**第12條** (保護器具) ①收容者の 逃走・暴行・騷擾 또는 自殺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保護器具를 사용할 수 있다.

②保護器具의 종류・규격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 1) 종래에 “계호”라고 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警戒監護”라고 바꾸었다. 그것은 “戒護”의 사전적 의미가 “경계하여 지킴, 또는 교도소 안에서 치안을 확보하는 일”을 말하는데, 그 의

미를 풀어서 다시 한자어로 바꾸었다. “계호”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통하여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풀어서 “교소도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라고 표제를 고치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바람직하다. 경계감호란 표현도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법문의 간결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종래의 “계구”를 “보호기구”라는 용어로 순화하였다. 본문에서는 수용자의 도구나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를 구속하는데 도구를 사용할 있다는 것인데 마치 보호기구는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오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용어로 순화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그냥 도구라고 하는 것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第13條 (武器의 사용)** ①矯導官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1. 矯導官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事態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暴行 또는 脅迫에 사용할 危險物을 지니고 投棄命令에 복종 하지 아니하는 때
3. 달아날 目的으로 많은 사람이 騷擾하는 때
4. 달아나고자 하는 者가 制止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달아나고자 하는 때
5.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人命·身體·建物 기타 施設과 機具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矯導官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밖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대한 防護, 收容者에 대한 奪取의 沮止, 建物기타 施設과 武器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收容者외의 者에 대하여도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는 시제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 된다. 따라서 “에 해당할 경우에는...”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2) “...교도관에 대하여...”에서 번역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색한 문장이므로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교도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3) “...인정되는 때”는 시제를 고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인정될 때”라고 하면 될 것이다.

4) “달아날 目的으로 많은 사람이 騷擾<sup>34)</sup>하는 때”는 소요라는 한자어의 의미가 “악자하고 떠들썩함, 또는 술렁거리고 소란스러움, 많은 사람이 들고일어나서 소란을 피우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소요라는 의미 속에 이미 많은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요하는 때라고 하여 중복하여 의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달아날 목적으로 소요하는 때”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요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란으로 고치고 소란과 소요가 규모상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sup>35)</sup> “달아날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소란을 피운 때”라고 고치면 될 것이다.

5) “방호”는 그 의미가 위험을 막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의미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가 아니고 본조의 내용에서 방호라는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라고 고쳐도 무방하고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용어가 된다.

6) “收容者에 대한 奪取의 沮止”는 수용자에 의하여 교도소등의 시설이 강제로 빼앗기는 것을 저지 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어미의 사용이 잘못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라고 하여 수용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탈취한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수용자에 의한 탈취의 저지<sup>36)</sup>”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34) “소요”를 소란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소요와 소란은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소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다(정완/윤정호/김정태, 형사법령용어의 순화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31면 참조).

35) 정완 외, 전계논문, 31면 참조.

36) “沮止(저지)”라는 표현도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막는다는 의미이므로 막다로 고치면 될것으로 생각된다.

**第14條** (收容者の 緊急移送等) ①所長은 天災地變 기타 事變으로 인하여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에서는 避難의 方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收容者를 다른 곳에 移送할 수 있다.

②다른 곳에의 移送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釋放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는 釋放後 24時間이내에 矯導所 또는 가까운 憲兵隊나 警察官署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정당한 이유없이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刑法 第1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한다.

1) “…避難의 方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난의 방법은 “피할 방법”으로 고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그리고 시제를 고치는 올바른 문장이다. 예를 들어 “…피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2항의 경우에도 “이송이 불가능할 때에는”으로 시제를 고치는 것이 옳다.

3) “다른 곳에의 移送이…”는 관형격조사를 사용한 일본식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송이 불가능할 때에는”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第15條** (面會와 書信의 受發) ①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他人과 面會하거나 書信을 受發할 수 있다. 다만, 搜查중인 未決收容者에 대하여는 檢察官이 이를 許可 한다.

②收容者의 面會와 書信受發은 教化 또는 處遇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③收容者의 面會와 書信受發은 矯導官의 참여와 檢閱을 요한다. 다만,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 面會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收容者가 受發하는 書信의 檢閱·發送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所長이 교부를 許可하지 아니한 書信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釋放할 때 本人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面會에의 참여, 書信의 檢閱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면회는 사전적 의미가 “찾아온 사람을 만나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발”은 “시중들며 보살피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이다. “수발”은 수신과 발신을 합쳐서 수발이라는 한자어로 사용되고 있다. 수발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서, 군대 등에서 사용되어 오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가능하면 문장의 간결성을 해치거나, 의미의 전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 말로 쉽게 풀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타인과 만나거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한글순화의 목적과 권위주의적 표현을 없애고 법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목적에도 맞다고 생각된다.

2) “처우상”은 “대우를 위하여...”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3)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 面會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어 어색한 문장이 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변호인이 면회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4) “서신”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편지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허가하지 아니한”은 문어체로 “허가하지 않은”으로 하는 것이 간결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이다.

6) “교부”이라는 한자어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본문의 내용에서 반드시 한자어를 사용하여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교부는 받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장의 간결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별 차이가 없다면 한글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주어야 한다.”로 고치면 될 것이다.

**第16條** (書信등의 領置) 收容者에게 **교부된 書信** 기타 文書는 本人이 閱覽한 후 이를 領置한다. 다만, 教化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書信 기타 文書는 이를 領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서신은 편지로 고치고 영치는 보관으로 고치는 것이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2) “...영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일본식 표기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閱覽”이라는 표현도 알기에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이 또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한자어로 그냥 본인이 “본다”는 의미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第17條** (衣類와 이부자리의 給與) ①收容者에게는 일정한 衣類와 이부자리를 給與한다.

②衣類와 이부자리의 給與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食糧의 給與) ①收容者에게는 體質·健康·年齡 및 作業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食糧을 給與한다.

②食糧給與의 기준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第19條** (酒類등의 給與禁止) 收容者에 대하여는 酒類와 담배를 給與하지 못한다.

1) 침구를 이부자리로 고쳐서 표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2) “給與한다”는 한자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준다”고 표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급여는 사전적의미가 “일한 대가에 대한 급료” 또는 임금이나 봉급의 총칭을 의미하여 일상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강하다.<sup>37)</sup>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대가적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더욱이 급여라는 것은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준다”고 하면 될 것이고 굳이 한자어로 바꾼다면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 될 것이다.

**第18條** (食糧의 給與) ①收容者에게는 體質·健康·年齡 및 作業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食糧을 給與한다.

②食糧給與의 기준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37) 이희승 감수, 민중국어사전, 286면.

1) 제1항의 급여는 “식량을 준다”라고 고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혹은 “식량을 지급한다.”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2) 제2항의 “식량급여”는 “식량지급”이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이를 가능하면 우리말로 풀어서 “식량을 주는 기준은…”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법문이 너무 가볍지 않는가 하는 걱정은 그 동안 법문에 대하여 권위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탓이라 생각된다.

**第19條 (酒類등의 給與禁止) 收容者에 대하여는 酒類와 담배를 給與하지 못한다.**

- 1) “주류등의 지급금지”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도 쉽다.
- 2) “수용자에 대하여는…”의 문장은 주어가 생략되어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어 있다. 교도소등에서 수용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사람을 나타내는 체언 아래에 사용되어 상대격을 나타내는 “에게”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에게…”로 고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다.
- 3) “주류”는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반드시 사용되어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냥 “술”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 한글화하려는 뜻에도 맞다.
- 4) 따라서 전체적으로 문장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수용자에게 술과 담배를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고치거나 “수용자에게는 술과 담배를 줄 수 없다.”라고 고치면 될 것이다.

**第20條 (衣類등의 自費負擔) ①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收容者에게 衣類·이부자리 및 食糧의 自費負擔을 許可할 수 있다.**  
 ②自費負擔의 衣類·이부자리 및 食糧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 領令으로 정한다.

1) “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소장이 필요한 경우에”로 고치는 것이 지나치게 문어체적인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사용하고, 소장이 주격조사인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2) 제2항의 경우에 관형격조사 “의”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일본식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sup>38)</sup> 예를 들면 “자비부담을 할 수 있는 의류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第21條** (理髮과 面刀) 受刑者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남은 刑期가 2月이하인 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본 문장은 관형격조사 “의”를 남용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수형자는 머리카락과 수염을…짧게 깎는다.”라고 고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2) 후단의 경우에도 “다만 남은 형기가 2월 이하인 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 된다.

**第22條** (運動 및 沐浴의 허용) 所長은 收容者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運動과 沐浴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所長은 收容者에게…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불필요한 하게라는 피동태를 반복하는 문어체로 이러한 표현 또한 일본식 표현이므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장은…운동과 목욕을 하게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도 쉽고, 올바른 표현이다.

**第23條** (傳染病의 豫防) 所長은 收容者에게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38) 김상근, 법률문장론, 사법연수원자료, 20면 참조.

1) “하여야 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일본식의 문장인 보여진다는 유사한 문어체 문장으로 하여야 한다는 식의 동일한 자동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따라서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24條** (病室收容等) 所長은 疾病에 걸린 收容者에 대하여는 病室에 收容하거나 기타 적당한 治療를 하여야 한다.

1) 본 조 역시 문어체 문장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어색하고 권위적이며 일본식 표현이 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소장은 질병에 걸린 收容者를 病室에 收容하거나 기타 적당한 治療를 한다.”라고 고쳐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第25條** (隔離收容) 所長은 傳染病에 걸린 收容者에 대하여는 다른 收容者와 隔離收容하여야 한다.

1) “격리수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표현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리수용”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전체적으로 문장이 문어체이고 조사등의 사용이 잘못되어 어색한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장은 傳染病에 걸린 收容者를 다른 收容者와 분리 수용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第26條** (自費治療) 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收容者가 自費로 治療하는 것을 許可할 수 있다.

1) 본 문장은 시제고치고 주격조사를 “은”이 아니라 이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여 법률문장으로 적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할) 경우에 수용자가 자비로 치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고치면 될 것이다.

**第27條** (病院移送) ①所長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 안에서 收容者에게 適當한 治療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收容者를 軍病院에 移送할 수 있다.  
②軍病院에서 適當한 治療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收容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軍外 病院등으로 移送하여 治療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者는 收容者에 準한다.

1) 제1항은 “인정되는 때에는”이라는 부분의 시제를 고치는 것이 문법이 맞는 문장이다. 따라서 “소장은…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2) 제2항에서도 “…收容者에 대하여는…”는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수용자를 다른 외부의 병원에 옮겨 치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수용자가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권위적인 문어체문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정되는 수용자를…”로 고치면 될 것이다.

3)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표현도 문어체로 권위적인 법문의 대표적인 표현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를 고치더라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라고 고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도 쉬운 문장이다.

4) “하게 할 수 있다.”는 하여 하여를 반복한 일본식 문어체 문장으로 법령에서 이러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냥 “치료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일상적인 표현이 된다.

**第28條** (敎誨) 所長은 受刑者가 자기가 信奉하는 宗派의 敎義에 의한 敎誨를 申請하는 때에는 그 宗派에 위촉하여 敎誨를 할 수 있다.

1) 교회(敎誨)라는 한자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로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용어이다. 교회의 사전적 의미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가르치고 일깨운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다. 이는 제2항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교화의 종류이다. 교회는 한글로 표기할 경우 특정한 종교의 교당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오해도 있으므로, 장차 한글전용으로 갈 경우 그 표현을 어떻게든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풀어 “종교에 의한 교화” 혹은 “종교적 가르침(교육)”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위촉하여”는 “부탁하여”하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도 쉽다.

3) “신봉하는”이라는 한자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는 아니고 따라서 권위적인 법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자어이다. 본 문장에서 이러한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믿는”이라고 고치면 될 것이다. 즉 “수용자가 자기가 믿는…”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종파의 교의”는 종파는 종교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그냥 종파라 하지 않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의미를 이해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의”는 종교의 이치나 본지<sup>39)</sup>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아니고 차라리 교리(종교의 이치나 본질)이라는 용어가 보다 일상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교리라는 표현이 특정한 종교에서 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의미만으로 보면 특정한 종교에 국한되는 것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39) 이희승 감수, 민중국어사전, 209면 참조.

5) 따라서 전체적으로 문장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장은 수형자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로써 종교적 교화를 신청하면 그 종파에 부탁하여 종교적 교화를 할 수 있다.”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의 문장이 된다.

**第29條** (교육과 訓練) 受刑者에게는 社會 또는 軍에 復歸함에 필요한 教育 또는 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에 復歸함에…”에서 복귀하여 군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그 뜻에 맞게 고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사회 또는 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훈련을 실시…”에서 실시는 “실제로 실행한다.”<sup>40)</sup>는 한자로 군대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로 권위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일상적인 표현인 “실행” 혹은 교육이나 훈련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훈련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고쳐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第30條** (圖書의 閱覽) 所長은 收容者가 圖書의 閱覽을 申請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1) 본 문에서 “圖書의 閱覽을”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를 고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시제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문장에서 도서가 목적어로 “수형자가 도서를 열람신청할 때에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다.

40) 이희승 감수, 민중 국어사전, 1225면.

2)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은 의미를 중복적으로 사용한 문어체로 이를 고치는 것이 문장이 간결하고 이해하기도 쉽다. 예를 들어 “부적당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第31條** (教育規程) 教誨의 신청방법, 教育·訓練의 科目·時間과 圖書의 閱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1) 교회(敎誨)라는 한자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로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용어이다. ‘교회’의 사전적 의미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가르치고 일깨운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다. 이는 제2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교화의 종류이다. 교회는 한글로 표기할 경우 특정한 종교의 교당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오해도 있으므로, 장차 한글전용으로 갈 경우 그 표현을 어떻게든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풀어 “종교에 의한 교화” 혹은 “종교적 가르침(교육)”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한 일본식 표기도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의 신청방법”은 “종교적인 교화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3) “教育·訓練의 科目·時間과 圖書의 閱覽<sup>41)</sup>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에서 관형격조사를 고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교육·훈련과목·시간과 도서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정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일본식 표현법을 벗어나는 길이다.

41) 열람이라는 한자어도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이지만 열람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책 등을 죽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본문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표현은 아니다. 열람실이라는 표현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다른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적당한 용어를 찾기 어렵고 앞으로 연구를 기대한다.

**第32條 (作業)** ①作業은 受刑者의 刑期·年齡·건강 및 特技등을 고려하여 課한다.  
 ②所長은 受刑者의 社會復歸와 技術習得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受刑者로 하여금 외부 企業體등에 通勤作業하게 할 수 있다.  
 ③作業의 종류·시간, 通勤作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승으로 정한다.

- 1) 제2항의 “...수형자로 하여금...”의 표현은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수형자들”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용어의 사용이 될 것이다.
- 2) “인정되는...”은 시제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된다.
- 3) 제3항의 “...에 관하여”는 일본문장을 번역한 일본식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그냥 “통근작업에 필요한 사항은...”이라고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第38條 (携帶金品の 領置)** ①收容者의 携帶金品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領置한다. 다만, 領置의 價値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所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을 本人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第41條 (領置金品の 반환)** ①領置金品은 釋放할 때 本人에게 반환한다.  
 ②死亡한 收容者가 남겨 놓은 金品은 請求에 의하여 그 相續人에게 교부한다.  
 ③收容者의 死亡後 1년이 경과하여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없을 때에는 그가 남겨 놓은 金品은 國庫에 귀속된다.  
 ④逃走者가 남겨 놓은 金品은 請求에 의하여 本人이나 본인의 直系尊屬 또는 直系尊屬에게 교부한다. 다만, 逃走後 1년이 경과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귀속된다.

- 1) “領置”는 보관으로 바꾼다.
- 2) “收容者의 携帶金品은”은 조사“의”는 일본의 노(の)처럼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주격 조사인 “가”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휴대금품은 가지고 있던 금품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금품”으로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금품은 돈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금품은 돈 이외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냥 두기로 한다.

3)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하여 문어체적인 표현도 “처분하지 않으면”으로 바꾸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4) “領置金品”은 보관하고 있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관금품” 혹은 “보관금”으로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용어에 해당한다.

**第39條** (領置金品の 使用許可) 所長은 收容者가 領置金品으로 父母 또는 妻子의 生計扶助 기타 正當한 用途에 充當할 것을 申請한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

1) “生計扶助”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그냥 “생활비”로 사용되는 것이 더 일상적인 용어이고 이해도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第40條** (收容者에 對한 金品교부) ①所長은 收容者에 對한 金品の 교부를 申請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②所長은 收容者에게 보내온 金品으로서 本人이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 物品을 本人에게 교부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發送人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  
 ③第2項의 경우 發送人이나 發送人의 住所가 明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한 후 6月이 經過하여도 교부를 請求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그 物品은 國庫에 귀속된다. 다만, 價値가 없다고 인정되는 物品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所長은 收容者에 對한 金品の 교부를 申請하는 者가...”의 표현은 문어체적인 표현을 고쳐서 “소장은 수용자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신청하는 자가...”로 고치는 것이 어법상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2) 제2항의 경우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으로서 본인이 받기를 거절하거나...”의 문장도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다. 따라

서 이 문장도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을…”로 고치는 것이 보다 어법상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일상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第42條** (賞으로서의 處遇) ①所長은 收容者로서 優우치는 빛이 뚜렷하거나 行實이 優秀한 者에게는 賞으로서의 處遇를 할 수 있다.  
②賞으로서의 處遇의 종류와 방법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③1年이상 服役한 受刑者로서 그 刑期의 2分之 1을 경과하고 優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行實이 優秀한 者에게는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刑期間중 3週 이내의 歸休를 許可할 수 있다. 歸休期間은 刑執行期間에 넣어 計算한다.

1) “處遇”는 대우로 바꾸는 것이 일상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소장은 수용자로서…”의 표현도 문어체적으로 “수용자가…”로 고치는 것이 어법상 맞다고 생각된다.

3) 행실은 “일상적인 행동”을 뜻하는데 이는 오히려 “품행”이라는 용어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행동”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4) “歸休”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가”라고 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이 될수 있다.

**第52條** (被釋放者의 일시 收容保護) 被釋放者가 疾病으로 인하여 歸還하기 곤란한 때에는 本人의 請求에 의하여 일시 矯導所내에 收容保護할 수 있다.

**第53條** (歸還旅費等) 被釋放者가 歸還에 필요한 旅費 또는 衣類를 지니지 아니한 때에는 그 旅費 또는 衣類를 당해 矯導所에서 빌려 줄 수 있다.

1) “피석방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사용이 필요 없는 한자로 그 의미를 풀어서 “석방된자”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귀환하기 곤란한 때에는...”은 귀환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의미를 풀어서 “돌아가기...”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당해교도소”라는 표현도 해당교도소 또는 그냥 교도소라고 표기하여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석상 문제가 생길 수도 없다.

## 제 4 장 소년법의 한글화와 용어순화

第 1 條 (目的) 이 法은 反社會性 있는 少年에 대하여 그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에 관한 保護處分을 행하고 刑事處分에 관한 特別措置를 행함으로써 少年의 健全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환경의 조정”이라는 표현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그가 속한 나쁜 환경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조정은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환경의 조정이라는 표현이 쉽게 이해되기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이를 풀어 “환경을 바로잡고”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라는 것도…에 대하여라는 것은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이를 “반사회성있는 소년을…”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성행을 교정에 관한”이라는 표현에서 “성행(性行)”은 “범죄인의 소질·경력·습관·유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sup>42)</sup> 그러나 성행이라는 한자어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하여도,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로 굳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격이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으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sup>43)</sup>

4)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냥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기함을 문장에서 빼고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2) 김일수, 한국형법Ⅱ, 박영사, 1997, 631면 참조.

43) 이에 대하여 성행은 품성이나 행실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성행과 의미차이가 없는 품행이나 품성이 더 많이 사용되고,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성행을 “품행”으로 바꾸는 동시에 경력을 추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품행으로 고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있다(정완 외, “형사법령용어의순화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8면).

**第 2 條** (少年, 保護者) 이 法에서 “少年”이라 함은 20歲미만의 者를, “保護者”라 함은 法律上 監護教育의 義務있는 者 또는 현재 監護하는 者를 말한다.

1) “監護教育의 義務있는 者”는 일본식표기인 노(の)의 남발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감호교육할 의무있는자”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 4 條** (保護의 대상과 送致 및 통고)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少年은 少年部の 保護事件으로 審理한다.

1. 罪를 범한 少年
2. 刑罰法에 著속되는 行위를 한 12歲이상 14歲미만의 少年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性格 또는 環境에 비추어 장래 刑罰法에 著속되는 行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歲이상의 少年  
가. 保護者의 正當한 監督에 복종하지 않는 性癖이 있는 것  
나. 正當한 이유없이 家庭에서 離脫하는 것  
다. 犯罪性이 있는 者 또는 不道德한 者와 交際하거나 자기 또는 他人의 德性을 해롭게 하는 性癖이 있는 것

②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少年이 있을 때에는 警察署長은 직접 管轄 少年部に 送致하여야 한다.

③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少年을 발견한 保護者 또는 學校와 社會福利施設의 長은 이를 管轄少年부에 통고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에서 “保護者의 正當한 監督에 복종하지 않는 性癖이 있는 것”에서 “性癖” 한글로 표기될 경우 “성곽의 벽” “성질과 버릇”의 의미로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한자로 표기되어야 하고 한자로 표기되는 경우에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의미를 풀어서 “성질과 버릇”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하여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에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에서의 이탈은 우리가 흔히 “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히 다르게 사용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가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3) 다호의 “交際하거나”라는 한자어는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한자어가 아니므로 이를 풀어서 “사귀거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타인의 德性을…” 덕성이라는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질고 너그러운 성격”을 말하는 바 차리리 “품성”이라는 용어가 더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에 해당되어 품성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第 6 條 (移送)** ①保護事件의 送致를 받은 少年部는 保護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다른 관할少年部에 移送할 수 있다.  
 ②少年部는 事件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 事件을 관할 少年部에 移送하여야 한다.

1) “保護事件의 送致를 받은 少年部는 保護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다른 관할少年部에 移送할 수 있다”. 문장 전체에서 관형격 조사인 일본식 표기 노(の)자를 남발하여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으로 문장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 7 條 (送檢)** ①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禁錮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犯罪事實이 발견된 경우에 그 動機와 罪質이 刑事處分の 需要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地方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②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本人이 20歲이상인 것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地方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다만,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에 移送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송검”은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는 것으로 이를 풀어 “검사에게 송치”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第11條** (調査命令) ①少年部判事は 調査官에 대하여 本人, 保護者 또는 參考人의 審問 기타 필요사항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②少年部는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고된 少年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事件을 調査하여야 한다.

1) “...조사관에 대하여...”라는 한자식 표기 또는 문어체적인 표기를 “...조사관에게...”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13條** (召喚, 同行令狀) ①少年部判事は 事件의 調査·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期日을 지정하여 本人·保護者 또는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

②本人 또는 保護者가 正當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少年部判事는 同行令狀을 發할 수 있다.

**第14條** (緊急同行令狀) 少年部判事は 本人을 保護하기 위하여 緊急措置가 需要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第13條第1項에 規定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發할 수 있다.

1) 일본식 문장을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第15條** (同行令狀의 方式) 同行令狀에는 少年 또는 保護者의 姓名, 年齡, 住居, 行爲의 概要, 引致 또는 收容할 場所, 有效期間 및 그 期間의 경과후에는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發付年月日을 기재하고 少年部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운데점의 의미가 여러 단어의 대등하게 나열할 때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2) 그리고 서명·날인은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반인은 양자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이름쓰고 도장찍고”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 서명을 흔히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호등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第16條** (同行令狀의 執行) ①同行令狀은 調査官이 執行한다.  
 ②少年部判事は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나 保護觀察官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同行令狀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③同行令狀을 執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保護者 또는 補助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7條** (補助人選任) ⑤少年部判事は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 少年分類審査院所屬公務員, 矯導所 또는 拘置所所屬公務員, 保護觀察官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그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이라는 표현도 문어체적으로 이를 “사법경찰관리에게”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20條** (審理開始의 決定) ①少年部判事は 送致書와 調査官의 調査報告에 의하여 事件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審理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審判에 부하여질 사유의 요지 및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1) “...調査報告에 의하여 事件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어체적인 문자로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사건을 심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이 경우 심판에 부하여질 사유의 요지 및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는 문장 또한 문어체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문어체가 복합되어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

로 “심판에 회부될 사유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고 고치는 것이 문장을 순화하고 이해하기도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23條** (審理의 開始) ①審理期日에는 判事와 書記가 **列席하여야** 한다.

②調査官, 保護者 및 補助人은 審理期日에 출석할 수 있다.

1) “列席”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출석한다”는 뜻인바 1항을 “판사와 서기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풀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쉽고, 열석이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흔히 사용하는 한자어는 아니므로 일반인에게 생소함을 줄 수 있다. 특히 소년법의 경우 그 대상자가 소년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第24條** (審理의 方式) ①審理는 親切하고 溫和하게 하여야 한다.

②審理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判事는 適當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在席**을 許可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24조에서 “在席”의 의미는 “자리에 있음”을 뜻하는데 이는 제24조의 내용에서는 소년사건의 경우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리하는 곳에 있을 수 있게 하여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굳이 한자어인 “在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 따라서 “심리를 볼 수 있게 허가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第25條** (意見陳述) ①調査官, 保護者 및 補助人은 **審理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判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本人의 退席을 命할 수 있다.

1) “…심리에 관하여…”는 문어체로 이를 “심리에서 혹은 심리에 대하여”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2) “퇴석”을 명할 수 있다는 것도 증인신문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인 아무개는 증언석에 앉고 나머지 증인은 증언이 들리지 않는 법정 밖으로 나가시오”라고 명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본인에게 나가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혹은 “본인에게 심리를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다고 생각된다.

**第28條** (援助, 協力) ①少年部判事は 그 職務에 관하여 모든 行政機關, 學校, 病院 기타 公私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援助와 協力を 요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正當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援助와 協力を 요구할 수 있다.”의 문장은 원조와 협력이라는 유사한 한자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조와 협력은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는 원조는 “도와준다”와 협력은 “힘을 모은다”로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말인 도움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조문을 해석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33條** (保護處分の 期間) ①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委託의 期間은 6月로 하되, 少年部判事は 決定으로써 6月의 범위안에서 1次에 한하여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少年部判事は 必要한 경우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그 委託를 종료시킬 수 있다.  
②第32條第1項第2號의 短期保護觀察의 期間은 6月로 한다.  
③第32條第1項第3號의 保護觀察의 期間은 2年으로 한다. 다만, 少年部判事は 保護觀察官의 申請에 따라 決定으로써 1年의 범위안에서 1次에 한하여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④第32條第3項의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同條第1項第2號의 短期保護觀察의 경우에는 50時間을, 同條第1項第3號의 保護觀察의 경우에는 2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保護觀察官이 그 命令을 執行함에는 本人의 正當적인 生活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短期保護觀察 또는 保護觀察이 종료되거나 假解除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執行하지 아니한다.

⑤第3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短期로 少年院에 送致된 少年의 收容期間은 6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1) “假解除”는 사전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 해제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가해제 보다는 “잠정해제”라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第40條** (保護處分の 競合) 保護處分の 繼續중 本人에 대하여 새로운 保護處分이 있었을 때에는 그 處分을 한 少年部判事は 전의 保護處分을 한 少年部에 照會하여 어느 한 保護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 규정은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고 일본식 관형격 조사의 남발등으로 인하여 문장이 어려워져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형격 조사 “의”를 고칠 필요성이 있다. “보호처분이 계속중인 본인에게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한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고치는 것이 문장이 평이하여 이해하기 쉽다.

**第41條** (費用의 補助) 第18條第1項第1號, 第2號의 措置에 관한 決定 또는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을 받은 少年의 保護者는 受託者에 대하여 그 監護에 관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保護者가 支給할 能力이 없는 때에는 少年部가 이를 支給할 수 있다.

1) 제41조는 “...수탁자에 대하여...”라고 하여 문어체로 되어있는 문장을 “수탁자에게...”로 고치는 것이 평이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도 쉽다.

2) “지급하여야 한다”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사용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준다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第52條** (少年部送致時의 身柄處理) ①第49條第1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少年部送致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少年을 拘禁하고 있는 施設의 長은 檢事の 移送指揮를 받은 때로부터 法院少年部가 있는 市·郡에서는 24時間이내에, 기타 市·郡에서는 48時間이내에 少年을 少年部에 引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拘束令狀의 效力은 少年部判事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少年의 監護에 관한 決定을 한 때에 喪失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決定은 拘束令狀의 效力期間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 “身柄의 처리”에서 신병은 그 사전적 의미가 “보호해야할 당사자의 몸”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한글로 표기할 경우 “몸의 병”이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제52조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소년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표제를 “소년의 처리”라고 고치는 것이 한글화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2) “喪失”이라는 한자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움은 없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잃는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62條** (換刑處分의 금지)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는 刑法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留置宣告를 하지 못한다. 다만, 判決宣告前 拘束되었거나 第18條第1項第3號의 措置가 있었을 때에는 그 拘束 또는 委託의 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은 勞役場에 留置된 것으로 보아 刑法 第57條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第63條** (懲役, 禁錮의 執行)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특히 設置된 矯導所 또는 일반 矯導所내에 특히 分界된 場所에서 그 刑을 執行한다. 다만, 少年이 刑의 執行중에 23歲에 달한 때에는 일반 矯導所에서 執行할 수 있다.

**第64條** (保護處分과 刑의 執行) 保護處分의 繼續중에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먼저 그 刑을 執行한다.

1) “換刑處分”은 벌금이나 과료를 물지 못한 자에게 구류를 살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법률용어에 해당한다. 이는

재산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소년이 그 재산범죄의 이행을 하지 못하여도 자유형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환형처분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이고 법률용어이므로, 이를 “자유형전환금지”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2) “...소년에 대하여는...”은 문어체적 표현으로 “...소년에게는”으로 고치는 것이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3) “분계된 장소”라는 의미는 경계가 구분된 장소를 의미하는데 분계된이란 한자어는 의미는 어렵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분된 장소”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에 쉽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된다.

**第68條 (報道禁止)** ①이 법에 의하여 調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保護事件 또는 刑事事件에 대하여는 姓名, 年齡, 職業, 容貌 등에 의하여 그 者가 당해 本人으로 推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新聞紙 기타 出版物에 게재 또는 放送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新聞紙에 있어서는 編輯人과 發行人, 기타 出版物에 있어서는 著作者와 發行者, 放送에 있어서는 放送編輯人과 放送人을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容貌”는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얼굴이나 생김새’라는 표현이 이해하기 평이하고 그렇게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은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그냥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서...”로 고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는 “해당본인 또는 본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推知”라는 한자어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는 한자어가 아니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굳이 한자어로 표기해야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新聞紙에 있어서는…기타 出版物에 있어서는…, 放送에 있어서는…을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의 문장이 문어체여서 일반인이 쉽게 읽어 내려가기 어렵고, 따라서 “신문지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은…, 방송은…”으로 고치는 것이 문장을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 제 5 장 소년원법에 대한 한글화와 용어순화

### ● 제 1 장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법은 少年院과 少年分類審査院의 組織과 機能 기타 少年의 矯正教育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1995.1.5>

1) “...에 關하여”라고 하는 것은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체와는 거리가 있고 따라서 이 경우에 “...에서”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 3 條 (管掌 및 組織)** ①少年院과 少年分類審査院은 法務部長官이 管掌한다.

<改正 1995.1.5>

②少年院 및 少年分類審査院의 名稱, 位置, 職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1995.1.5>

1) “管掌”이라는 한자어는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담당”이라는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므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내용 또한 유사하여 해석하는데 어려움도 없다고 생각된다.

**第 5 條 (處遇의 基本原則)** ①保護少年 또는 委託少年(이하 “保護少年등”이라 한다)에 대한 處遇는 그들의 心身發達에 알맞는 環境을 造成하고 安定과 規律있는 生活속에서 保護少年등의 成長可能性을 최대한으로 伸張시킴으로써 社會適應力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社會에 復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②보호소년에게는 性行(性行)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1) “성행의 개선…” 라는 표현은 성행은 성격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성행이라고 하면 한글로 표기할 경우 그 의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2004년 개정에서도 성행이라고 표기하면서 한자를 병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차라리 성격과 행동이라고 풀어서 서술한다면 그런 불편함이 없이 그 의미의 전달도 정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진보의 정도에 따라…”에서 진보는 사전적 의미가 “귀중한 보배 또는 점차적으로 나아짐”을 의미한다고 하여 진보라는 용어가 사전적 의미상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진보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항상 있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일상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향상”이라는 표현이 더 보편적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문장에서 진보가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것인데 “진보의 정도에 따라 향상된 처우를…”이라고 하여 동일한 의미가 반복되지 않고 “개선과 향상의 정도에 따라 대우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第10條** (院長의 面接) 院長은 保護少年등으로부터 處遇 또는 一身上의 事情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保護少年등과 面接을 하여야 한다. <改正 1995.1.5>

1)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처우는 대우로 고치는 것이 평이하고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은 “개인적 사정에 관한 것”으로 고치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16條 (褒賞)** ①院長은 矯正成績이 優秀하거나 品行이 他人의 模範이 되는 保護少年등에 대하여 褒賞을 할 수 있다. <改正 1995.1.5>  
②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褒賞을 받은 保護少年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處遇를 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 “褒賞”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한자로 표기된 경우에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고 포상의 의미가 “칭찬하고 권장하여 상을 준다”는 의미이므로 그냥 “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쉽다. 물론 포상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장과 부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이라는 의미 속에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냥 “상”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17條** (給與品等) ①保護少年등에 대하여는 衣類, 寢具, 學用品 기타 處遇에 필요한 物品을 給與 또는 貸與한다.  
 ②保護少年등에 대하여는 主食, 副食, 飲料 기타 營養物을 給與하되, 給與量은 保護少年이 건강을 유지하고 心身の 發育을 增進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給與品 및 貸與品の 種類와 數量의 基準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1) “給與 또는 貸與”의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성이 적은 한자어로 이를 “물품을 주거나 빌려준다”라고 하여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

2) 제2항도 같은 방식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第18條** (面會과 書信) ①院長은 保護少年등의 保護 및 矯正教育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護少年등의 面會를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1995.1.5>  
 ②院長은 保護少年등의 保護 및 矯正教育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保護少年등의 書信受發을 제한할 수 있으며 書信의 내용을 檢閱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 “서신수발을...” 서신은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오는 날 서신이라는 표현보다는 편지라고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발은 여기서 받아보는 것이므로 그 의미를 풀어 “받아보고 혹은 받는 것”으로 고쳐서 “편지를 받아보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22條** (領置와 遺留金品の 處分) ①院長은 保護少年등이 所持한 金錢, 衣類 기타의 物品을 領置한 경우에는 이를 安全하게 保管하고 保護少年등에게 受領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1995.1.5>

②院長은 死亡한 保護少年등의 遺留金品에 대하여 親權者, 後見人 또는 親族으로부터 請求가 있을 때에는 請求者에게 이를 交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死亡한 날로부터 1年이내에 請求가 없을 때에는 그 遺留金品은 國庫에 귀속한다. <改正 1995.1.5>

③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을 離脫한 保護少年등의 遺留金品은 離脫한 날로부터 1年이내에 本人의 請求가 없는 때에는 國庫에 귀속한다. <改正 1995.1.5>

- 1) “領置”는 보관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遺留金品”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유류품인 것이 보통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하여도 한글로 전용할 경우 그 의미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한글로 풀어서 그 의미를 앞의 문장과 이어서 “사망한 보호소년등이 남긴 금품 혹은 물려준 금품”으로 하는 것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第24條** (分類審査의 원칙 및 방법<개정 2004.1.20>) ①分類審査는 保護少年등의 身體, 性格, 素質, 環境, 學歷 및 經歷과 그 相互關係를 糾明하여 保護少年등의 矯正에 관한 最善의 方針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5.1.5>

②분류심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교정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1) “...상호관계를 糾明하여”에서 糾明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그 사전적 의미가 “자세히 캐고 따져 사실을 밝힘”을 뜻하는 한자어이므로 우리말로 표현하여도 무리가 없으므로 “상호관계를 밝혀...”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第 4 章 矯正教育等

**第31條** (學籍管理) ①보호소년의 소년원학교에의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개정 2004.1.20>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동조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신설 2004.1.20>

③소년원학교장은 保護少年이 **입교한 때에는** 그 사실을 保護少年이 最終적으로 在學했던 學校(이하 “前籍學校”라 한다)의 長에게 통지하고 당해 保護少年의 學籍에 관한 資料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前籍學校의 長은 教育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學籍事項을 지체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1) “입교한 때”는 입교는 소년원학교에 들어온다는 표현의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교라는 표현은 학교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보통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이라고 하고 있는데, 본조에서도 그 의미는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교라고 하여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냥 그 의미를 풀어서 “들어오는 것”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본다. 입교라는 표현은 어딘지 모르게 권위적이고, 보호소년을 차별하는 느낌을 받게 하므로 그냥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되고 “들어올 때”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37條** (通勤就業) ①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履修**한 때에는 産業體에 通勤就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을 한 때에는 당해 産業體로 하여금 勤勞基準法の 規定을 준수하게 하고, 保護少年에게 報酬가 支給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本人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1) “履修”는 소정의 과정을 마친 것을 말하는 바 그 의미상 그냥 “마친 때에는”이라고 하여도 의미는 통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수라는 한자어를 꼭 사용해야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 제 6 장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한글화와 용어순화

### ●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법은 行刑法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矯導所등의 設置·운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民間에 委託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矯導所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收容者의 處遇向上과 社會復歸를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

1) “處遇向上”은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대우향상”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될 것이다.

**第 3 條** (矯正業務의 民間委託) ①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矯正業務를 公共團體外의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矯正業務를 包括的으로 委託받아 1개 또는 수 개의 矯導所등을 設置·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法人에게만 委託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矯正業務의 受託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受託者의 人力·組織·施設·財政能力·公信力 등을 綜合的으로 檢討한 후 적정한 者를 受託者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受託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受託者 選定審査委員會(이하 “選定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選定委員會의 구성, 審査方法, 受託者의 選定節次 기타 選定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문어체로 “이 법에 따라서…”로 고치는 것이 문장을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2) “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受託者를 선정하고자…” 규정에 의한은 우리말의 어법상 어색한 표현이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라고 고치는 것이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第12條** (任員就任의 承認取消)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命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任員간의 紛爭·會計不正 및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당해 矯正法人의 設立目的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第1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矯正法人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法人의 設立形態에 따라 民法중 社團法人 또는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 기타 設立根據法律을 적용한다.

**第23條** (運營經費) ①法務部長官은 사전에 企劃豫算處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는 矯正法人에 대하여 매년 당해 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한다.

**第31條** (制服着用과 武器購入) ①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근무중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②民營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武器는 당해 矯正法人의 부담으로 法務部長官이 購入하여 이를 配定한다.

③民營矯導所등의 武器購入·配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1) “任員간의 紛爭·會計不正 및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당해 矯正法人의 設立目的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당해교정법인은 해당교정법인 또는 교정법인이라고 하여도 의미가 통하고 더 이해하기 쉽다.

**第33條** (監督 등) ①法務部長官은 民營矯導所등의 業務 및 그와 관련된 矯正法人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요한 경우 指示나 命命을 할 수 있다. 다만, 收容者에 대한 教育和 教誨에 관하여는 당해 矯正法人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民營矯導所등에 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당해 民營矯導所등의 業務를 指導·監督하게 하여야 한다.

③矯正法人 및 民營矯導所등의 長은 항시 所屬職員의 勤務遂行狀況을 監督하고 필요한 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1) “教誨”는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이해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教誨의 의미가 종교를 통하여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종교적 가르침” 혹은 “종교적 敎化”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2) 제2항의 “당해 민영교도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해당교도소” 또는 그냥 “민영교도소”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39條** (權限의 위임) 法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官할 地方矯正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의한 이라는 표현은 문맥을 어색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어법상 맞는 “이 법에 따른...”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 제 7 장 보안관찰법의 한글화와 용어의 순화

**第 1 條** (目的) 이 법은 特定犯罪을 범한 者에 대하여 再犯의 危險性을 예방하고 健全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保安觀察處分을 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社會의 安寧을 유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1) “...를 범한 자에 대하여...”라고 되어있는 규정을 권위적인 표현을 탈피하여 “...범한 사람”이라고 고치는 것이 용어를 순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는 법에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그냥 “자에 대하여”로 두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2) “재범의 위험을 예방하고健全的社會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라고 한 문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거나 어법상 어색한 문장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순화하고, 이러한 순화가 의미를 다르게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문장의 경우 보안관찰법에서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이유는 재범의 위험을 예방하고健全的社會인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것을 도와 주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임에도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촉진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재촉하여 빨리 진행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이를 토대로 해석하여 보면健全的社會복귀를 재촉하여 빨리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되어 보안관찰법이 범죄자를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위 문장을 “...예방하고健全的社會복귀를 도와주기 위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第 3 條** (保安觀察處分對象者) 이 법에서 “保安觀察處分對象者”라 함은 保安觀察 該當犯罪 또는 이와 競合된 犯罪로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期合計가 3年이상인 者로서 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執行을 받은 사실이 있는 者를 말 한다.

1) “...형의 선고를 받고...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는 문장은 문어체적 문장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로서”는 “3년 이상인 자 중에서”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는 “형의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자를 말한다”고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될 것이다.

2) “함은”도 불필요한 문어체적 표현이라고 생각되어 빼도 무방하다.

3) 따라서 본조를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로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 중에서 형의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자를 말한다.”고 고치는 것이 어법과 일본식 표현의 조사를 탈피하여 바람직하다.

**第 4 條 (保安觀察處分) ①**第3條에 해당하는 者중 保安觀察該當犯罪를 다시 범할 危險性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再犯의 방지를 위한 觀察이 필요한 者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을 한다.

②保安觀察處分을 받은 者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住居地 管轄警察署長(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고, 再犯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保安觀察을 받아야 한다.

1) “재범의 위험성”을 우리말로 풀어 사용하여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2) “...자에 대하여는”이라는 문어적인 표현은 “필요한 자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제2항의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라는 표현은 “소정”이라는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였지만 소정이라는 의미가 정한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한바의 사항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동의어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이를 “이 법에 정한 사항을” 또는 “이 법에 따른 사항을”이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第 5 條** (保安觀察處分の 期間) ①保安觀察處分の 期間은 2年으로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檢事の 請求가 있는 때에는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그 期間을 更新할 수 있다.

1) “법무부 장관은 檢事の 請求가 있는 때에는”의 표현은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갱신(更新)”이라는 한자어는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법령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민법에서는 계약이나 행정법상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통상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sup>44)</sup> 하나는 단순한 기간연장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의 것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나 행정처분의 성립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계약의 갱신에서는 새로운 계약의 성립으로 이해된다. 여기서는 기간연장의 의미로 이해되며 따라서 “연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좀더 쉽게 이해되고, 이를 “연장”으로 바꾸어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sup>45)</sup> 물론 갱신은 그 의미가 “새롭게 고친다”는 의미로 법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그 의미에 맞게 고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第 6 條** (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 申告) ①保安觀察處分對象者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刑의 執行을 받고 있는 矯導所, 少年矯導所, 拘置所, 留置場, 軍矯導所 또는 營倉(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 에서 出所전에 居住豫定地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矯導所등의 長을 經유하여 居住豫定地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고, 出所후 7日이내에 그 居住豫定地 管轄警察署長에게 出所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 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제공하는 居住할 場所(이하 “居所”라 한다)를 居住豫定地로 申告하여야 한다.

44) 박영도,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15면 이하.

45) 정완외, 전계논문, 77면 이하 참조.

②保安觀察處分對象者は 矯導所등에서 出所한 후 第1項의 申告事項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變動이 있는 날부터 7日이내에 그 變動된 사항을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が 住居地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警察署長에게 第18條第4項 但書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矯導所등의 長은 第3條에 해당하는 者が 生길 때에는 지체없이 保安觀察處分 審議委員會와 居住豫定地를 管轄하는 檢事 및 警察署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는 “대통령령에 따라”라는 구어체적인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2) “刑의 執行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형이 집행되고 있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일본식 표현인 관형격조사를 줄이고 탈피하여 우리식 문장이 될 것이므로 형이 집행되고 있는 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居住豫定地”는 본조에서 의사상으로 주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소지에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주소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거주예정지라는 한자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한자어로 사용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살 곳” 또는 “사는 곳”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경유하여”라는 표현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이러한 한자식 표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장을 거쳐”라고 쓰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신고사항에 변동(變動)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그 변동된 사항을”에서 변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에 해당하지만 한자어의 사용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한글순화의 목적에도 맞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뀐”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을 “保安觀察處分對象者は 矯導所등에서 出所한 후 第1項의 申告事項이 바뀐 때에는 바뀐 것이 있는 날부터 7日이내에 그 바뀐 내용을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

만,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が 住居地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警察署長에게 第18條第4項 但書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고 고치면 될 것이다.

**第 8 條** (請求의 방법)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觀察處分請求는 檢事が 保安觀察處分請求書(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處分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保安觀察處分을 請求받은 者(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姓名 기타 被請求者を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③檢事が 處分請求書를 제출할 때에는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資料와 意見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檢事는 保安觀察處分請求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處分請求書謄本을 被請求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觀察處分請求는…”는 문어체적인 문장으로 “제7條에서 규정한 보안처분청구는…”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될 것이다.

2) “保安觀察處分을 請求받은 者の…”의 수동태의 형태로 된 문장은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자…”의 피동태의 형태의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다.

3)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일본식표현인 관형격조사를 삭제하여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다.

4) 제3항과 제4항의 문장은 별개의 항으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그 구조가 연결된 것처럼 조사를 사용하고 있다. 즉 제3항에서는 “검사가…” 제4항에서는 “검사는”이라고 하여 “검사가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증명하는…첨부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단일 문장을 두 개의 항으로 나누면서 제3항에서는 검사가 제4항에서는 검사는으로 조사를 달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어법에 맞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4항의 경우에도 검사가라는 주격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항을 나눌 필요가 없이 제3항과 제4항을 묶어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서 “검사가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증명하는…첨부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송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第 9 條 ( 調 査 )** ①檢事は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觀察處分請求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保安觀察處分對象者, 請求의 原因이 되는 사실과 保安觀察處分을 필요로 하는 資料를 調査할 수 있다.  
②司法警察官吏와 特別司法警察官吏(이하 “司法警察官吏”라 한다)는 檢事の 指揮를 받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檢事は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觀察處分請求를 위하여”를 문어체를 탈피하여 “검사는 제7조에서 규정한 保安觀察處分請求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10條 ( 審 査 )** ①法務部長官은 處分請求書와 資料에 의하여 請求된 事案을 審査한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務部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의 命을 받은 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權限을 가진다.  
1. 被請求者 기타 關係者의 召喚·審問·調査  
2.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의 照會 및 關係資料의 제출요구

1) “法務部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라는 표현은 문어체적인 문장으로 굳이 이렇게 사용할 필요성이 적고, 이러한 표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무부소속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調査의 命을 받은 公務員은”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인 관형격조사의 남발로 일본식 표현을 탈피할 필요성이 크고 따라서 “조사를 명받은 공무원”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고칠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된다.

3) “公·私團體에의...조회”는 관형격 조사 의를 고쳐서 “公·私團體에게 조회 및 관계자료 제출요구”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第11條** (保安觀察處分の 免除) ①法務部長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중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者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을 하지 아니하는 決定(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遵法精神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一定的한 住居와 生業이 있을 것
3. 大統領令이 정하는 身元保證이 있을 것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要件을 갖춘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月내에 保安觀察處分免除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檢事は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要件을 갖춘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情狀을 참작하여 危險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免除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④免除決定을 받은 者가 그 免除決定要件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은 免除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⑤免除決定과 免除決定請求, 免除決定取消請求 및 그 決定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請求 및 審査決定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⑥保安觀察處分の 免除決定을 받은 者는 그때부터 이 法에 의한 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로서의 義務를 免한다.

1) 제11조 제1항 “法務部長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중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者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을 하지 아니하는 決定(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은 전체적으로 문어체적이거나 어법이 어색하므로 “법무부장관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중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

춘 **者에게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고치는 것이 괄호안에서 이하 면제결정이라고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그 의미를 풀어 사용하는 것보다 면제결정이라는 한자어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한글로 전용되어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1항 제1호에서 “**준법정신**”이란 표현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표현을 고칠 필요성이 있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규정으로 생각된다.<sup>46)</sup>

3) 제2호에서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에서 생업이라는 표현의 한자어는 사전적 의미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생업이라는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고 또한 한글로 전용하여도 이해가 어렵지 않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 할 수 없고, 굳이 사용이 필요한 한자어도 아니므로 그냥 일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통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어 “일정한 사는 곳과 일이 있을 것”으로 한글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法務部長官은…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申請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月내에 **保安觀察處分免除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는 문장에서는 관형격조사가 불필요하게 사용되어 일본식 표현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법무부장관은…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문법에도 많다.

5) “**情狀을 참작하여 危險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의 문장에서 정상은 “**범죄의 구체적인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이라는 의미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의 정상은 전자의 의미에 가깝지만 분명하게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정상이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굳이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의 불명확성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법문의 의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46) 이는 본 글의 논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는다.

서 이 경우에는 “전후사정을 참고하여” 혹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항을 참고하여”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sup>47)</sup>

6) “危險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는 굳이 이렇게 문어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위험성이 없으면”으로 혹은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면”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免除決定要件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문어체적이므로 이를 “免除決定要件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검사의 청구…취소할 수 있다”고 고치는 것이 어법상 맞고 이해하기도 쉽다.

**第12條**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 ①保安觀察處분에 관한 事案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法務部에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和 6人的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長은 法務部次官이 되고, 委員은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로 하되, 그 過半數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④委員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된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은 그 職을 免한 때에는 委員의 資格을 상실한다.

⑥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도 이 法 기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⑦委員長은 委員會의 會務를 統理하고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⑧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⑨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案을 審議·議決한다.

1. 保安觀察處分 또는 그 棄却의 決定
2. 免除 또는 그 取消決定
3. 保安觀察處分の 取消 또는 期間의 更新決定

⑩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을 포함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⑪委員會의 운영·庶務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47) 정상(情狀)에 대한 의미와 표현에 관한 것은 (정완외2인 공저, 전개논문, 92면 이하 참조). 情狀은 그 법문 전체적인 내용에 맞게 형사소송법 제242조에서의 정상은 양형으로 표현하는 견해도 있다(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2, 224면 참조).

1) 제4항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하고 있다. 위촉의 사전적 의미가 “남에게 맡겨 부탁한다”이고 임명은 “직무(일)를 맡긴다”는 의미로 사전적으로 그 차이를 크게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임명과 위촉이 의미가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임명은 보통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촉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므로 이를 “임명 또는 부탁한다”라고 하여도 훨씬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표현이 될 것이다. 임명과 위촉의 구체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대통령이 행하는 법률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촉을 생략하여도 의미를 전달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 물론 임명장과 위촉장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임명과 위촉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임명이 더 강력한 효력을 지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따라서 제5항 “위촉된 委員” 또한 “임명된 위원”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다만, 公務員인 委員은 그 職을 免한 때에…”의 문장의 의미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면직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굳이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이라고 할 이유가 없고 “공무원인 위원은 면직되면…위원자격을 상실한다.”라고 하여 관형격조사인 “의”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委員長은…會務를 統理하고…”에서 “會務”라는 한자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회무의 의미는 “위원회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위원장은…위원회의 사무를…”로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統理”라는 한자어는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로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고칠 필요가 있는데, 전체문맥과 관련하여 총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총괄 또는 통괄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므로 “위원장은…사무를 통괄하고…”로 고치는 것이 보통은 많이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다. 더욱이 통리는 한글로 전용할 경우 “사리에 밝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 표현을 고칠 필요성이 크다.

5) “棄却의 決定”에서 기각은 법률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든 일반인이든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는 아니다. 따라서 기각이라는 한자어를 고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기각결정이란 “소송을 접수한 법원이 그 내용을 심리하여 이유가 없거나 또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란 표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며 따라서 배제나 배척이라는 한자어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제나 배척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의미도 기각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각의 결정”에서 “의”는 일본식 표현으로 관형격조사 의를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6) “保安觀察處分の 取消 또는 期間의 更新決定”에서 갱신은 여기서 연장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간의 연장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라고 본다.

7) “委員會…庶務…”에서 서무는 보통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서무라는 표현은 학교 등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사무라는 표현이 일상적이고 이해하기도 쉬우므로 서무를 “사무”로 고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第13條** (被請求者の 資料提出等) ①被請求者は 處分請求書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法務部長官 또는 委員會에 書面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陳述하고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請求者 및 기타 關係者를 출석시켜 審問·調査하거나 公務所 기타 公·私團體에 대하여 照會할 수 있으며, 關係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被請求者”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구 받은자” 혹은 “청구당한자”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2) “公務所 기타 公·私團體에 대하여 照會할 수 있으며” 공무소...단체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어법에 맞지 않고, 이를 공·사단체에 조회할 수 있으며”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 맞고, 이해하기도 쉽다.

**第14條 (決定)** ①保安觀察處分에 관한 決定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法務部長官이 행한다.  
②法務部長官은 委員會의 議決과 다른 決定을 할 수 없다. 다만, 保安觀察處分對象者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보다 유리한 決定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행한다.”는 표현은 “법무부 장관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어법에도 맞는 표현이다.

2) “다만, 保安觀察處分對象者에 대하여...”는 문어체적 표현으로 어법에도 맞지 않으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로 고치른 것이 간결하고 어법적으로도 맞는 표현이다.

**第15條 (議決書등)** ①委員會의 議決은 이유를 붙이고 委員長과 出席委員이 記名捺印하는 文書로써 행한다.  
②法務部長官의 決定은 이유를 붙이고 法務部長官이 記名·捺印하는 文書로써 행한다.

1) “...委員長과 出席委員이 記名捺印하는...” 기명날인하는 이라는 표현은 시제가 맞지 않고 따라서 기명날인한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명날인”이란 한자어도 흔히 사용되지만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아니므로 이름적이고 도장적이고 정도로 고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sup>48)</sup>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기명날인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서명과 이름을 적고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명의 경우 손으로 적거나 인쇄된 서체의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이를 단순히 이름적이고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생각해볼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2) “法務部長官이 記名·捺印” 여기서 기명날인과 기명·날인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표

48) 김문오,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1, 108면 이하.

현상의 오류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러한 표현 또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아니다. 가운데점의 의미는 동일한 사항을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기명 혹은 날인하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第16條** (決定의 取消등) ①檢事는 法務部長官에게 保安觀察處分の 取消 또는 期間의 更新을 請求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은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審査·決定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와 그 請求의 審査·決定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請求 및 審査決定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1) “...期間의 更新을...” 갱신이라는 한자어는 법률용어로 사용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갱신이라는 한자어로 표기된 용어가 사용되는 법문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는 오해를 불러올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갱신이 아닌 본문의 내용에 맞추어 “연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第17條** (保安觀察處分の 執行) ①保安觀察處分の 執行은 檢事が 指揮한다.  
 ②第1項의 指揮는 決定書謄本을 첨부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③檢事는 被保安觀察者가 도주하거나 1月이상 그 所在가 불명한 때에는 保安觀察處分の 執行中止決定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1項의 指揮는 決定書謄本을 첨부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어법상 어색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본조를 어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문장이 될 것이다.

2)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에서 문장에서 된 때에는 이라는 현재형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법상 맞지 않고 따라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쉽다.

3) “등본”이라는 한자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지만 그 사전적 의미가 “원본을 그대로 베껴만든 문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복사본을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현대사회에 맞고, 등본은 과거 용어로 복사본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불만하다.

**第18條** (申告事項) ①保安觀察處分을 받은 者(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保安觀察處分決定告知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住居地를 管轄하는 支署 또는 派出所의 長(이하 “支·派出所長”이라 한다)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제공하는 居所를 住居地로 申告하여야 한다.

1. 原籍, 本籍, 住居(실제로 生活하는 居處), 姓名, 生年月日, 性別, 住民登錄番號
2. 家族 및 同居人 狀況과 交友關係
3. 職業, 月收, 本人 및 家族의 財産狀況
4. 學歷, 經歷
5. 宗教 및 加入한 團體
6. 職場의 所在地 및 連絡處
7. 保安觀察處分對象者 申告를 행한 管轄警察署 및 申告日字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被保安觀察者는 保安觀察處分決定告知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每3月이 되는 달의 末日까지 다음 各號의 사항을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3月間의 主要活動事項
2. 通信·會合한 다른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人的事項과 그 日時, 場所 및 내용
3. 3月間에 행한 旅行에 관한 사항(申告를 마치고 중지한 旅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管轄警察署長이 保安觀察과 관련하여 申告하도록 指示한 사항

③被保安觀察者는 第1項의 申告事項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7日 이내에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被保安觀察者가 第1項의

申告를 한 후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거나 第20條第5項에 의하여 居所가 變更된 때에는 제공 또는 變更된 居所로 移轉한 후 7日 이내에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被保安觀察者가 住居地66를 移轉하거나 國外旅行 또는 10日 이상 住居를 離脫하여 旅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居住豫定地, 旅行豫定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가 住居地를 移轉하고자 할 때에는 第20條第5項에 의하여 居所變更을 申請하여 變更決定된 居所를 居住豫定地로 申告하여야 한다.

⑤管轄警察署長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申告 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제18조 제1항에서 피보안관찰자를 풀어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자로 표현한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것이다.

2) 제1항의 “告知”라는 한자어는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한자어를 쓰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실을 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말로 풀어 “알게되다” 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안관찰처분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로 고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支署 또는 派出所의 長”에서 지서는 경찰청법의 직제에 해당하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지서는 일본식 조직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第20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문이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본 법문에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고쳐진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하는 경우에는”에서 “해당할 경우”라고 하는 것이 시제를 맞게 고치는 것이 옳고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sup>49)</sup>

49) 김문오, 전계논문, 180면 이하 참조.

5) “原籍,<sup>50)</sup> 本籍, 住居(실제로 生活하는 居處)…”에서 주거를 설명하면서 실제로 생활하는 “거처”라고 한 표현은 거처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꼭 사용해야 할 한자어는 아니므로 “곳”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실제로 생활하는 곳”이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6) “家族 및 同居人 狀況과 交友關係”에서 “동거인”이란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꼭 사용해야만 하는 한자어는 아니므로 가능하면 한글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동거인은 “같이 사는 사람”으로 풀어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거인 상황”에서 상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의 그때의 모습이나 형편.”을 말하는 것으로 본 호에서 말하려는 것과 의미가 일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본조의 취지에 맞게 가족 및 동거인 현황, 또는 사항으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우관계”에서 교우라는 한자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한글로 전용될 경우 동창과 같은 친구 혹은 종교적인 친구라는 2중의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친구관계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7) 제6호의 “連絡處”는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꼭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한자어는 아니므로 오늘날 연락처는 당연히 전화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그냥 전화번호라고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8) “保安觀察處分對象者 申告를 행한 管轄警察署 및 申告日字”는 주어가 보안처분대상자인데 주격조사가 빠져서 문장이 어색하므로 이를 “보안처분대상자가 신고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sup>51)</sup>라고 고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다.

50) 원적은 “호적법(戶籍法)에서, 입적(入籍)하거나 취적(就籍)하기 전의 호적”을 말하는 것으로 본적이 있으면 되고, 원적은 불필요하고, 또한 악용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비록 한글화와 용어순화에 상관없지만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1) 신고일자도 꼭 이렇게 한자어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신고날짜”로 고치는 것이 한글화와 용어 순화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된다.

9) “3月間의 主要活動事項”에서 주요활동사항은 사항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다.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항이란 “일의 조목조목”을 말하는 것으로 3월간의 활동한 내용을 적어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주요활동내용”이라고 고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10) “會合한 다른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人的事項과 그 日時, 場所 및 내용”에서 회합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회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같은 종류의 분자가 화학 결합을 하지 않고 둘 이상이 모여 분자 사이의 힘에 의하여 한 개의 분자 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말하여 그 의미가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집회” 혹은 “모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모임이라고 고치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모임을 가진 다른 보안처분대상자의…”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1) “…居所로 移轉한 후…”에서 이전이란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꼭 사용할 필요가 있는 한자어는 아니므로 한글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거소로 옮긴 후 7日이내에…”로 고치는 것이 한글화와 용어 순화에 맞다고 생각된다.

12) “住居를 離脫하여…”에서 이탈이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꼭 사용해야만 하는 한자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주소를 떠나 혹은 벗어나…”라고 하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이다. 그리고 “居住豫定地, 旅行豫定地…”라는 한자어도 꼭 사용해야할 필요가 있는 한자어가 아니므로 이를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sup>52)</sup>

13) “…때에는 申告畢證을 교부…”에서 신고필증은 필증은 신고등을 하였다는 증명서나 권리증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증 혹은 신고증명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될 것이다.<sup>53)</sup>

52) “머물러있을 곳, 여행할 곳”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53) 필증이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 보통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어서 일반인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형사법분야 뿐만 아니라 필증이란 한자어가 사용되는 모든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第19條 (指導)** ①檢事 및 司法警察官吏는 被保安觀察者의 再犯을 방지하고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指導를 할 수 있다.

1. 被保安觀察者와 긴밀한 接觸을 가지고 항상 그 行動 및 環境등을 觀察하는 것
2. 被保安觀察者에 대하여 申告事項을 이행함에 적절한 指示를 하는 것
3. 기타 被保安觀察者가 社會의 선량한 一員이 되는데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것

②檢事 및 司法警察官은 被保安觀察者의 再犯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保安觀察該當犯罪를 범한 者와의 會合·通信을 금지하는 것
2. 集團的인 暴行, 脅迫, 損壞, 放火등으로 公共의 安寧秩序에 직접적인 威脅을 가할 것이 명백한 集會 또는 示威場所에의 出入을 금지하는 것
3. 被保安觀察者의 보호 또는 調査를 위하여 特定場所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1) 제19조의 표제가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는 사전적 의미가 “어떤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가르치어 이끄는 또는 그 가르침”을 말하는데 본 조의 내용과 꼭 맞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지도는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적당한 용어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sup>54)</sup>

2) “被保安觀察者와 긴밀한 接觸을 가지고 항상 그 行動 및 環境등을 觀察하는 것”이란 표현에서 ‘긴밀한 접촉’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보안관찰처분을 받은자와 자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긴밀한 접촉이라는 한자어로 꼭 표기하기 않아도 의미를 파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한글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긴밀한 만남” 혹은 “자주 만나고…”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한글화에도 맞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찰’이라는 한자어도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꼭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환경 등을 살핀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被保安觀察者에 대하여 申告事項을 이행함에 적절한 指示를 하는 것”은 문장이 문어체적이라 이해하기 어렵고 어법에도 맞지 않는 문장이

---

다고 생각된다.

54) “지도”에 대한 용어 순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적당한 용어를 발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므로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보안관찰자에게 신고에 필요한 사항(내용)을 적절하게 지시하는 것”이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어법에도 맞는 문장이 될 것이다.

4) “保安觀察該當犯罪를 범한 者와의 會合·通信을 금지하는 것”에서 회합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법률용어로 “집회 혹은 만남”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公共의 安寧秩序에 직접적인 威脅을 가할 것이 명백한 集會 또는 示威場所에의 出入을 금지하는 것”에서는 ‘안녕질서’에서 안녕이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는 아니며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안녕은 사전적 의미가 “안전하고 태평함”을 말하고 평안의 높인 말이다. 공공의 안녕질서는 “공공의 평안과 사회질서”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편리하고 해석하는데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위장소에의”에서 조사 ‘에’는 명사뒤에서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에의’가 아닌 ‘에’로 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위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문법적으로나 어법적으로 자연스럽다.<sup>55)</sup>

5) “被保安觀察者의 보호 또는 調査를 위하여 特定場所에의<sup>56)</sup>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관형격 조사 ‘의’가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피보고관찰자를 보호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특정장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고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55) 이희승 감수, 민중 국어사전, 민중서림, 1334면 참조.

56) ‘특정장소에의’는 ‘에’가 명사뒤에 붙어서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로 사용되므로 “특정장소에”로 고치는 것이 옳다.

**第20條** (보호) ①檢事 및 司法警察官吏는 被保安觀察者가 自助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自衛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住居 또는 就業을 알선하는 것
2. 職業訓練의 機會를 제공하는 것
3. 環境을 개선하는 것
4. 기타 本人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援助를 하는 것

③法務部長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중 國內에 家族이 없거나 家族이 있어도 引受를 거절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居所를 제공할 수 있다.

④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에 대한 居所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正當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法務部長官은 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에게 國內에 入수를 희망하는 家族이 생기거나 기타 居所變更의 需要가 있는 때에는 本人의 申請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이미 제공한 居所를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 法務部長官은 3月 이내에 居所의 變更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1항에서 “檢事 및 司法警察官吏는 被保安觀察者가 自助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自衛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의 조문에서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自助’라는 한자어는 읽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는 결코 아니며, 일상적으로도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로 고칠 필요가 있다. 자조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자기를 도움 혹은 국제법상 용어로 국가가 자력으로 국제법상 권리를 확보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본 조와 내용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조문의 의미와 통하면서도 쉽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에서 개선과 자위라는 한자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개선이라는 한자어가 본문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위”는 “자

기 힘으로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로 다른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이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문장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검사…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을 바로잡고 방어<sup>57)</sup>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한글화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목적에도 맞아 이해하기도 쉽다.

2) 제2항 제1호에서 “취업”이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고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일자리”라는 우리말로 표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sup>58)</sup>

3) “環境을 개선하는 것”에서 ‘개선’이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아니고, 또한 한글로 전용되어도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꼭 한자어로 사용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환경을 고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기타 本人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援助를 하는 것”의 문장에서 “원조”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음독이 쉬운 한자어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sup>59)</sup> 그리고 어법상으로도 불필요하게 문어체적으로 표현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문장을 고치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게 될 것이다.

4) “法務部長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중 國內에 家族이 없거나 家族이 있어도 引受를 거절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居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법문에서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 여기서 인수는 사전적 의미가 “어떤 물건에 대한 권

57) 자위라는 개념이 타인의 폭력이나 협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므로 방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58) 취업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실업과 대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59) 꼭 한자어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도 우리 법률은 습관적으로 한자어로 표기함으로써 권위적인 면을 탈피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리 등을 넘겨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인수는 물건등을 넘겨받는 행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본 문에서 적절한 용어라 할 수 없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가족이 있어도 보안관찰자와 같이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살 곳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내용에 맞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한글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본 문의 경우에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함께 사는 것을 거절당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sup>60)</sup> 거소<sup>61)</sup>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하기 쉽다.

5) “被保安觀察者에 대한 居所제공의 요청을...”에서 ‘거소제공의 요청’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불필요하게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일본식 표현의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예를 들어 “거소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고치는 것이 어법에도 맞고 이해하기 쉽다.

6) “...國內에 인수를 희망하는 家族이 생기거나...”에서 인수<sup>62)</sup>를 희망하는 가족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함께 살려는 가족이 생기거나 혹은 국내에서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가족이 생기거나”로 고치는 것이 옳다.

---

60) ‘바에 의하여’도 바에 따라서로 고치는 것이 어법에 맞다고 생각된다.

61) ‘거소’라는 한자어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는 아니므로 ‘사는 곳’ 혹은 ‘살 곳’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 “引受”는 넘겨받는다는 의미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인수하는 것은 물건이나 권리가 아닌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第26條** (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則등) ①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계기된 者에 대한 保安觀察處分에 관하여는 國防部長官은 法務部長官의, 軍事法院檢察官은 檢事의, 軍司法警察官吏는 司法警察官吏의 이 法에 의한 職務를 행한다.

②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계기된 者에 대한 保安觀察處分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軍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를 둔다.

③軍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第1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國防部長官 또는 軍事法院檢察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계기된 者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事案을 法務部長官 또는 檢事에게 移送한다. 이 경우 移送전에 한 審査 또는 調査는 移送후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⑤法務部長官 또는 檢事は 保安觀察處分對象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계기된 者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事案을 國防部長官 또는 軍事法院檢察官에게 移送한다. 이 경우 移送전에 한 審査 또는 調査는 移送후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1) 제26조 제4항과 제5항에 “각호에 계기된 자”에서 계기된 자란 한글로 표기할 경우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 그리고 “계기”는 대표적인 일본식 표기에 해당한다.<sup>63)</sup> 우선 “계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써서 붙이거나 걸어 두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함, 또는 그 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규정한 정도로 고치는 것도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이라고 생각된다.<sup>64)</sup> 본문에서는 그 문장의 내용을 살펴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고쳐도 무방할 것이다. 아니면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sup>65)</sup>

2)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에서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규정된 자가 명백할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63) 박영도, 일본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20면.

64)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계기하다”를 “규정하다”로 바꾸었다(박갑수, “개정 민사소송법의 순화와 향후과제”, 19면).

65) 정완외, 전계논문, 103면 참조.

3) “당해 사안을”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당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그’ 또는 ‘바로 그’라는 의미를 갖는다.<sup>66)</sup> 이러한 한문투의 용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당해를 해당 또는 그라고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용어가 될 것이다.<sup>67)</sup>

**第27條 (罰則)** ①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가 保安觀察處分 또는 保安觀察을 免脫할 目的으로 隱身 또는 逃走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第6條第1項·第2項 및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그 申告를 함에 있어서 居住豫定地나 住居地를 명시하지 아니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第19條第2項의 措置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第20條第4項에 위반한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保安觀察處분에 관한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職務遂行을 거부 또는 그 職務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⑥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를 은닉하거나 逃走하게 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다만, 親族·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이 本人을 위하여 本文의 罪를 범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⑦保安觀察處分の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第11條의 身元保證을 한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保安觀察處分對象者에 관하여 이 法에 의하여 知得한 사실을 公表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1) 제1항에서 “免脫”이라는 한자어는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는 아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용어에 해당한다. 면탈의 사전적 의미는 “죄를 벗는다”인데 여기서 면탈은 보안처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즉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

66) 박영도, 법령용어사례집-유사법령용어-, 한국법제연구원, 2001, 59면.

67) 정완외, 전계논문, 104면 참조.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회피할 목적으로”라고 고치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된다.

2) “隱身 또는 逃走한 때에는”에서 은신은 몸을 숨기는 의미이고 도주는 도망한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다.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법령상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이를 꼭 한자어로 표기하여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우리 법령이 한자어를 사용하여 권위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은신이나 도주는 “몸을 숨기거나 혹은 도망했을 때에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쉽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신고를 함에 있어서...” 문어체로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이를 “...신고를 하면서...”로 고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4) “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를 은닉하거나 逃走하게 한者は 2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본조는 형법의 범인은닉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안관찰대상자를 숨기거나 도망시킨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은닉하거나 도주하게 한...”에서 ‘은닉이나 도주’는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다. 이러한 한자어가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자어의 경우에도 한글로 사용할 경우에 이해를 할 수 없거나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나, 혹은 그 내용이 달라져 해석상의 문제를 남기는 경우가 아니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권위적인 법령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도 ‘은닉하거나 도주하게 한’을 ‘숨기거나 도망시킨 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해하기도 쉽다. 그리고 어법상으로도 맞다고 생각된다.

5) “保安觀察處分の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第11條의 身元保證을 한 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保安觀察處分對象者에 관하여 이 法에 의하여 知得한 사실을 公表<sup>68)</sup>하거나 누설<sup>69)</sup>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

68) “公表”라는 한자어도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따라서 공표의 사전적 의미가 “세상에 널리 알림”이므로 이를 공표라는 한자어가 아닌 우리말로 풀어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장의 간결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라는 문장에서 “知得”이라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고 따라서 권위적의 법령의 한 단면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한자어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문장구조가 아님에도 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지득’이라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 “알게 된”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본 문장의 후단에서 업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처벌규정을 두면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문을 “...신원보증을 한 자가 이 법을 통하여 알게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때에는...처한다.”로 고치는 것이 어법과 시제등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

69) 시제를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 제8장 결론

법은 일반시민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은 일부전문가에 국한된 도구였음을 부인할 수 없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는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법치주의를 실현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형형관련된 법령 뿐만아니라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일반 시민의 법에 대한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형법 분야에서 법령을 순화하는 것은 타법 영역보다 훨씬 힘들다는 사실도 실감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형관련법이 일반시민과 연관성이 적어도 수용자가 일반시민에 비하여 훨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법 영역의 순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령을 순화하고 용어를 한글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법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섰고, 어떤 경우에도 이길을 가야만 하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

이같은 행형관련 용어순화와 한글화의 방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해마다 국회에서는 한글화에 대한 입법이 제기된다. 그러나 상정되지 못하고 대부분 폐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법이라는 도구의 진짜 주인인 시민들에게 그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법령을 입법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법령은 고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법령은 다른 분야와 달리 입법기술상의 제약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가 함께 나왔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 법령에 관련된 우리식의 표현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우리말이 정말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분야에서는 한자어를 대체할 만한 용어가 너무 적다는 점을 실감하기도 했다. 그리고 입법

## 제8장 결 론

은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집단이나 학문분야가 생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입법학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많은, 더 좋은 순화의 방안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순화의 내용을 담은 부록으로 결론에 대신하고 자 한다.

## 부 록

행정관련법령의 한글화와 용어순화 대비표

1. 행정법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b>第 3 條</b> (區分收容의 예외) ②拘置所에 <u>炊事 기타 作業에 필요한 受刑者를 收容할 수 있다.</u></p> <p><b>第 4 條</b> (<u>異성의 隔離</u>) 男子와 女子는 <u>隔離收容한다.</u></p> <p><b>第 4 條의2</b> (矯導所등 設置·운영의 民間委託) ①法務部長官은 矯導所등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法人 또는 개인에게 <u>委託</u>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에 있어서 委託를 받을 수 있는 者의 資格要件, 矯導所등의 施設基準, 收容對象者의 선정기준, 收容者 <u>處遇의 기준</u>, 委託節次, 國家의 監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p> <p><b>第 5 條</b> (矯導所등의 巡廻點檢등 &lt;改正 1995.1.5&gt;) ①法務部長官은 矯導所등을 <u>巡廻點檢</u>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u>巡廻點檢</u>하게 할 수 있다. &lt;改正 1995·1·5, 1999.12.28&gt;</p> <p>②判事와 檢事は 矯導所등을 수시로 <u>시찰</u>할 수 있다.</p> <p>③第2項에 規定된 者외의 者가 學術研究 其他 正當한 理由로 矯導所등을 <u>參觀</u>하고자 할 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여 當該所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p>	<p><b>第 3 條</b> (區分收容의 예외) ②수형자를 <u>급식 기타 作業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u></p> <p><b>第 4 條</b> (<u>남녀의 분리</u>) 男子와 女子는 <u>분리수용</u> 한다.</p> <p><b>第 4 條의2</b> (矯導所등 設置·운영의 民間委託) ①法務部長官은 矯導所등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法人 또는 개인에게 <u>맡길 수 있다.</u></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에 있어서 委託를 받을 수 있는 者의 資格要件, 矯導所등의 施設基準, 收容對象者의 선정기준, 收容者 <u>대우의 기준</u>, 委託節次, 國家의 監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p> <p><b>第 5 條</b> (矯導所등의 巡廻點檢등 &lt;改正 1995.1.5&gt;) ①法務部長官은 矯導所등을 <u>巡廻點檢</u>하거나 所屬公務員에게 <u>돌아보고 점검</u>하게 할수있다. &lt;改正 1995·1·5, 1999.12.28&gt;</p> <p>②判事와 檢事は 矯導所등을 수시로 <u>돌아 볼 수 있다.</u></p> <p>③第2項에 規定된 者외의 者가 學術研究 其他 正當한 理由로 矯導所등을 <u>돌아보려면 그 理由를 明示</u>하여 當該所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b>第 6 條</b> (請願) ①收容者는 그 處遇에 對하여 <u>不服</u>이 있을 때에는 法務部長官 또는 <u>巡廻點檢公務員</u>에게 請願할 수 있다. &lt;改正 1995·1·5, 1999.12.28&gt;</p> <p>②法務部長官에게 <u>請願하고자</u> 하는 收容者는 請願書를 작성하여 봉한 후 <u>당해 所長</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28&gt;</p> <p>③所長은 請願書를 開封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lt;신설 1999.12.28&gt;</p> <p>④巡廻點檢公務員에 대한 請願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巡廻點檢公務員이 口述에 의한 請願을 聽取하는 때에는 <u>矯導官</u>을 <u>참여시키지 못한다</u>.&lt;新設 1995·1·5&gt;</p> <p>⑤所長은 收容者의 請願을 阻止하거나 請願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lt;신설 1999.12.28&gt;</p> <p>⑥請願에 대한 決定은 文書로서 하여야 하며 그 決定書는 <u>당해 所長</u>이 지체없이 이를 請願人에게 傳達하여야 한다. &lt;新設 1995·1·5&gt;</p> <p><b>第 8 條의2</b> (告知事項) 所長은 <u>新入者</u>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告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刑期の 起算日 및 終了日</li> <li>2. 接見 및 書信에 관한 사항</li> </ol> <p><b>第 9 條</b> (傳染病에 걸린 者의 收容拒絶 &lt;개정 1995.1.5, 1999.12.28&gt; )</p>	<p><b>第 6 條</b> (請願) ①收容者는 그 <u>대우</u>에 對하여 <u>不服</u>이 <u>있으면</u> 法務部長官 또는 <u>巡廻點檢公務員</u>에게 請願할 수 있다. &lt;改正 1995·1·5, 1999.12.28&gt;</p> <p>②法務部長官에게 請願하려는 收容者는 請願書를 작성하여 봉한 후 <u>해당 所長</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所長은 請願書를 <u>열어서는</u> <u>않되며</u> 지체없이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lt;신설 1999.12.28&gt;</p> <p>④巡廻點檢公務員에 대한 請願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巡廻點檢公務員이 <u>口述로 하는</u> 請願을 <u>들</u> 때에는 <u>矯導官</u>을 <u>참여시키지 못한다</u>.&lt;新設 1995·1·5&gt;</p> <p>⑤所長은 收容者의 請願을 <u>막거나</u> 請願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u>대우</u>를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⑥請願에 대한 決定은 文書로서 하여야 하며 그 決定書는 <u>해당 所長</u>이 지체없이 이를 請願人에게 傳達하여야 한다. &lt;新設 1995·1·5&gt;</p> <p><b>第 8 條의2</b> (告知事項) 所長은 <u>새로 들어온 자</u>에게 다음의 사항을 告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刑期の 起算日 및 終了日</li> <li>2. 接見 및 <u>편지</u>에 관한 사항</li> </ol> <p><b>第 9 條</b> (傳染病에 걸린 者의 收容拒絶 &lt;개정 1995.1.5, 1999.12.28&gt; )</p>

현 행	개정안
<p>所長은 다른 사람에게 傳染의 念慮가 있는 疾病에 걸린 者의 收容을 거절할 수 있다.</p> <p><b>第10條</b> (寫眞撮影 등) ①所長은 新入者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識別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寫眞撮影·指紋採取·收容者番號指定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b>第11條</b> (獨居收容) ①收容者는 獨居收容한다. 다만, 必要한 境遇에는 混居收容할 수 있다.</p> <p>②混居收容의 境遇에는 收容者의 刑期, 罪質, 性格, 犯數, 年齡, 經歷等을 參酌하여 居室을 區別收容한다.</p> <p>③作業場의 就業에 있어서도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b>第12條</b> (收容者의 移送 &lt;개정 1995. 1.5&gt;) 收容者의 收容, 作業, 敎化 其他 處遇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當該所長은 法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收容者를 다른 矯導所등에 移送할 수 있다. &lt;改正 1995·1·5, 1999.12.28&gt;</p> <p style="text-align: center;"><b>第3章 戒護</b></p> <p><b>第14條</b> (戒具) ①矯導官은 收容者의 逃走·暴行·騷擾 또는 自殺의 방지 기타 矯導所등의 安全과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戒具를 사용할 수 있다. &lt;개정 1999.12.28&gt;</p>	<p>所長은 (생략) 傳染의 念慮가 있는 疾病에 걸린 者의 收容을 거절할 수 있다.</p> <p><b>第10條</b> (寫眞撮影 등) ①所長은 <u>새로 들어온 자를 다른 사람과의 구별하기 위하여</u> 필요한 한도안에서 寫眞撮影·指紋採取·收容者番號指定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b>第11條</b> (독방수용) ①收容者는 <u>독방에 수용</u>한다. 다만, 必要한 境遇에는 공동수용할 수 있다.</p> <p>②공동수용을 할 경우에는 收容者의 刑期, 罪質, 性格, <u>죄수</u>, 年齡, 經歷等을 <u>고려(참고)</u>하여 <u>방</u>을 區別收容한다.</p> <p>③<u>作業場에서 일하는 것도</u>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b>第12條</b> (收容者의 移送 &lt;개정 1995. 1.5&gt;) 收容者의 收容, 作業, 敎化 其他 <u>대우를 위하여</u>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u>해당所長</u>은 法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收容者를 다른 矯導所등에 移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第3章 <u>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보호</u></b></p> <p><b>第14條</b> (보호기구) ①矯導官은 收容者의 逃走·暴行·騷擾 또는 自殺의 방지 기타 矯導所등의 安全과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장비(기구)</u>를 사용할 수 있다. &lt;개정 1999. 12.28&gt;</p>

현행	개정안
<p>②戒具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lt;改正 1995·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捕繩</li> <li>2. 手匣</li> <li>3. 사슬</li> <li>4. 顔面 保護具</li> </ol> <p>③戒具는 懲罰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戒具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使用節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戒具의 모양·規格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p> <p><b>第14條의2 (強制力の 행사) ①矯導官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強制力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強制力의 行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自殺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自害行爲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li> <li>2. 다른 사람에게 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li> <li>3. 逃走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li> <li>4. 기타 矯導官 및 收容者의 安全과 收容秩序를 現저히 해치는 行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li> </ol>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強制力의 行사에 있어서는 收容者를 制壓하기 위하여 身體의인 有形力을 행사하거나 矯導棒·가스분사기·催淚彈등 保安裝備를 사용한다.</p>	<p>②보호기구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lt;改正 1995·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줄(노끈)</u></li> <li>2. 手匣</li> <li>3. 사슬</li> <li>4. 顔面 保護具</li> </ol> <p>③보호기구는 <u>별칙</u>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u>보호기구</u>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使用節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보호기구의 모양·規格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p> <p><b>第14條의2 (強制力の 행사) ①교도관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強制力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強制力의 行사는 <u>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u></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自殺 또는 自害行爲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u></li> <li>2. 다른 사람에게 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li> <li>3. <u>도망(달아날)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u></li> <li>4. 기타 矯導官 및 收容者의 安全과 收容秩序를 <u>현저히 해치거나 해치려 할 때</u></li> </ol> <p>②第1項의 規定에 <u>따라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에는</u> 收容者를 制壓하기 위하여 身體의인 有形力을 행사하거나 矯導棒·가스분사기·催淚彈등 保安裝備를 사용한다.</p>

현행	개정안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強制力を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收容者에게 이를 警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狀況으로 警告를 할 만한 時間的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b>第15條</b> (武器의 使用) ①矯導官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b>해당하는 때에는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事態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u></li> <li>2. 暴行 또는 脅迫에 사용할 危險物을 소지하여 矯導官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li> <li>3. 暴動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li> <li>4. <u>逃走를 하고자 하는 者가 矯導官의 制止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逃走를 하고자 하는 때</u></li> <li>5. 第1號 내지 第4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人命·身體·建物 기타 施設과 器機에 대한 중대한 危害를 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u>인정되는 때</u></li> </ol> <p><b>第18條</b> (接見) ①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다른 사람과 接見할 수 있다.</p> <p>②所長은 教化 또는 處遇上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여야 한다.</p> <p>③所長은 收容者의 接見에 矯導官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p>	<p>③第1項의 規定에 <u>따라서 強制력을 행사할 경우에는</u> 사전에 收容者에게 이를 警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狀況으로 警告를 할 만한 時間的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b>第15條</b> (武器의 使用) ①矯導官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u>해당할 때에는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u></li> <li>2. 暴行 또는 脅迫에 사용할 危險物을 소지하여 矯導官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li> <li>3. 暴動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li> <li>4. <u>교도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하려고 할 때</u></li> <li>5. 第1號 내지 第4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人命·身體·建物 기타 施設과 器機에 대한 중대한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u>인정될 때</u></li> </ol> <p><b>第18條</b> (接見) ①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다른 사람과 接見할 수 있다.</p> <p>②所長은 教化 또는 <u>대우 상</u>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여야 한다.</p> <p>③所長은 收容者의 接見에 矯導官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項의</p>

현행	개정안
<p>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과의 接見은 예외로 한다.</p> <p><b>第18條의2 (書信)</b> ①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다른 사람과 <u>書信</u>을 주고 받을 수 있다.</p> <p>②所長은 教化 또는 <u>處遇上</u>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여야 한다.</p> <p>③所長은 收容者의 書信을 檢閱할 수 있다. 다만, 第66條第2項 <u>各號</u>의의 부분 本文의 <u>規定에 의한 辯護人과의 書信</u>은 예외로 한다.</p> <p>④書信의 檢閱·發送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p> <p><b>第19條</b> (書信等の 領置) 收容者에 交付된 書信 其他 文書는 本人이 閱覽한 後 이를 <u>領置</u>한다. 다만, 教化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p> <p><b>第20條</b> (給與) ①收容者에게는 일정한 衣類·寢具 기타 生活用品을 <u>給與</u>한다.</p> <p>②衣類·寢具 기타 生活用品의 給與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21條</b> (給與&lt;改正 1995·1·5&gt;) ①收容者에게는 體質, 健康, 年齡과 作業等を <u>參酌</u>하여 必要한 食糧을 給與한다.</p> <p>②食糧給與의 基準은 法務部令으로 定한다.</p>	<p>規定에 의한 辯護人과의 接見은 예외로 한다.</p> <p><b>第18條의2 (편지 등)</b> ①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다른 사람과 <u>편지 등</u>을 주고 받을 수 있다.</p> <p>②所長은 教化 또는 <u>대우 상</u>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u>規定에 따라서</u> 許可를 하여야 한다.</p> <p>③所長은 收容者의 <u>편지</u>를 檢閱할 수 있다. 다만, 第66條第2項 <u>各號</u>의의 부분 本文에서 <u>規定한 辯護人과의 편지</u>는 예외로 한다.</p> <p>④<u>편지</u>의 檢閱·發送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p> <p><b>第19條</b> (<u>편지</u>等の 領置) 收容者에 交付된 書信 其他 文書는 本人이 閱覽한 後 이를 <u>보관</u>한다. 다만, 教化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p> <p><b>第20條</b> (給與) ①收容者에게는 일정한 衣類·<u>이부자리</u> 기타 生活用品을 <u>지급</u>한다(준다).</p> <p>②衣類·<u>이부자리</u> 기타 生活用品의 <u>지급</u>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21條</b> (給與&lt;改正 1995·1·5&gt;) ①收容者에게는 體質, 健康, 年齡과 作業等を <u>고려</u>하여 必要한 食糧을 <u>지급</u>한다.</p> <p>②<u>식량지급</u>의 基準은 法務部令으로 定한다.</p>

현 행	개정안
<p><b>第31條 (敎誨)</b> ②受刑者가 그가 信奉하고 있는 宗派의 敎義에 依한 特別敎誨를 請願할 때에는 當該所長은 그 宗派에 委囑하여 敎誨를 할 수 있다.</p> <p><b>第32條 (敎育)</b> ①無敎育者 또는 少年受刑者에 對하여는 年齡, 知識程度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그에 상응한 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心身微弱者 또는 老衰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개정 1999. 12.28&gt;</p> <p><b>第33條의2</b>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視聽) 所長은 收容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聽取와 텔레비전 視聽을 하게 할 수 있다.</p> <p><b>第33條의3</b> (執筆) ①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文書 또는 圖書를 작성하거나 文學·學術 기타 사항에 관한 執筆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矯導所등의 安全과 秩序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2. 기타 敎化上  부적당한 경우</li> </ol> <p>②執筆用具의  관리, 執筆의 時間·場所, 執筆한 文書 등의  보관 및  외부  제출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b>第34條</b> (敎育規程 등) 敎育의 科目·時間과 新聞·圖書의 閱覽 등에</p>	<p><b>第31條 (종교적 교화)</b> ②해당교도소장은 수형자가 그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따른 교화를 특별히 신청한 경우에는 그 종파에 부탁하여 종교를 통한 교화를 할 수 있다.</p> <p><b>第32條 (敎育)</b> ①無敎育者 또는 少年受刑者에게는 年齡, 知識程度 其他 事情을  고려하여 敎育을  하여야  한다. 다만, 心身微弱者 또는 老衰者에게는 例外로 한다. &lt;개정 1999. 12.28&gt;</p> <p><b>第33條의2</b>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視聽) 所長은 收容者에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  보게  할  수  있다.</p> <p><b>第33條의3</b> (執筆) ①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문서의  작성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文學·學術  기타  사항에  관한  執筆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矯導所등의 安全과 秩序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li> <li>2.  기타 敎化上  부적당할  경우</li> </ol> <p>②執筆도구의  관리, 執筆의 時間·場所, 執筆한 文書  등의  보관  및  외부  제출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b>第34條</b> (敎育規程 등) 敎育할 科目·時間과 新聞·도서의 閱覽  등에  關하</p>

현행	개정안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p> <p><b>第35條</b> (作業) ①作業은 受刑者의 年齡, 刑期, 健康, 技術, 性格, 趣味, 職業과 將來의 生計 其他 事情을 <u>參酌하여</u> 課한다.</p> <p><b>第36條</b> (休日の 作業) ①國家慶祝日, 日曜日 其他 公休日에는 作業을 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炊事, 清掃, 看護, 經理 其他 特히 必要한 作業은 例外로 한다.</p> <p>②作業時間과 臨時作業에 <u>關하여</u> 必要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p> <p><b>第37條</b> (作業의 免除) 受刑者중 父母·配偶者·子女 또는 兄弟姊妹의 死亡通知를 받은 者는 2日間, 父母 또는 配偶者의 忌日は 1日間 作業을 免除한다. 다만, <u>당해 受刑者</u>가 作業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b>第38條</b> (申請에 依한 作業) 禁錮와 拘留刑을 받은 者에게는 申請에 依하여 作業을 課할 수 있다.</p> <p><b>第39條</b> (作業收入等) ①作業收入은 國庫收入으로 한다.</p> <p>②受刑者에게는 法務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作業의 種類, 成績과 行刑成績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作業賞與金을 支給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作業賞與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支給한다. 다만, 本人</p>	<p>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p> <p><b>第35條</b> (作業) ①作業은 受刑者의 年齡, 刑期, 健康, 技術, 性格, 趣味, 職業과 將來의 生計 其他 事情을 <u>고려하여</u> 課한다.</p> <p><b>第36條</b> (休日の 作業) ①國家慶祝日, 日曜日 其他 公休日에는 <u>일을</u> 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u>급식</u>, 清掃, 看護, 經理 其他 特히 必要한 <u>일은</u> 例外로 한다.</p> <p>②作業時間과 臨時作業에 <u>대하여</u> 必要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p> <p><b>第37條</b> (作業의 免除) 受刑者중 父母·配偶者·子女 또는 兄弟姊妹의 死亡通知를 받은 者는 2日間, 父母 또는 配偶者의 忌日は 1日間 作業을 免除한다. 다만, <u>해당수형자</u>가 作業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b>第38條</b> (申請에  따른 作業) <u>급고와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에 작업을 과할 수 있다.</u></p> <p><b>第39條</b> (作業收入等) ①作業收入은 國庫收入으로 한다.</p> <p>②受刑者에게는 法務部長官이 <u>정함에 따라서</u> 作業의 種類, 成績과 行刑成績 其他 事情을 <u>고려하여</u> 作業賞與金을 支給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作業賞與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支給한다. 다만, 本人의 家</p>

현 행	개정안
<p>의 家族生活扶助 또는 教化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釋放前 이라도 그 一部 또는 全部를 支給 할 수 있다.</p> <p><b>第40條</b> (慰勞金, 弔慰金) ①受刑者가 作業중 負傷을 당하거나 障礙人이 된 때 또는 死亡한 때에는 그 <b>情狀을 참작하여</b>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慰勞金 또는 弔慰金を 지급할 수 있다.</p> <p>②慰勞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弔慰金은 그 相續人에게 各各 支給한다.</p> <p><b>第41條</b> (携帶金品の 領置) ①收容者의 携帶金品은 矯導所등에 領置한다. 다만, 領置의 價値가 없는 것은 例外로 한다. &lt;改正 1995·1·5, 1999.12.28&gt;</p> <p>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該當하는 物品을 本人이 相當한 期間內에 處分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廢棄할 수 있다.</p> <p><b>第42條</b> (收容者에 對한 金品交付 &lt;改正 1995·1·5&gt;) ①收容者에게 金品の 交付를 申請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特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事由가 없는限 當該所長은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p> <p>②所長은 收容者에게 送付된 金品으로써 本人이 受領을 拒否하거나 또는 그 物品을 本人에게 交付함이 特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이를 그 送付人에게 還付한다.</p>	<p>族生活扶助 또는 教化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釋放前이라도 그 一部 또는 全部를 支給할 수 있다.</p> <p><b>第40條</b> (慰勞金, 弔慰金) ①受刑者가 作業중 負傷을 당하거나 障礙人이 된 때 또는 死亡한 때에는 그 <b>情狀을 고려하여</b>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慰勞金 또는 弔慰金を 지급할 수 있다.</p> <p>②慰勞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弔慰金은 그 相續人에게 各各 支給한다.</p> <p><b>第41條</b> (携帶金品の <u>보관</u>) ①收容者의 携帶金品은 矯導所등에 <u>보관</u>한다. 다만, <u>보관할</u> 價値가 없는 것은 例外로 한다. &lt;改正 1995·1·5, 1999.12.28&gt;</p> <p>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該當하는 物品을 本人이 相當한 期間內에 <u>처분하지 않으면</u> 이를 廢棄할 수 있다.</p> <p><b>第42條</b> (收容者에 對한 金品交付 &lt;改正 1995·1·5&gt;) ①收容者에게 金品の 交付를 申請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特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事由가 없는限 <u>해당(그)所長은</u>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p> <p>②所長은 收容者에게 <u>보내진</u> 金品으로써 本人이 受領을 拒否하거나 또는 그 物品을 本人에게 交付함이 特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이를 그 <u>보낸 사람에게 돌려준다</u>.</p>

현행	개정안
<p>③所長은 第2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 送付人 또는 그 送付人의 住所가 不明한 境遇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한 後 6月이 經過하여도 交付를 請求하는 者가 없을 때에는 그 金品은 國庫에 歸屬된다. 다만, 價値가 없다고 認定되는 物品은 廢棄할 수 있다.</p> <p><b>第43條</b> (領置金品の 還付) ①領置金品은 釋放할 때에는 本人에게 還付한다.</p> <p>②死亡者의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相續人에게 交付한다. 다만, 死亡後 1年을 經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된다.&lt;개정 1999.12.28&gt;</p> <p>③逃走者의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그의 配偶者나 直系尊屬 또는 直系卑屬에게 交付한다. 다만, 逃走後 1年이 經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된다.</p> <p><b>第44條</b> (分類·處遇 및 歸休) ①所長은 受刑者를 個別的으로 審査分類하여 그에 相應한 處遇를 하여야 한다.</p> <p>②行刑成績이 優秀하고 社會生活에  적용할 可能性이 높은 受刑者에 대하여는 開放施設(逃走防止를 위하여  통상적인 收容設備 또는 措置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 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收容하여 社會生活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處遇를 할 수 있다.</p>	<p>③所長은 第2項에 規정한 <b>보낸 사람 또는 보낸 사람의 주소가</b> 不明한 境遇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한 後 6月이 經過하여도 交付를 請求하는 者가 없을 때에는 그 金品은 國庫에 歸屬된다. 다만, 價値가 없다고 認定되는 物品은 廢棄할 수 있다.</p> <p><b>第43條</b> (領置金品の 還付) ①領置金品은 釋放할 때에는 本人에게 <b>돌려 준다.</b></p> <p>②死亡者의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相續人에게 <b>준다.</b> 다만, 死亡後 1年을 經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된다. &lt;개정 1999.12.28&gt;</p> <p>③逃走者의 遺留金品은 <b>청구하면</b> 그의 配偶者나 直系尊屬 또는 直系卑屬에게 <b>준다.</b> 다만, <b>도망</b>後 1年이 經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된다.</p> <p><b>第44條</b> (分類·<b>대우 및 휴가</b>) ①所長은 受刑者를 個別的으로 審査分類하여 그에 相應한 <b>대우</b>를 하여야 한다.</p> <p>②行刑成績이 優秀하고 社會生活에  적용할 可能性이 높은 受刑者에 대하여는 開放施設(逃走防止를 위하여  통상적인 收容設備 또는 措置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 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收容하여 社會生活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b>대우</b>를 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p>③1년이상 服役한 受刑者로서 그 刑期의 3分の 1(無期刑의 경우에는 7年)을 경과하고 行刑成績이 優秀한 者에 대하여는 1年중 10日이내의 歸休를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歸休期間은 刑執行期間에 算入한다.&lt;개정 1999.12.28&gt;</p> <p>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受刑者에 대하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歸休許可要件 및 歸休期間에 불구하고 5日이내의 特別歸休를 許可할 수 있다.</p> <p>⑤分類·處遇 및 歸休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p> <p><b>第45條 (規律 등) ①收容者는 矯導所등의 安全과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規律를 준수하여야 한다.</b></p> <p><b>第46條 (懲罰) ①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를 한 때에는 懲罰을 賦課할 수 있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刑法·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등의 刑罰規定에 저촉되는 行위</li> <li>2. 自害行爲</li> <li>3. 正當한 理由없이 作業·敎育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行위</li> <li>4. 凶器·酒類 등 許可되지 아니하는 物건을 製作·소지·사용·授受 또는  은닉하는 行위</li> <li>5. 기타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規律를  위반하는 行위</li> </ol> <p>②懲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警告</li> </ol>	<p>③1년이상 服役한 受刑者로서 그 刑期의 3分の 1(無期刑의 경우에는 7年)을 경과하고 行刑成績이 優秀한 者에 대하여는 1年중 10日이내의 <u>휴가</u>를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u>휴가기간</u>은 刑執行期間에 算入한다.&lt;개정 1999.12.28&gt;</p> <p>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受刑者에 대하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u>휴가許可要件 및 휴가기간에 불구하고 5日이내의 特別휴가</u>를 許可할 수 있다.&gt;</p> <p>⑤分類·<u>대우 및 휴가에</u>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p> <p><b>第45條 (規律 등) ①收容者는 <u>矯導所등에서</u> 安全과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規律를 준수하여야 한다.</b></p> <p><b>第46條 (懲罰) ①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u>행위를 할 때에는 懲罰을 賦課할 수 있다.</u></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刑法·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등의 刑罰規定에 <u>위반되는 行위</u></li> <li>2. 自害行爲</li> <li>3. 正當한 理由없이 作業·敎育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行위</li> <li>4. 凶器·<u>술</u> 등 許可되지 아니하는 物건을 製作·소지·사용·<u>받거나 또는 숨기는 行위</u></li> <li>5. 기타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規律를  위반하는 行위</li> </ol> <p>②懲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警告</li> </ol>

현행	개정안
<p>2. 1月이내의 新聞 및 圖書閱覽의 제한</p> <p>3. 2月이내의 申請에 의한 作業의 정지</p> <p>4. 作業賞與金の 전부 또는 일부의 削減</p> <p>5. 2月이내의 禁置</p> <p>③懲罰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賦課할 수 없으며, 행위의 動機 및 輕重, 행위후의 情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收容目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p><b>第47條 (懲罰委員會) ①懲罰은 懲罰委員會의 議決로써 定한다.</b></p> <p>②懲罰委員會는 3人以上 5人以內的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長은 當該 所長이 되고 委員은 委員長이 當해 矯導所등의 副所長과 課長(支所의 경우에는 7級이상의 矯導官) 및 矯正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外部人士中에서 任命 또는 위촉한다.</p> <p><b>第53條 (釋放) 收容者の 釋放은 赦免, 刑期終了 또는 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 依하여 關係書類를 調査한 後 所長이 이를 行한다.</b></p> <p><b>第54條 (釋放時期) ①赦免, 假釋放, 刑의 執行免除, 減刑에 依한 釋放은 그 書類 到達後 12時間以內에 行하여야 한다.</b></p> <p>②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 依한 釋放은 書類 到達後 5時間以內에 行하여야 한다.</p>	<p>2. 1月이내의 新聞 및 圖書閱覽의 제한</p> <p>3. <u>신청한 경우 2月이내에서 作業의 정지</u></p> <p>4. 作業賞與金の 전부 또는 일부의 削減</p> <p>5. 2月이내의 <u>신체 구속</u></p> <p>③懲罰은 <u>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u> 賦課할 수 없으며, 행위의 動機 및 輕重, 행위후의 情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收容目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p><b>第47條 (懲罰委員會) ①懲罰은 懲罰委員會가 議決로써 定한다.</b></p> <p>②懲罰委員會는 3人以上 5人以內的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長은 <u>해당소장</u>이 되고 委員은 委員長이 <u>해당 矯導所등의 副所長과 課長(支所의 경우에는 7級이상의 矯導官) 및 矯正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外部人士에게 맡긴다.</u></p> <p><b>第53條 (釋放) 收容者の 釋放은 赦免, 刑期終了 또는 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 따라서 關係書類를 調査한 後 所長이 한다.</b></p> <p><b>第54條 (釋放時期) ①赦免, 假釋放, 刑의 執行免除, 減刑에 依한 釋放은 그 書類 到達後 12時間以內에 하여야 한다.</b></p> <p>②<u>권한이 있는 자가 명령한</u> 釋放은 書類 到達後 5時間以內에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③刑期終了에 依한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行하여야 한다.</p>	<p>③刑期終了에 依한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u>하여야</u> 한다.</p>
<p>第55條 (被釋放者の 收容) 被釋放者가 疾病으로 因하여 歸家하기 困難한 때에는 本人의 請求에 依하여 一時 矯導所등에 收容할 수 있다.</p>	<p>第55條 (被釋放者の 收容) <u>被釋放者가 疾病으로 因하여 歸家하기 困難할 때에는 本人이  청구하면 一時 矯導所등에 收容할 수 있다.</u></p>
<p>第56條 (歸家旅費等) 被釋放者가 歸家旅費 또는 衣類를 所持하지 아니한 때에는 旅費 또는 衣類를 當해 矯導所등에서 貸與할 수 있다.</p>	<p>第56條 (歸家旅費等) <u>被釋放者가  집에 가는 비용 또는 입을 옷이 없을 때에는 旅費 또는 옷을 當해 矯導所등에서 빌릴 수 있다.</u></p>
<p>第57條 (死刑의 執行) ①死刑은 矯導所와 拘置所안의 死刑場에서 執行한다. ②國家慶祝日, 日曜日 其他 公休日에 死刑을 執行하지 아니한다.</p>	<p>第57條 (死刑의 執行) ①死刑은 矯導所와 <u>拘置所안에 있는</u> 死刑場에서 執行한다. ②國家慶祝日, 日曜日 其他 公休日에 死刑을 執行하지 아니한다.</p>
<p>第58條 (屍體의 假埋葬等&lt;개정 1999. 12.28&gt;) 收容者가 死亡한 때에 그의 親族 또는 親知가 그 屍體를 即時 引受하지 아니하면 이를 假埋葬하여야 하며 必要한 때에는 火葬할 수 있다.&lt;改正 1995·1·5, 1999. 12.28&gt;</p>	<p>第58條 (屍體의 假埋葬等 &lt;개정 1999. 12.28&gt;) 收容者가 <u>死亡했을 때에는</u> 그의 親族 또는 親知가 그 屍體를 即時 引受하지 아니하면 이를 假埋葬하여야 하며 必要한 때에는 火葬할 수 있다. &lt;改正 1995·1·5, 1999. 12.28&gt;</p>
<p>第59條 (屍體, 遺骨의 交付) 屍體 또는 遺骨은 請求에 依하여 親族 또는 親知에게 交付한다. 다만, 合葬後에는 交付를 請求할 수 없다.</p>	<p>第59條 (屍體, 遺骨의 交付) <u>친족 또는 친지가 시체나 유골을  청구하면 교부한다.</u> 다만, 合葬後에는 交付를 請求할 수 없다.</p>
<p>第61條 (屍體의 解剖) 收容者의 屍體는 學術研究上 必要한 때에는 本人의 遺言 또는 相續人의 承諾이 있는 境遇에 限하여 解剖하기 爲하여 病院 其他 研究機關에  교부할 수 있다.</p>	<p>第61條 (屍體의 解剖) <u>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으면 수용자의 시체를  學術연구상  필요한 해부를 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연구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b>第64條</b> (未決收容者의 分離收容) 未決收容者로서 事件에 相互關聯이 있는 者는 分離收容하고 相互接觸을 禁止하여야 한다.</p> <p><b>第65條</b> (未決收容者의 理髮 &lt;改正 1995·1·5&gt;) 未決收容者의 <b>頭髮과</b> 수염은 特히 必要한 境遇 以外에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p> <p><b>第66條</b> (辯護人과의 接見 및 書信)                      ①未決收容者와 辯護人(辯護인이 되려고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接見에는 矯導官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聽取 또는 錄取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未決收容者를 監視할  수  있다.                      ②未決收容者와 辯護人과의 書信은 檢閱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書信에  麻藥 등 所持禁止品이  포함되어  있거나 逃走, 證據湮滅, 矯導所등의 規律과 秩序의  파괴 기타 刑罰規定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疑心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p> <p><b>第67條</b> (作業과 敎誨) ①未決收容者에 對하여는 申請이  있는 境遇에 限하여 作業을 課하거나 敎誨를 行할  수  있다.                      ②第31條·第35條第1項·第36條·第37條·第39條 및 第4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決收容</p>	<p><b>第64條</b> (未決收容者의 分離收容) <u>사건에 상호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u></p> <p><b>第65條</b> (未決收容者의 理髮 &lt;改正 1995·1·5&gt;) <u>未決收容者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特히 必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u></p> <p><b>第66條</b> (辯護人과의 接見 및 <u>편지</u>) ① 未決收容者와 辯護人(辯護인이 되려고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接見에는 矯導官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음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未決收容者를 監視할  수  있다.                      ②未決收容者와 辯護人과의 <u>편지</u>는 檢閱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u>편지</u>에  麻藥 등 所持禁止品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망, 證據湮滅, 矯導所등에서 規律과 秩序를  파괴 기타 刑罰規定에  위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疑心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p> <p><b>第67條</b> (作業과 敎誨) ①<u>미결수용자는 신청한  경우에만  작업을  부과하거나  종교에  의한  교화를  할  수  있다.</u>                      ②第31條·第35條第1項·第36條·第37條·第39條 및 第4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서 <u>미결수용자</u></p>

부 록

현 행	개정안
<p>者の 作業과 教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b>第68條</b> (留置場) 警察官署에 設置된 留置場은 未決收容室에 準한다.</p>	<p><u>의 作業과 종교적 教化에 관하여 이</u> <u>를 準용한다.</u></p> <p><b>第68條</b> (留置場) 警察官署에 <u>있는</u> 留置場은 未決收容室에 準한다.</p>

2. 행형법시행령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b>제 3 조</b> (판사등의 시찰) ①판사 또는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p> <p><b>제 4 조</b> (참관) ①소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의 참관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그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소장은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하여야 한다.</p> <p>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p> <p><b>제 6 조</b>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 ①소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p>	<p><b>제 3 조</b> (판사등의 시찰) ①판사 또는 검사가 법 5조 2항의 <u>규정에 따라서 교도소 등을 시찰할 때에는</u> 미리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②<u>소장이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에게 시찰을 할 곳을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적어야 한다.</u></p> <p><b>제 4 조</b> (참관) ①소장은 제5조 제3항의 <u>규정에 따라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를 참관하는 것을 허가할 때에는 그 성명·직업·주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②소장은 참관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u>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하여야 한다.</u></p> <p>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u>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u></p> <p><b>제 6 조</b>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 ①소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u>따라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u>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u>적어야 한다.</u></p>

현 행	개정안
<p>②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술청원을 받은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p> <p><b>제 7 조</b> (순회점검공무원의 직책등) ①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②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한 때에는 소장은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b>제 9 조</b> (소장과의 면담) ①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p> <p><b>제10조</b> (신입자의 인수) ①소장은 수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신입하는 자(이하“신입자”라 한다)를 인수한 때에는 그를 인수한 교도관이 서명</p>	<p>②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술청원을 받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적어야 한다.</p> <p><b>제 7 조</b> (순회점검공무원의 직책등) ①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적어야 한다.</p> <p>②순회점검공무원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받은 청원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순회점검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한 때에는 소장은 청원인에게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서를 전달하여야 한다.</p> <p><b>제 9 조</b> (소장과의 면담) ①수용자는 대우 및 개인사정에 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소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서 면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그 성명을 면담부에 적고 순서 대로 면담하여야 하며 해당 수용자와 면담한 요지를 면담부에 적어야 한다.</p> <p><b>제10조</b> (새로 들어온 자의 인수) ① 소장은 수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새로 들어온 자를 인수할 때에는 그를 인수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p>

현행	개정안
<p>또는 날인한 인수서를 그 <u>신입자의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u></p> <p>②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인수서에는 <u>신입자의 성명·연령 및 인수년·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u></p> <p><b>제11조</b> (형의 집행절차) ①<u>미결수용자로서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집행지휘서로써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경우에 <u>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부터 10일내에 판결서 기타의 적법한서류를 교도소등에 송부하여야 한다.</u></p> <p><b>제12조</b> (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8조제2항의 <u>규정에 의한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교도소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u></p> <p><b>제13조</b> (유아인도) ①<u>소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수용자에게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유아를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u></p> <p>②<u>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이 허가된 유아가 생후 18월이 달하거나 소장이 양육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u></p>	<p>수서를 <u>해당 호송인에게</u> 교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u>규정에 따른</u> 인수서에는 <u>새로 들어 온 자의 성명·연령 및 인수년·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u></p> <p><b>제11조</b> (형의 집행절차) ①<u>검사는 자유형확정판결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집행지휘서를 가지고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경우에 <u>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부터 10일내에 판결서 기타의 적법한 서류를 교도소등에 보내야 한다.</u></p> <p><b>제12조</b> (<u>새로 들어온 자의</u> 건강진단) 법 제8조제2항의 <u>규정에 따라서 새로 들어온 자는 건강진단을 교도소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u></p> <p><b>제13조</b> (유아인도) ①<u>소장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여자수용자에게 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한 때는 그 유아를 보호할 만한 인수인이 없으면 그 유아를 해당 교도소등을 관할하는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u></p> <p>②<u>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된 양육이 허가된 유아가 생후 18월이 되거나 소장이 양육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만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u></p>

현 행	개정안
<p><b>제16조</b>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절)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수용을 지휘한 기관과 당해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16조</b>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절)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수용을 지휘한 기관과 해당교도소등을 관할하는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17조</b>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17조</b>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게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21조</b> (신입자의 수용) ①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부터 3일은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소장은 20세미만의 신입자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b>제21조</b> (신입자의 수용) ①새로 들어온 수용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신입한 날로부터 3일은 해당 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된 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③소장은 새로 들어 온 자가 20세 미만이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b>제27조</b> (독거수용자의 시찰 등) ①소장 및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이상독거수용자를 시찰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지시를 받아 독거수용자를 시찰한 교도관은 시찰사항을 지체없이 소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p>	<p><b>제27조</b> (단독수용자의 시찰 등) ①소장 및 교도소등에 소속된 의무관은 매주 1회이상 단독수용자를 시찰하여야 한다. ②소장이 지시하여 단독수용자를 시찰한 교도관은 시찰사항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③소장은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계속하여독거수용함이 당해 수용자의 건강 또는 교화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p> <p><b>제28조</b> (여자수용자의 시찰)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남자교도관은 야간에 거실안에 있는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p> <p><b>제31조</b> (혼거수용)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독거수용</u>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u>혼거수용</u>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4.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경우</li> <li>5.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u>독거실</u>의 부족 등 교도소등의 사정에 비추어 <u>혼거수용</u> 할 수밖에 없는 경우</li> </ol> <p><b>제34조</b> (수용자의 자리지정) 소장은 혼거실·교실·교회당·작업장 기타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할 수 있다.</p>	<p>③소장은.....<u>건강진단 결과 해당 수용자를 계속하여 단독수용하는 것이 건강 또는 교화를 위해 유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독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u></p> <p><b>제28조</b> (여자수용자의 시찰) <u>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교도관은 야간에 거실안에 있는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u></p> <p><b>제31조</b> (<u>공동수용</u>)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u>공동수용</u>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단독수용</u>이 <u>해당수용자의</u>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u>공동수용</u>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u>해당 수용자가</u>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4. <u>해당 수용자가</u>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li> <li>5.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u>단독실</u>의 부족 등 교도소등의 사정에 비추어 <u>공동수용</u> 할 수밖에 없는 경우</li> </ol> <p><b>제34조</b> (수용자의 자리지정) 소장은 <u>공동실</u>·교실·교회당·작업장 기타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p><b>제35조</b> (<u>혼거실의 대용금지</u>) 혼거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p> <p><b>제36조</b> (<u>거실앞의 이름표</u>) 거실의 앞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 상부에는 수용자의성명·연령·죄명·형명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용자번호 및 입소연월일을 각각 기재하되 상부의 남은 이를 가리어 두어야 한다.</p> <p><b>제37조</b> (<u>혼거실의 정원등의 표시</u>) 혼거실에는 그 면적·정원 및 현재인원을 기재한 수용표를 붙여야 한다.</p> <p><b>제38조</b> (<u>외부인의 출입</u>) 교도관외의 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외에는 당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출입하지 못한다.</p> <p><b>제39조</b> (<u>수용자의 계호등</u>) ①교도소등의 외문·출입구·거실·작업장 기타 수용자를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이를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u>필요에 의하여</u> 일시 개방하는 때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p> <p>②교도소등의 자물쇠와 열쇠는 지정된 교도관이 보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고 받지 못한다.</p> <p><b>제40조</b> (<u>거실개방 및 출입</u>) 교도관은 당해 소장의 명령이나 다른 교도관의 참여없이 수용자의 거실을 열거나 또는 수용자를 거실밖으로 나오게 하지 못한다. 다만, <u>병실에 있어</u></p>	<p><b>제35조</b> (<u>공동실의 대용금지</u>) <b>공동거실</b>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p> <p><b>제36조</b> (<u>거실앞의 이름표</u>) <b>거실 앞</b>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u>그 위에</u> 수용자의 성명·연령·죄명·형명 및 형기를, 그 <u>밑에는</u> 수용자번호 및 입소연월일을 <u>각각 기재하되 위를 가려야 한다.</u></p> <p><b>제37조</b> (<u>공동실의 정원등의 표시</u>) <b>공동실</b>은 그 면적·정원 및 현재인원을 기재한 수용표를 붙여야 한다.</p> <p><b>제38조</b> (<u>외부인의 출입</u>) <b>교도관 아닌 자</b>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외에는 <u>해당 소장의 허가없이</u> 교도소등에 출입하지 못한다.</p> <p><b>제39조</b> (<u>수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u>) ①교도소등의 외문·출입구·거실·작업장 기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이를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u>필요한 경우에는</u> 일시 개방하는 때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p> <p>②교도소등의 자물쇠와 열쇠는 지정된 교도관이 보관하고 특별한 사유가 <u>없으면</u> 이를 주고 받지 못한다.</p> <p><b>제40조</b> (<u>거실개방 및 출입</u>) 교도관은 <u>해당 소장의 명령이나 다른 교도관의 참여없이 수용자의 거실을 열거나 또는 거실 밖으로</u> 나오게 하지 못한다. 다만, <u>병실에 있는 경우 또는 긴</u></p>

현행	개정안
<p>서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b>제42조</b> (거실 및 작업장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용자의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p> <p><b>제45조</b> (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46조</b>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b>자해</b>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b>인정되는 경우에는</b> 3시간을 연장사용할 수 있다.</p> <p><b>제47조</b> (강제력의 행사 등) 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은 <u>소장의 명령</u>없이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즉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도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p>	<p><u>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u></p> <p><b>제42조</b> (거실 및 작업장 검사) 소장은 <u>교도관에게</u> 수시로 수용자의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p> <p><b>제45조</b> (<u>보호기구의 사용</u>) <u>보호장구</u>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46조</b> (<u>보호기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u>) ①<u>줄(노끈)</u>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u>자살할 우려</u>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u>소리를 지르거나 자해할</u>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u>따라서 줄(노끈)과 수갑만으로는</u>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u>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시간</u>을 연장사용할 수 있다.</p> <p><b>제47조</b> (강제력의 행사 등) 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u>따른</u> 강제력은 <u>소장의 명령</u>없이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할 때에는</u> 이를 행사한 후 즉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도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u>따라서</u>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지</p>

현 행	개정안
<p>지체없이 그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49조</b> (일시석방) 소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일시 석방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할 시기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한다.</p>	<p><b>제49조</b> (일시석방) 소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u>따라서</u> 수용자를 일시 <u>석방할 때에는</u> 동조 제3항의 규정에 <u>따라서</u> 출석할 시기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한다.</p>
<p><b>제50조</b> (타소 이송시의 건강진단)</p> <p>①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p> <p>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송받을 교도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50조</b> (<u>다른 곳으로 이송할 때 건강진단</u>)</p> <p>①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u>이송할 경우에는 교도소등에 소속된 의무관에게</u>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u>인정될</u>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p> <p>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u>따라서</u> 이송을 정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이송받을 교도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52조</b> (도주시의 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소재지 및 그 부근 또는 도주한 자가 숨을 만한 지방의 경찰서에 도주자의 사진또는 인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52조</b> (<u>도망할 때 조치</u>) 소장은 수용자가 <u>도망할 때에는</u>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소재지 및 그 부근 또는 <u>도망자가</u> 숨을 만한 지방의 경찰서에 <u>도망자의</u> 사진또는 인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55조</b> (접견의 허가)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p>	<p><b>제55조</b> (접견의 허가) <u>수용자가 접견하려면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u> 이를 허가한다.</p>
<p><b>제56조</b> (접견의 횟수) 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u>처우를 받는</u>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p>	<p><b>제56조</b> (접견의 횟수) 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u>대우를 받는</u>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늘릴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p> <p>제57조 (접견의 예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수용자의</u>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58조 (접견시의 기록등) 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u>접견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u>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u>당해 사건</u>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p> <p>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u>수형자로서 행형 성적이 우수한자</u></li> <li>2.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li> <li>3. 기타 <u>교화상</u>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li> </ol> <p>③소장은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접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u>교도관으로 하여</u></p>	<p>②미결수용자는 <u>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를 매일 1회로 한다.</u></p> <p>제57조 (접견의 예외) 소장은 <u>수용자를 교화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수용자의</u>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58조 (접견시의 기록등) 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u>있을 때에는</u>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u>접견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주의사항을</u> 고지하여야 하며 <u>접견할 때는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한다.</u>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u>해당 사건</u>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p> <p>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u>수형자 중에서</u> 행형 성적이 우수한자</li> <li>2. 죄질이 가벼운 <u>미결수용자 중에서</u>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li> <li>3. 기타 <u>교화를 위하여</u>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li> </ol> <p>③소장은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접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u>교도관에게 이를 제지하</u></p>

현 행	개정안
<p>금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접견을 종료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를 선동·조장하는 때</li> <li>2. 증거인멸, 도주의 기도 등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li> <li>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때</li> </ol>	<p>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그 접견을 종료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범죄를 선동·조장할 때</u></li> <li>2. 증거인멸, <u>도망을 꾀하는 등</u>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li> <li>3. 수용자의 <u>대우</u>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u>유포할 때</u></li> </ol>

### 3. 군행형법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第1條 (目的) 이 법은 軍事法院에 의하여 懲役刑·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者를 隔離保護하여 矯正敎化하고, 건전한 國民思想과 건고한 軍人精神을 함양하여 社會 또는 軍에 復歸하게 하며, 아울러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의 收容에 관한 사항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b></p> <p><b>第2條 (矯導所등의 設置) ①軍行刑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소속하에 軍矯導所(이하 “矯導所”라 한다)를 두며, 矯導所에는  필요에 따라 支所를 둘 수 있다.</b></p> <p>②矯導所(支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b>당해軍</b> 參謀總長(이하 “參謀總長”이라 한다)이 指揮·監督한다.</p> <p>③矯導所에는 懲役刑·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者(이하 “受刑者”라 한다)를 收容한다.</p> <p>④參謀總長은  필요한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受刑者 또는 刑事被疑者나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이하 “未決收容者”라 한다)를 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女子受刑者 또는 女子未決收容者는 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하여야 한다.</p>	<p><b>第1條 (目的) 이 법은 軍事法院에 의하여 懲役刑·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者를 <u>분리保護</u>하여 矯正敎化하고, 건전한 國民思想과 건고한 軍人精神을 함양하여 社會 또는 軍에 復歸하게 하며, <u>아울러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定하는 것을 目的</u>으로 한다.</b></p> <p><b>第2條 (矯導所등의 設置) ①軍行刑에 관한 事務를 <u>담당하기</u> 위하여 國防部長官소속하에 軍矯導所(이하 “矯導所”라 한다)를 두며, 矯導所에는  필요에 따라 支所를 둘 수 있다.</b></p> <p>②矯導所(支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b>해당軍</b> 參謀總長(이하 “參謀總長”이라 한다)이 指揮·監督한다.</p> <p>③矯導所에는 懲役刑·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者(이하 “受刑者”라 한다)를 收容한다.</p> <p>④參謀總長은  필요한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受刑者 또는 <u>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未決收容者”라 한다)</u>을 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女子受刑者 또는 女子未決收容者는 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b>第 4 條 (請願) ①收容者が 그 處遇에 不服하는 때에는 參謀總長 또는 巡廻點檢公務員에게 請願할 수 있다.</b></p> <p>②收容者が 參謀總長에게 請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書面을 所長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矯導官은 請願書를 開封하지 못한다.</p> <p>③巡廻點檢公務員에 대한 請願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巡廻點檢公務員이 口述에 의한 請願을 듣는 때에는 矯導官을 참여 시키지 못한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參謀總長이 請願에 대한 決定을 하는 때에는 文書로써 하여야 하며, 所長은 그 決定書를 지체없이 請願人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b>第 6 條 (新入者の 收容等) ①所長은 收容者로서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新入하는 者(이하 “新入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執行指揮書 및 裁判書 기타 書類를 調査·確認한 후 收容하여야 한다.</b></p> <p>②所長은 新入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軍醫官의 健康診斷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 결과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서 適當한 治療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者와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傳染病에 걸린 者에 대하여는 第2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b>第 4 條 (請願) ①收容者が 그 대우에 不服할 때에는 參謀總長 또는 巡廻點檢公務員에게 請願할 수 있다.</b></p> <p>②收容者が 參謀總長에게 請願할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書面을 所長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矯導官은 請願書를  열어보지 못한다.</p> <p>③ <u>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때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할 수 있다. 巡廻點檢公務員은 口述로 하는 請願을 들을 때에는 矯導官을 참여 시키지 못한다.</u></p> <p>④第2項의 規定에 따라서 參謀總長이 請願에 대한 決定을 할 때에는 文書로써 하여야 하며, 所長은 그 決定書를 지체없이 請願人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b>第 6 條 (새로 들어온 자의 收容等) ①</b> 所長은 收容者로서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u>새로들어 온 자에게는</u> 執行指揮書 및 裁判書 기타 書類를 調査·確認한 후 收容하여야 한다.</p> <p>②所長은 <u>새로 들어온 자에게</u> 지체없이 軍醫官의 健康診斷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u>따라서</u> 健康診斷 결과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서 適當한 治療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者와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傳染病에 걸린 者에 대하여는 第2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현행	개정안
<p><b>第7條</b> (身體檢査等) ①所長은 <b>新入者</b>의 身體와 衣類를 檢査하고 指紋을 採取하며 寫眞을  촬영하여야 한다.</p>	<p><b>第7條</b> (身體檢査等) ①所長은 <b>새로 들어온 자의</b> 身體와 衣類를 檢査하고 指紋을 採取하며 寫眞을  촬영하여야 한다.</p>
<p><b>第8條</b> (收容方法) 收容者는 獨房收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共同收容할 수 있다.</p>	<p><b>第8條</b> (收容方法) 收容者는 獨房收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共同收容할 수 있다.</p>
<p><b>第9條</b> (共同收容) ①共同收容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居室을 區別하여 收容한다. 다만, 收容者의 罪質·性格·犯數·年齡·經歷 또는 刑期등을  고려하여 <b>居室을 별도로 品別하여</b> 收容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作業場의 就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教育·教誨·診察하거나 病室에 收容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第9條</b> (共同收容) ①共同收容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居室을 區別하여 收容한다. 다만, 收容者의 罪質·性格·<b>罪數·나이·經歷</b> 또는 刑期등을  고려하여 <b>방을 區別하여</b> 收容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b>作業場에서 일하는 것에  관하여</b> 이를 準用한다.                  ③教育·<b>종교를 통한  교화</b>·診察하거나 病室에 <b>收容할  때에는</b>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第10條</b> (收容者의 移送) 所長은 收容者의 收容·作業·教化 기타 <b>處遇上</b> 특히  필요하다고 <b>인정하는  때에는</b> 參謀總長의  승인을  얻어 收容者를  다른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移送할 수 있다.</p>	<p><b>第10條</b> (收容者의 移送) 所長은 收容者의 收容·作業·教化 기타 <b>대우를  위하여</b> 특히  필요하다고 <b>인정할  때에는</b> 參謀總長의  승인을  얻어 收容者를  다른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移送할 수 있다.</p>
<p><b>第11條</b> (死刑囚의 收容) <b>死刑의 宣告</b>를  받은 者는 未決收容室에 收容한다.</p>	<p><b>第11條</b> (死刑囚의 收容) <b>死刑을 宣告</b> 받은 者는 未決收容室에 收容한다.</p>
<p>第3章 警戒監護</p>	<p>第3章 <b>안전 및 질서유지</b></p>
<p><b>第13條</b> (武器의  사용) ①矯導官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b>경우에는</b>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p>	<p><b>第13條</b> (武器의  사용) ①矯導官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b>경우에는</b>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p>1. <b>矯導官에 대하여</b> 暴行 또는 脅迫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事態가 위험하다고 <b>인정되는 때</b></p> <p>2. 暴行 또는 脅迫에 사용할 危險物을 지니고 投棄命令에 복종 하지 아니하는 때</p> <p>3. 달아날 目的으로 많은 사람이 騷擾하는 때</p> <p>②矯導官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밖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대한 防護, 收容者에 대한 奪取의 阻止, 建物기타 施設과 武器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收容者외의 者에 대하여도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p> <p><b>第14條</b> (收容者の 緊急移送등) ①所長은 天災地變 기타 事變으로 인하여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에서는 避難의 方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收容者를 다른 곳에 移送할 수 있다.</p> <p>②다른 곳에서의 移送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釋放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는 釋放후 24時間이내에 矯導所 또는 가까운 憲兵隊나 警察官署에 출석하여야 한다.</p> <p><b>第15條</b> (面會와 書信의 受發) ①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他人과 面會하거나 書信을 受發할 수 있다.</p>	<p>1. <b>矯導官에게</b> 暴行 또는 脅迫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事態가 위험하다고 <b>인정될 때</b></p> <p>2. 暴行 또는 脅迫에 사용할 危險物을 지니고 投棄命令에 <b>복종하지 않을 때</b></p> <p>3. 달아날 目的으로 많은 사람이 <b>소란을 피울 때</b></p> <p>②矯導官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밖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대한 <b>방어(보호)</b>, 收容者에 대한 奪取의 阻止, 建物기타 施設과 武器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收容者외의 者에 대하여도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p> <p><b>第14條</b> (收容者の 緊急移送등) ①所長은 天災地變 기타 事變으로 인하여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에서는 <b>避難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b> 收容者를 다른 곳에 <b>옮길 수 있다.</b></p> <p>②<b>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b> 일시 釋放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b>따라서</b> 釋放된 者는 釋放후 24時間이내에 矯導所 또는 가까운 憲兵隊나 警察官署에 출석하여야 한다.</p> <p><b>第15條</b> (面會와 書信의 受發) ①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他人과 面會하거나 <b>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b></p>

현행	개정안
<p>다만, 搜查중인 未決收容者에 대하여는 檢察官이 이를 許可 한다.</p> <p>②收容者の 面會와 書信受發은 教化 또는 處遇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p> <p>③收容者の 面會와 書信受發은 矯導官의 참여와 檢閱을 요한다. 다만,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 面會의 경우를 제외한다.</p> <p>④收容者가 受發하는 書信의 檢閱·發送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p> <p>⑤所長이 교부를 許可하지 아니한 書信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釋放할 때 本人에게 교부할 수 있다.</p> <p>⑥面會에의 참여, 書信의 檢閱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16條</b> (書信등의 領置) 收容者에게 교부된 書信 기타 文書는 本人이 閱覽한 후 이를 領置한다. 다만, 教化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書信 기타 文書는 이를 領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第17條</b> (衣類와 이부자리의 給與) ① 收容者에게는 일정한 衣類와 이부자리를 給與한다.</p> <p>②衣類와 이부자리의 給與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다만, 搜查중인 未決收容者는 檢察官이 이를 許可 하여야 한다.</p> <p>②收容者가 面會와 편지를 주고 받는 것이 教化 또는 대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p> <p>③收容者가 面會와 편지를 주고 받을 때에는 矯導官의 참여와 檢閱을 요한다. 다만, 第62條의 規定에 따라서 辯護人 面會하는 경우는 제외된다.</p> <p>④收容者가 주고받는 편지에 대한 檢閱·發送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p> <p>⑤所長이 교부를 許可하지 아니한 편지는 이를 폐기한다. 다만,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釋放할 때 本人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p> <p>⑥面會에 참여, 편지를 檢閱 및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16條</b> (書信등의 領置) 收容者에게 교부된 편지 기타 文書는 本人이 閱覽한 후 이를 보관한다. 다만, 教化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편지 기타 文書는 이를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p> <p><b>第17條</b> (衣類와 이부자리의 지급) ① 收容者에게는 일정한 衣類와 이부자리를 지급한다.</p> <p>②衣類와 이부자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현 행	개정안
<p><b>第18條</b> (食糧의 給與) ①收容者에게는 體質·健康·年齡 및 作業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食糧을 給與한다.</p> <p>②食糧給與의 기준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p>	<p><b>第18條</b> (食糧의 <u>지급</u>) ①收容者에게는 體質·健康·年齡 및 作業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食糧을 <u>지급한다</u>.</p> <p>②食糧給與의 기준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p>
<p><b>第19條</b> (酒類등의 給與禁止) 收容者에 대하여는 酒類와 담배를 給與하지 못한다.</p>	<p><b>第19條</b> (酒類등의 給與禁止) 收容者에 대하여는 酒類와 담배를 <u>지급</u>하지 못한다.</p>
<p><b>第20條</b> (衣類등의 自費負擔) ①所長은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收容者에게 衣類·이부자리 및 食糧의 自費負擔을 許可할 수 있다.</p> <p>②自費負擔의 衣類·이부자리 및 食糧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20條</b> (衣類등의 自費負擔) ①所長은 <u>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收容者에게 衣類·이부자리</u> 및 食糧의 自費負擔을 許可할 수 있다.</p> <p>②自費負擔의 衣類·이부자리 및 食糧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21條</b> (理髮과 面刀) 受刑者의 머리 카락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남은 刑期가 2月이하인 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p>	<p><b>第21條</b> (理髮과 面刀) 수형자는 머리 카락과 <u>수염을 짧게 깎는다. 다만, 남은 刑期가 2月이하인 者는</u> 예외로 한다.</p>
<p><b>第22條</b> (運動 및 沐浴의 허용) 所長은 收容者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運動과 沐浴을 하게 하여야 한다.</p>	<p><b>第22條</b> (運動 및 沐浴의 허용) 所長은 收容者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運動과 <u>沐浴을 하게 한다</u>.</p>
<p><b>第23條</b> (傳染病의 豫防) 所長은 收容者에게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b>第23條</b> (傳染病의 豫防) 所長은 收容者에게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u>措置를 한다</u>.</p>
<p><b>第24條</b> (病室收容등) 所長은 疾病에 걸린 收容者에 대하여는 病室에 收容하거나 기타 적당한 治療를 하여야 한다.</p>	<p><b>第24條</b> (病室收容등) 所長은 疾病에 걸린 <u>收容者에게</u> 病室에 收容하거나 기타 적당한 <u>治療를 한다</u>.</p>
<p><b>第25條</b> (隔離收容) 所長은 傳染病에 걸린 收容者에 대하여는 다른 收容者와 隔離收容하여야 한다.</p>	<p><b>第25條</b> (隔離收容) 所長은 傳染病에 걸린 <u>收容者를 다른 收容者와 분리收容 한다</u>.</p>

현행	개정안
<p>第26條 (自費治療) 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收容者가 自費로 治療하는 것을 許可할 수 있다.</p>	<p>第26條 (自費治療) 所長은 필요하다고 <u>인정될 경우에는</u> 收容者가 自費로 治療하는 것을 許可할 수 있다.</p>
<p>第27條 (病院移送) ①所長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에서 收容者에게 適當한 治療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u>인정되는 때에는</u> 收容者를 軍病院에 移送할 수 있다.</p> <p>②軍病院에서 適當한 治療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u>인정되는</u> 收容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軍外 病院등으로 移送하여 治療하게 할 수 있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者는 收容者에 準한다.</p>	<p>第27條 (病院移送) ①所長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에서 收容者에게 適當한 治療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u>인정될 때에는</u> 收容者를 軍病院에 移送할 수 있다.</p> <p>②軍病院에서 適當한 治療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u>인정될 收容者는 大統領令에 따라서</u> 軍外 病院등으로 移送하여 治療하게 할 수 있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u>따라서</u> 移送된 者는 收容者에 準한다.</p>
<p>第28條 (敎誨) 所長은 受刑者가 자기가 信奉하는 宗派의 敎義에 의한 敎誨를 申請하는 때에는 그 宗派에 위촉하여 敎誨를 할 수 있다.</p>	<p>第28條 (종교적 교화) 所長은 受刑者가 자기가 믿는 <u>종파의 교리에 따라서 종교적 교화를 신청할 때에는 그 종파에 부탁하여 교화할 수 있다.</u></p>
<p>第29條 (敎育과 訓練) 受刑者에게는 社會 또는 軍에 復歸함에 필요한 敎育 또는 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p>	<p>第29條 (敎育과 訓練) 受刑者에게는 社會 또는 軍에서 <u>생활하는데 필요한 敎育 또는 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u></p>
<p>第30條 (圖書의 閱覽) 所長은 收容者가 圖書의 閱覽을 申請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p>	<p>第30條 (圖書의 閱覽) 所長은 <u>收容者가 도서를 열람신청할 때에는</u>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p>
<p>第31條 (敎育規程) 敎誨의 申請방법, 敎育·訓練의 科目·時間과 圖書의 閱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p>	<p>第31條 (敎育規程) <u>종교를 통한 교화를 신청하는 방법, 敎育·訓練할 科目·時間과 圖書를 閱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u> 國防部令으로 정한다.</p>
<p>第32條 (作業) ①作業은 受刑者의 刑期·年齡·건강 및 特技등을 고려하여 課한다.</p>	<p>第32條 (作業) ①作業은 受刑者의 刑期·<u>나이</u>·건강 및 特技등을 고려하여 課한다.</p>

현 행	개정안
<p>②所長은 受刑者의 社會復歸와 技術習得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b>受刑者로 하여금 외부 企業體등에 通勤作業하게 할 수 있다.</b></p> <p>③作業의 종류·시간, <u>通勤作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u>승으로 정한다.</p> <p><b>第38條</b> (携帶金品の 領置) ①收容者의 携帶金品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領置한다. 다만, 領置의 價値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p> <p>②所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을 本人이 相當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p> <p><b>第41條</b> (領置金品の  반환) ①領置金品은 釋放할 때 本人에게  반환한다.</p> <p>②死亡한 收容者가  남겨 놓은 金品은 請求에 의하여 그 相續人에게  교부한다.</p> <p>③收容者의 死亡후 1년이  경과하여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없을 때에는 그가  남겨 놓은 金品은 國庫에  귀속된다.</p> <p>④逃走者가  남겨 놓은 金品은 請求에 의하여 本人이나  본인의 直系尊屬 또는 直系尊屬에게  교부한다. 다만, 逃走후 1년이  경과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귀속된다.</p> <p><b>第39條</b> (領置金品の 使用許可) 所長은 收容者가 領置金品으로 父母 또는 妻子의 生計扶助 기타 正當한</p>	<p>②所長은 受刑者에게 社會復歸와 技術習得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b>受刑者에게 외부 企業體등에 通勤作業하게 할 수 있다.</b></p> <p>③作業의 종류·시간, <u>通勤作業에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u>승으로 정한다.</p> <p><b>第38條</b> (携帶金品の  보관) ①收容者는 <u>携帶金品을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보관한다.</u> 다만, <u>보관할 價値가</u>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p> <p>②所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을 本人이 相當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를  폐기할 수 있다.</p> <p><b>第41條</b> (보관金品の  반환) ①보관金品은 釋放할 때 本人에게  반환한다.</p> <p>②死亡한 收容者가  남겨 놓은 金品은 <u>請求하면</u> 그 相續人에게  교부한다.</p> <p>③收容者의 死亡후 1년이  경과하여도 第2項의 規定에 <b>따른</b> 請求가 없을 때에는 그가  남겨 놓은 金品은 國庫에  귀속된다.</p> <p>④<b>도망자가</b>  남겨 놓은 金品은 <u>請求하면</u> 本人이나  본인의 直系尊屬 또는 直系尊屬에게  교부한다. 다만, <b>도망 후</b> 1년이  경과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귀속된다.</p> <p><b>第39條</b> (領置金品の 使用許可) 所長은 收容者가 領置金品으로 父母 또는 妻子의 <u>생활비용</u> 기타 正當한 用途에</p>

현행	개정안
<p>用途에 충당할 것을 申請한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p> <p><b>第40條</b> (收容者에 대한 金品교부) ① 所長은 收容者에 대한 金品の 교부를 申請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p> <p>② 所長은 收容者에게 보내온 金品으로서 本人이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 物品을 本人에게 交부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發送人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p> <p><b>第42條</b> (賞으로서의 處遇) ① 所長은 收容者로서 ぬ우치는 빛이 뚜렷하거나 行實이 優秀한 者에게는 賞으로서의 處遇를 할 수 있다.</p> <p>② 賞으로서의 處遇의  종류와  방법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p> <p>③ 1年이상 服役한 受刑者로서 그 刑期의 2分の 1을 경과하고 ぬ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行實이 優秀한 者에게는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刑期間중 3週이내의 歸休를 許可할 수 있다. 歸休期間은 刑執行期間에 넣어 計算한다.</p> <p><b>第52條</b> (被釋放者의 일시 收容保護) 被釋放者가 疾病으로 인하여 歸還하기 곤란한 때에는 本人의 請求에 의하여 일시 矯導所내에 收容保護할 수 있다.</p> <p><b>第53條</b> (歸還旅費등) 被釋放者가 歸還에 필요한 旅費 또는 衣類를 지니</p>	<p>충당할 것을 申請한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p> <p><b>第40條</b> (收容者에 대한 金品교부) ① 所長은 收容者에게 金品을 交부할 것을 申請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p> <p>② 所長은 收容者가 보내온 金品을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 物品을 本人에게 交부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發送人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p> <p><b>第42條</b> (賞을 통한 대우) ① 所長은 收容者 中에서 ぬ우치는 빛이 뚜렷하거나 行實이 優秀한 者에게는 賞으로서의 處遇를 할 수 있다.</p> <p>② 賞을 통한 대우의  종류와  방법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p> <p>③ 1年이상 服役한 受刑者 中에서 그 刑期의 2分の 1을 경과하고 ぬ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行實이 優秀한 者에게는 國防部令에 따라서 刑期間중 3週이내의  휴가를 許可할 수 있다.  휴가 期間은 刑執行期間에 넣어 計算한다.</p> <p><b>第52條</b> (被釋放者의 일시 收容保護) 석방될 자가  질병 때문에  귀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本人이  청구하면 일시 矯導所내에 收容保護할 수 있다.</p> <p><b>第53條</b> (歸還旅費등)  석방될 자가  귀환에 필요한 비용과 의류가 없으면</p>

부 록

현 행	개정안
<p>지 아니한 때에는 그 旅費 또는 衣類를 당해 矯導所에서 빌려 줄 수 있다.</p>	<p><u>그 비용과 의류를 해당 교도소에서 빌려 줄 수 있다.</u></p>

4. 소년법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第 1 條</b> (目的) 이 법은 反社會性있는 少年에 대하여 그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에 관한 保護處分을 행하고 刑事處分에 관한 特別措置를 행함으로써 少年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第 2 條</b> (少年, 保護者) 이 법에서 “少年”이라 함은 20歲미만의 者를, “保護者”라 함은 法律上 監護教育의 義務있는 者 또는 현재 監護하는 者를 말한다.</p> <p><b>第 4 條</b> (保護의 대상과 送致 및 통고) 가. 保護者의 正當한 監督에 복종하지 않는 性癖이 있는 것 나. 正當한 이유없이 家庭에서 離脫하는 것 다. 犯罪性이 있는 者 또는 不道德한 者와 交際하거나 자기 또는 他人의 德性을 해롭게 하는 性癖이 있는 것</p> <p><b>第 6 條</b> (移送) ①保護事件의 送致를 받은 少年部는 保護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다른 管轄少年部에 移送할 수 있다. ②少年部는 事件이 그 管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 事件을 管轄 少年部에 移送하여야 한다.</p> <p><b>第 7 條</b> (送檢) ①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結果 禁錮이상의 刑에 해당</p>	<p><b>第 1 條</b> (目的) 이 법은 反社會性있는 少年에게 그 환경을 바로잡고  성격과 行동을  교정하기 위한  保護處分을 행하고  刑事處分에 관한  特別措置를 행함으로써 少年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第 2 條</b> (少年, 保護者) 이 법에서 “少年”이라 함은 20歲미만의 者를, “保護者”라 함은 法律上 監護教育할 義務 있는 者 또는 현재 監護하는 者를 말한다.</p> <p><b>第 4 條</b> (保護의 대상과 送致 및 통고) 가. 保護者의 正當한 監督에 복종하지 않는  성질과  버릇이 있는 것 나. 正當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것 다. 犯罪性이 있는 者 또는 不道德한 者와  사귀거나 자기 또는 他人의  품성을 해롭게 하는  성질과  버릇이 있는 것</p> <p><b>第 6 條</b> (移送) ①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소년부는  보호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事件을 다른  管轄少年部에  移送할 수 있다. ②少年部는 事件이 그 管轄에 속하지  않는  다고  인정되면  決定으로써 그  事件을  管轄 少年部에  移送하여야 한다.</p> <p><b>第 7 條</b> (검찰에  송치) ①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結果  禁錮이상의  刑에</p>

현 행	개정안
<p>한 犯罪事實이 발견된 경우에 그 動機와 罪質이 刑事處分の 必要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地方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p> <p>②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本人이 <u>20歲이상인 것이 判明된 때</u>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地方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다만,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에 移送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第11條 (調査命令)</b> ①少年部判事は <u>調査官에 대하여</u> 本人, 保護者 또는 參考人の 審問 기타 必要사항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p> <p>②少年部는 第4條第 3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고된 少年을 審理할 必要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事件을 調査하여야 한다.</p> <p><b>第13條 (召喚, 同行令狀)</b> ①少年部判事は <u>事件의 調査·審理에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期日을 지정하여 本人·保護者 또는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p> <p>②本人 또는 保護者가 正當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少年部判事は 同行令狀을 發할 수 있다.</p> <p><b>第14條 (緊急同行令狀)</b> 少年部判事は 本人을 保護하기 위하여 緊急措置가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3條 第1項에 規定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發할 수 있다.</p>	<p>해당한 犯罪事實이 발견된 경우에 그 動機와 罪質이 <u>刑事處分할 必要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u>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地方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p> <p>②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本人이 <u>20歲이상으로 判明되면</u>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地方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다만, 第51條의 規定에 <u>따라서</u> 法院에 移送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第11條 (調査命令)</b> ①少年部判事は <u>調査官에게</u> 本人, 保護者 또는 參考人の 審問 기타 <u>必要사항을 調査할 것을 命할 수 있다.</u></p> <p>②少年部는 第4條第3項의 <u>規定에 따라서</u> 通고된 少年을 審理할 必要가 있다고 <u>인정되면</u> 그 事件을 調査하여야 한다.</p> <p><b>第13條 (召喚, 同行令狀)</b> ①少年部判事は <u>事件을 調査·審理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되면</u> 期日을 지정하여 本人·保護者 또는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p> <p>②本人 또는 保護者가 正當한 이유없이 召喚에 <u>응하지 않으면</u> 少年部判事は 同行令狀을 發할 수 있다.</p> <p><b>第14條 (緊急同行令狀)</b> 少年部判事は 本人을 保護하기 위하여 緊急措置가 必要하다고 <u>인정되면</u> 第13條 第1項에 規定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發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b>第15條</b> (同行令狀의 方式) 同行令狀에는 少年 또는 保護者의 姓名, 年齡, 住居, 행위의 概要, 引致 또는 收容할 場所, 有效期間 및 그 期間의  경과후에는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發付年月日을 기재하고 少年部 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p> <p><b>第16條</b> (同行令狀의 執行) ②少年部 判事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나 保護觀察官 또는 <u>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u> 同行令狀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p> <p><b>第17條</b> (補助人選任) ⑤少年部 判事는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 少年分類審査院所屬公務員, 矯導所 또는 拘置所所屬公務員, 保護觀察官 또는 <u>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u> 그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p> <p><b>제20條</b> (審理開始의 決定) ①少年部 判事는 送致書와 調査官의 調査報告에 의하여 事件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理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審判에 부하여질 사유의 요지 및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p> <p><b>第23條</b> (審理의 開始) ①審理期日에는 判事와 書記가 <u>列席</u>하여야 한다.</p>	<p><b>第15條</b> (同行令狀의 方式) 同行令狀에는 少年 또는 保護者의 姓名, <u>나이</u>, 住居, 행위의 概要, 引致 또는 收容할 場所, 有效期間 및 그 期間의  경과후에는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發付年月日을 기재하고 少年部 判事가 <u>이름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u>.</p> <p><b>第16條</b> (同行令狀의 執行) ②少年部 判事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나 保護觀察官 또는 <u>司法警察官吏에게</u> 同行令狀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p> <p><b>第17條</b> (補助人選任) ⑤少年部 判事는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 少年分類審査院所屬公務員, 矯導所 또는 拘置所所屬公務員, 保護觀察官 또는 <u>司法警察官吏에게</u> 그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p> <p><b>第20條</b> (審理開始의 決定) ①少年部 判事는 送致書와 調査官의 調査報告에 의하여 事件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 <u>인정되면</u> 審理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심판에 회부될 사유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u>.</p> <p><b>第23條</b> (審理의 開始) ①審理期日에는 <u>판사와 서기가 함께 출석</u>하여야 한다.</p>

현 행	개정안
<p><b>第24條</b> (審理의 方式) ①審理는 親切하고 溫和하게 한다.</p> <p>②審理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判事는 適當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在席을 許可할 수 있다.</p> <p><b>第25條</b> (意見陳述) ①調査官, 保護者 및 補助人은 審理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경우에 判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本人의 退席을 命할 수 있다.</p> <p><b>第28條</b> (援助, 協力) ①少年部判事는 그 職務에 관하여 모든 行政機關, 學校, 病院 기타 公私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援助와 協力を 要求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要求를 거절할 때에는 正當한 理由를  제시하여야 한다.</p> <p><b>第33條</b> (保護處分の 期間) ④第32條 第3項의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同條第1項第2號의 短期保護觀察의 경우에는 50時間을, 同條第1項第3號의 保護觀察의 경우에는 2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保護觀察官이 그 命令을 執行함에는 本人의 正當적인 生活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短期保護觀察 또는 保護觀察이  종료되거나 假解除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執行하지 아니한다.</p> <p>⑤第3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短期로 少年院에 送致된 少年의 收容期間은 6月을  초과하지 못한다.</p>	<p><b>第24條</b> (審理의 方式) ①審理는 親切하고 <u>溫和하게 한다.</u></p> <p>②審理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判事는 適當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u>심리를 볼수 있게 허가할 수 있다.</u></p> <p><b>第25條</b> (意見陳述) ①調査官, 保護者 및 補助人은 <u>審理에서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u></p> <p>②第1項의 경우에 判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본인에게 나가 줄 것을 명할 수 있다.</u></p> <p><b>第28條</b> (援助, 協力) ①少年部判事는 그 職務에 관하여 모든 行政機關, 學校, 病院 기타 公私團體<u>에게</u>  필요한 <u>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②第1項의 要求를 거절할 때에는 正當한 理由를  제시하여야 한다.</p> <p><b>第33條</b> (保護處分の 期間) ④第32條 第3項의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同條第1項第2號의 短期保護觀察의 경우에는 50時間을, 同條第1項第3號의 保護觀察의 경우에는 2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保護觀察官이 그 命令을 執行함에는 本人의 正當적인 生活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短期保護觀察 또는 保護觀察이  종료되거나 <u>잠정해제 되었을</u> 경우에는 이를 執行하지 아니한다.</p> <p>⑤<b>第32條 第1項 第6號의 規定에 따라</b> 短期로 少年院에 送致된 少年의 收容期間은 6月을  초과하지 못한다.</p>

현행	개정안
<p><b>第40條</b> (保護處分の 競合) 保護處分の 繼續중 本人에 대하여 새로운 保護處分이 있었을 때에는 그 處分을 한 少年部判事는 전의 保護處分을 한 少年部に 照會하여 어느 한 保護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p> <p><b>第41條</b> (費用의 補助) 第18條第1項 第1號, 第2號의 措置에 관한 決定 또는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을 받은 少年의 保護者는 <u>受託者에 대하여</u> 그 監護에 관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保護者가 支給할 能力이 없는 때에는 少年部가 이를 支給할 수 있다.</p> <p><b>第52條</b> (少年部送致時의 身柄處理) ①第49條第1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少年部送致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少年을 拘禁하고 있는 施設의 長은 檢事의 移送指揮를 받은 때로부터 法院少年部가 있는 市·郡에서는 24時間이내에, 기타 市·郡에서는 48時間이내에 少年을 少年部に 引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拘束令狀의 效力은 少年部判事が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少年의 監護에 관한 決定을 한 때에 喪失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決定은 拘束令狀의 效力期間내에 이루어져야 한다.</p> <p><b>第62條</b> (換刑處分の  금지)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는 刑法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留置宣告를 하지 못한다.</p>	<p><b>第40條</b> (保護處分の 競合) <u>보호처분이 계속중인 본인에게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한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b>第41條</b> (費用의 補助) 第18條 第1項 第1號, 第2號의 措置에 관한 決定 또는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을 받은 少年의 保護者는 <u>受託者에게</u> 그 監護에 관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保護者가 支給할 能力이 없는 때에는 少年部가 이를 支給할 수 있다.</p> <p><b>第52條</b> (少年部送致時의  신체處理) ① 第49條第1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少年部送致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少年을 拘禁하고 있는 施設의 長은 檢事의 移送指揮를 받은 때로부터 法院少年部가 있는 市·郡에서는 24時間이내에, 기타 市·郡에서는 48時間이내에 少年을 少年部に 引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拘束令狀의 效力은 少年部判事が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u>따라서 소년을 감호할 결정을 한 때에 喪失한다.</u>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決定은 拘束令狀의 效力期間내에 이루어져야 한다.</p> <p><b>第62條</b> (<u>자유형전환</u>  금지) 18歲미만인 <u>少年에게는</u> 刑法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留置宣告를 하지 못한다.</p>

현 행	개정안
<p><b>第63條</b> (懲役, 禁錮의 執行)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u>少年에 대하여는</u> 특히 設置된 矯導所 또는 일반 矯導所내에 특히 分界된 場所에서 그 刑을 執行한다. 다만, 少年이 刑의 執行중에 23歲에 달한 때에는 일반 矯導所에서 執行할 수 있다.</p> <p><b>第64條</b> (保護處分과 刑의 執行) 保護處分の 繼續중에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u>少年에 대하여는</u> 먼저 그 刑을 執行한다.</p> <p><b>第68條</b> (報道禁止) ①이 法에 의하여 調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保護事件 또는 <u>刑事事件에 대하여는</u> 姓名, 年齡, 職業, 容貌 등에 의하여 그 者가 <u>당해 本人으로</u> 推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新聞紙 기타 出版物에 게재 또는 放送할 수 없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新聞紙에 <u>있어서는</u> 編輯人과 發行人, 기타 出版物에 <u>있어서는</u> 著作者와 發行者, 放送에 <u>있어서는</u> 放送編輯人과 放送人을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b>第63條</b> (懲役, 禁錮의 執行)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u>少年에게는</u> 특히 設置된 矯導所 또는 일반 矯導所내에 특히 <u>분리된 場所</u>에서 그 刑을 執行한다. 다만, 少年이 刑의 執行중에 23歲에 달한 때에는 일반 矯導所에서 執行할 수 있다.</p> <p><b>第64條</b> (保護處分과 刑의 執行) 保護處分の 繼續중에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u>少年에게</u> 먼저 그 刑을 執行한다.</p> <p><b>第68條</b> (報道禁止) ①이 法에 의하여 調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保護事件 또는 <u>刑事事件에서는</u> 姓名, 年齡, 職業, 容貌 등에 의하여 그 者가 <u>해당本人으로 추정</u>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新聞紙 기타 出版物에 게재 또는 放送할 수 없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u>新聞紙는</u> 編輯人과 發行人, 기타 <u>出版物은</u> 著作者와 發行者, <u>放送은</u> 放送編輯人과 放送人을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5. 소년원법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第1條</b> (目的) 이 법은 少年院과 少年分類審査院의 組織과 機能 기타 少年의 矯正教育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b>第3條</b> (담당 및 組織) ①少年院과 少年分類審査院은 法務部長官이 掌管한다. ②少年院 및 少年分類審査院의 名稱, 位置, 職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5條</b> (處遇의 基本原則) ①保護少年 또는 委託少年(이하 “保護少年등”이라 한다)에 대한 處遇는 그들의 心身發達에 알맞는 環境을 造成하고 安定과 規律있는 生活속에서 保護少年등의 成長可能性을 <u>최대한</u> 伸張시킴으로써 社會適應力을 길러 健全한  청소년으로서 社會에 復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호소년에게는 <u>성행(性行)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u> 점차로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p> <p><b>第10條</b> (院長의 面接) 院長은 保護少年등으로부터 處遇 또는 <u>一身上의 事情</u>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保護少年등과 面接을 하여야 한다.</p> <p><b>第16條</b> (褒賞) ①院長은 矯正成績이 優秀하거나 品行이 他人의 模範이 되는 保護少年등에 대하여 褒賞을 할 수 있다.</p>	<p><b>第1條</b> (目的) 이 법은 少年院과 少年分類審査院의 組織과 機能 기타 少年의 <u>矯正教育등을 위하여</u>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b>第3條</b> (담당 및 組織) ①少年院과 少年分類審査院은 法務部長官이 <u>담당한다</u>. ②少年院 및 少年分類審査院은 <u>名稱, 位置, 職制 기타 필요한 사항을</u>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5條</b> (<u>대우</u>의 基本原則) ①保護少年 또는 委託少年(이하 “保護少年등”이라 한다)에 대한 <u>대우는</u> 그들의 心身發達에 알맞는 環境을 造成하고 安定과 規律있는 生活속에서 保護少年등의 成長可能性을 <u>최대한 伸張시킴으로써</u> 社會適應力을 길러 健全한  청소년으로서 社會에 復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호소년에게는 <u>성격이나 행동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u> 점차로 향상된 <u>대우</u>를 하여야 한다.</p> <p><b>第10條</b> (院長의 面接) 院長은 保護少年등으로부터 <u>대우 또는 개인사정</u>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保護少年등과 面接을 하여야 한다.</p> <p><b>第16條</b> (<u>상</u>) ①院長은 矯正成績이 優秀하거나 品行이 他人의 模範이 되는 <u>保護少年등에게 상을 줄 수 있다</u>.</p>

현 행	개정안
<p>②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褒賞을 받은 保護少年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處遇를 할 수 있다.</p> <p><b>第17條</b> (給與品등) ①保護少年등에 대하여는 衣類, 寢具, 學用品 기타 處遇에 필요한 物品을 給與 또는 貸與한다.</p> <p>②保護少年등에 대하여는 主食, 副食, 飲料 기타 營養物을 給與하되, 給與量은 保護少年이 健康을 유지하고 心身의 發育을 增進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給與品 및 貸與品の 種類와 數量의 基準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p>	<p>②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褒賞을 받은 <u>保護少年등에게는 특별한 대우를</u> 할 수 있다.</p> <p><b>第17條</b> (<u>지급품 등</u>)①保護少年등에게는 衣類, <u>이부자리</u>, 學用品 기타 <u>대우에 필요한 物品을 지급 또는 빌려준다.</u></p> <p>②保護少年등에게는 主食, 副食, 飲料 기타 營養物을 <u>지급하되, 지급量</u>은 保護少年이 健康을 유지하고 心身의 發育을 增進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u>規定에 따라서 지급품</u> 및 貸與品の 種類와 數量의 基準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b>第18條</b> (面會과 書信) ①院長은 保護少年등의 保護 및 矯正教育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護少年등의 面會를 許可하여야 한다.</p> <p>②院長은 保護少年등의 保護 및 矯正教育에 地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保護少年등의 書信受發을  제한할 수 있으며 書信의 內容을 檢閱할 수 있다.</p> <p><b>第22條</b> (領置와 遺留金品の 處分)</p> <p>①院長은 保護少年등이 所持한 金錢, 衣類 기타의 物品을 領置한 경우에는 이를 安全하게  보관하고 保護少年등에게 受領證을  교부하여야 한다.&lt;改正 1995.1.5&gt;</p> <p>②院長은 死亡한 保護少年등의 遺留金品에 대하여 親權者, 後見人 또는 親族으로부터 請求가 있을 때에는 請求者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死亡한 날로부터 1年 이내에 請求가 없을 때에는 그 遺留金品은 國庫에  귀속한다.</p>	<p><b>第18條</b> (面會과 書信) ①院長은 保護少年등을 保護 및 矯正教育하는데 <u>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護少年등을 면회하는 것을 許可하여야 한다.</u></p> <p>②院長은 保護少年등의 保護 및 矯正教育에 地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保護少年등의 편지 주고받기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內容을 檢閱할 수 있다.</u></p> <p><b>第22條</b> (<u>보관</u>과 遺留金品の 處分)</p> <p>①院長은 保護少年등이 所持한 金錢, 衣類 기타의 物品을 <u>보관한</u> 경우에는 이를 安全하게  보관하고 保護少年등에게 受領證을  교부하여야 한다.&lt;改正 1995.1.5&gt;</p> <p>②院長은 死亡한 保護少年등이 <u>남긴 금품에 대하여</u> 親權者, 後見人 또는 親族으로부터 請求가 있을 때에는 請求者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死亡한 날로부터 1年 이내에 請求가 없을 때에는 그 遺留金品은 國庫에  귀속한다.</p>

현행	개정안
<p><b>第24條</b> (分類審査의 원칙 및 방법)</p> <p>①分類審査는 保護少年등의 身體, 性格, 素質, 環境, 學歷 및 經歷과 그 相互關係를 糾明하여 保護少年등의 矯正에 관한 最善의 方針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분류심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교정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p> <p><b>第31條</b> (學籍管理) ①보호소년의 소년원학교에의 <b>입교</b>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p> <p>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동조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에 산입한다.</p> <p>③소년원학교장은 保護少年이 <b>입교한 때에는</b> 그 사실을 保護少年이 最終的으로 在學했던 學校(이하 “前籍學校”라 한다)의 長에게 통지하고 당해 保護少年의 學籍에 관한 資料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p> <p><b>第37條</b> (通勤就業) ①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b>履修</b>한 때에는 産業體에 通勤就業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을 한 때에는</p>	<p><b>第24條</b> (分類審査의 원칙 및 방법)</p> <p>①分類審査는 保護少年등의 身體, 性格, 素質, 環境, 學歷 및 經歷과 그 <b>상호관계를 밝혀</b> 保護少年등의 矯正에 관한 最善의 方針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b>분류심사를 할 때에는</b>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교정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p> <p><b>第31條</b> (學籍管理) ①<b>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b>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p> <p>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동조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b>해당 학교의 수업일수에 산입한다.</b></p> <p>③소년원학교장은 保護少年이 <b>들어온 때에는 그 사실을</b> 保護少年이 最終的으로 在學했던 學校(이하 “前籍學校”라 한다)의 長에게 통지하고 <b>해당</b> 保護少年의 學籍에 관한 <b>資料를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b></p> <p><b>第37條</b> (通勤就業) ①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b>마친 때에는</b> 産業體에 通勤就業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第1項의 <b>規定에 따라서</b> 就業을 한 때에는 당해</p>

현행	개정안
<p>당해 産業體로 하여금 勤勞基準法의 規定을 준수하게 하고, 保護少年에게 報酬가 支給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本人에게 支給하여야 한다.</p>	<p>産業體로 하여금 勤勞基準法의 規定을 준수하게 하고, 保護少年에게 報酬가 支給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本人에게 支給하여야 한다.</p>

6.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b>第1條</b> (目的) 이 법은 行刑法 第4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矯導所등의 設置·운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民間에 委託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矯導所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收容者의 處遇向上과 社會復歸를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p> <p><b>第3條</b> (矯正業務의 民間委託) ①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矯正業務를 公共團體外的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矯正業務를 包括적으로 委託받아 1개 또는 수개의 矯導所등을 設置·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法人에게만 委託할 수 있다.</p> <p>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受託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受託者選定審査委員會(이하 “選定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p><b>第12條</b> (任員就任의 承認取消)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p> <p>2. 任員간의 紛爭·會計不正 및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당해 矯正法人의 設立目的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p> <p><b>第19條</b> (다른 法律과의 관계) 矯正法人에 관하여는 이 법에 規定된 것을</p>	<p><b>第1條</b> (目的) 이 법은 行刑法 第4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矯導所등의 設置·운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民間에 委託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矯導所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收容者의 <u>대우향상</u>과 社會復歸를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p> <p><b>第3條</b> (矯正業務의 民間委託) ①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이 법에 따라서</u> 矯正業務를 公共團體外的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矯正業務를 包括적으로 委託받아 1개 또는 수개의 矯導所등을 設置·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法人에게만 委託할 수 있다.</p> <p>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u>規定에 따라서</u> 受託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受託者選定審査委員會(이하 “選定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p><b>第12條</b> (任員就任의 承認取消)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p> <p>2. 任員간의 紛爭·會計不正 및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u>해당 矯正法人의</u> 設立目的을 <u>달성할 수 없게 된 때</u></p> <p><b>第19條</b> (다른 法律과의 관계) 矯正法人에 관하여는 이 법에 規定된 것을</p>

현행	개정안
<p>제외하고는 <b>당해 法人</b>의 設立形態에 따라 民法중 社團法人 또는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 기타 設立根據法律을 적용한다.</p> <p><b>第23條</b> (運營經費) ①法務部長官은 사전에 企劃豫算處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는 矯正法人에 대하여 매년 <b>당해 矯導所</b>등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한다.</p> <p><b>第31條</b> (制服着用과 武器購入) ②民營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武器는 <b>당해 矯正法人</b>의 부담으로 法務部長官이 購入하여 이를 配定한다.</p> <p>③民營矯導所등의 武器購入·配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p> <p><b>第33條</b> (監督 등) ①法務部長官은 民營矯導所등의 業務 및 그와 관련된 矯正法人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요한 경우 指示나 命令을 할 수 있다. 다만, 收容者에 대한 <b>敎育과 敎誨</b>에 관하여는 당해 矯正法人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p>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民營矯導所등에 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b>당해 民營矯導所</b>등의 業務를 指導·監督하게 하여야 한다.</p> <p><b>第39條</b> (權限의 위임) 法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관할 地方矯正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외하고는 <b>해당 法人</b>의 設立形態에 따라 民法중 社團法人 또는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 기타 設立根據法律을 적용한다.</p> <p><b>第23條</b> (運營經費) ①法務部長官은 사전에 企劃豫算處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는 矯正法人에 대하여 매년 <b>해당 矯導所</b>등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한다.</p> <p><b>第31條</b> (制服着用과 武器購入) ②民營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武器는 <b>해당 矯正法人</b>이 부담으로 法務部長官이 購入하여 이를 配定한다.</p> <p>③民營矯導所등에서 武器購入·配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p> <p><b>第33條</b> (監督 등) ①法務部長官은 民營矯導所등의 業務 및 그와 관련된 矯正法人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요한 경우 指示나 命令을 할 수 있다. 다만, 收容者에 대한 敎育과 <b>종교를 통한 교화는 해당 矯正法人</b>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p>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民營矯導所등에 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b>해당 民營矯導所</b>등의 業務를 指導·監督하게 하여야 한다.</p> <p><b>第39條</b> (權限의 위임) 法務部長官은 <b>이법에 따라서 권한의 일부를</b> 관할 地方矯正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7. 보안관찰법의 한글화대비표

현 행	개정안
<p><b>第 1 條</b> (目的) 이 법은 特定犯罪를 범한 <b>者</b>에 대하여 再犯의 危險性을 예방하고 健全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保安觀察處分을 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社會의 安寧을 유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b>第 3 條</b> (保安觀察處分對象者) 이 법에서 “保安觀察處分對象者”라 함은 保安觀察該當犯罪 또는 이와 競合된 犯罪로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期合計가 3年이상인 <b>者</b>로서 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執行을 받은 사실이 있는 者를 말한다.</p> <p><b>第 4 條</b> (保安觀察處分) ①第3條에 해당하는 者중 保安觀察該當犯罪를 다시 범할 危險性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再犯의 방지를 위한 觀察이 필요한 <b>者</b>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을 한다.</p> <p>②保安觀察處分을 받은 者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住居地 管轄警察署長(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고, 再犯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保安觀察을 받아야 한다.</p>	<p><b>第 1 條</b> (目的) 이 법은 特定犯罪를 범한 <u>자에게</u> 再犯의 危險性을 <u>예방하고</u> <u>健全한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하여</u> <u>보안처분을 하여</u> <u>國家의 安全과 社會의 安寧을 유지</u>를 目的으로 한다.</p> <p><b>第 3 條</b> (保安觀察處分對象者) 이 법에서 “保安觀察處分對象者”<u>란</u> 保安觀察該當犯罪 또는 이와 競合된 犯罪로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期合計가 <u>3년 이상인 자 중에서 형의 집행</u>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者를 말한다.</p> <p><b>第 4 條</b> (保安觀察處分) ①第3條에 해당하는 者중 保安觀察該當犯罪를 다시 범할 危險性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再犯의 방지를 위한 觀察이 필요한 <u>者에게</u> 保安觀察處分을 한다.</p> <p>②保安觀察處分을 받은 者는 <u>이 법에 따라서</u> 소정의 사항을 住居地 管轄警察署長(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고, 再犯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保安觀察을 받아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b>第 5 條</b> (保安觀察處分의 期間) ②法務部長官은 <b>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b>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그 期間을 <b>更新할 수 있다.</b></p> <p><b>第 6 條</b> (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 申告) ①保安觀察處分對象者는 <b>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刑의 執行을 받고 있는</b> 矯導所, 少年矯導所, 拘置所, 留置場, 軍矯導所 또는 營倉(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 에서 出所전에 <b>居住豫定地</b>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矯導所등의 長을 <b>경유하여 居住豫定地</b>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고, 出所후 7日이내에 그 <b>居住豫定地</b> 管轄警察署長에게 出所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 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제공하는 居住할 場所(이하 “居所”라 한다)를 <b>居住豫定地</b>로 申告하여야 한다.</p> <p>②保安觀察處分對象者는 矯導所등에서 出所한 후 第1項의 申告事項에 <b>變動이 있을 때에는 變動이 있는 날부터 7日이내에</b> 그 變動된 사항을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가 住居地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警察署長에게 第18條第4項 但書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p> <p><b>第 8 條</b> (請求의 방법)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觀察處分請求는 檢事가 保安觀察處分請求書(이하 “處</p>	<p><b>第 5 條</b> (保安觀察處分의 期間) ②<b>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b>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그 期間을 <b>연장할 수 있다.</b></p> <p><b>第 6 條</b> (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 申告) ①保安觀察處分對象者는 <b>大統領令에 따라서 그 刑이 집행되고 있는</b> 矯導所, 少年矯導所, 拘置所, 留置場, 軍矯導所 또는 營倉(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 에서 出所전에 <b>살던 곳</b>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矯導所등의 <b>長을 거쳐 살 곳</b>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고, 出所후 7日이내에 그 <b>사는 곳의 管轄警察署長에게</b> 出所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 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제공하는 居住할 場所(이하 “居所”라 한다)를 <b>살 곳으로</b> 申告하여야 한다.</p> <p>②保安觀察處分對象者는 矯導所등에서 出所한 후 第1項의 申告事項에 <b>바뀐 것이 있으면 바뀐 것이 있는 날부터 7日이내에</b> 그 變動된 사항을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가 住居地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警察署長에게 第18條第4項 但書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p> <p><b>第 8 條</b> (請求의 방법) ①第7條의 <b>규정에 따라서</b> 保安觀察處分請求는 檢事가 保安觀察處分請求書(이하 “處分請</p>

현 행	개정안
<p>分請求書”라 한다)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p> <p>1. 保安觀察處分을 請求받은 者(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姓名 기타 被請求者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p> <p>2.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p> <p>④檢事は 保安觀察處分請求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處分請求書謄本을 被請求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第9條 (調査) ①檢事は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觀察處分請求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保安觀察處分對象者,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保安觀察處分을 필요로 하는 資料를 調査할 수 있다.</p> <p>第10條 (審査)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法務部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의 命을 받은 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權限을 가진다.</p> <p>2.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의 照會 및 關係資料의 제출요구</p> <p>第11條 (保安觀察處分の 免除) ①法務部長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중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者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을 하지 아니하는 決定(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求書”라 한다)를 法務部長官에게 <u>제출한다.</u></p> <p>1. 保安觀察處分이  청구된 자(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姓名 기타 被請求者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p> <p>2. <u>請求 원인이</u> 되는 사실</p> <p>④檢事は 保安觀察處分請求를 <u>할 때에는</u> 지체없이 處分請求書謄本을 被請求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第9條 (調査) ①檢事は <u>7조에서 규정</u> <u>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기 위하여</u> <u>필요한 경우에는</u> 保安觀察處分對象者,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保安觀察處分을 필요로 하는 資料를 調査할 수 있다.</p> <p>第10條 (審査)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u>따라서</u> 審査를 위하여 <u>필요할 때에는</u> 법무부소속공무원에게 調査하게 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u>따라서</u> 調査를 <u>命</u> 받은 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權限을 가진다.</p> <p>2.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게 照會 및 關係資料의 제출요구</p> <p>第11條 (保安觀察處分の 免除) ①法務部長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중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u>자에게는</u> 保安觀察處分을 하지 아니하는 決定(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2. 일정한 住居와 生業이 있을 것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요건을 갖춘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月내에 保安觀察處分免除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檢事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요건을 갖춘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情狀을 參照하여 危險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免除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④免除決定을 받은 者가 그 免除決定要件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은 免除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p> <p><b>第12條</b>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 ④ 委員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p> <p>⑤위촉된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은 그 職을 免한 때에는 委員의 資格을 상실한다.</p> <p>⑨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案을 審議·議決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保安觀察處分 또는 그 棄却의 決定</li> <li>2. 免除 또는 그 取消決定</li> <li>3. 保安觀察處分の 取消 또는 期間의 更新決定</li> </ol> <p>⑩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을 포함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p>	<p>2. <u>일정한 사는곳과 직업이 있을 것</u>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요건을 갖춘 保安觀察處分對象者가 <u>申請이 있으면</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月내에 保安觀察處分免除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檢事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요건을 갖춘 保安觀察處分對象者는 <u>사정을 고려하여 危險性이 없다고 인정되면</u> 法務部長官에게 免除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④免除決定을 받은 者가 그 免除決定要件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은 免除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p> <p><b>第12條</b>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 ④ 委員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u>임명 또는 부탁한다</u>.</p> <p>⑤<u>부탁받은 委員은</u> 任期를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은 <u>면직되면</u> 委員의 資格을 상실한다.</p> <p>⑨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案을 審議·議決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保安觀察處分 또는 그 <u>배제 決定</u></li> <li>2. 免除 또는 그 取消決定</li> <li>3. 保安觀察處分の 取消 또는 期間의 <u>연장 결정</u></li> </ol> <p>⑩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을 포함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p>

현 행	개정안
<p>①委員會의 운영·庶務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13條</b> (被請求者の 資料提出등) ① <b>被請求者</b>는 處分請求書謄本을 송달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法務部長官 또는 委員會에 書面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陳述하고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p> <p>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請求者 및 기타 關係者를 출석시켜 審問·調査하거나 公務所 기타 公·私團體에 대하여 照會할 수 있으며, 關係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第14條</b> (決定) ①保安觀察處분에 관한 決定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法務部長官이 <b>행한다</b>.</p> <p>②法務部長官은 委員會의 議決과 다른 決定을 할 수 없다. 다만, 保安觀察處分對象者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보다 유리한 決定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第15條</b> (議決書등) ①委員會의 議決은 이유를 붙이고 委員長과 出席委員이 記名捺印하는 文書로써 행한다.</p> <p>②法務部長官의 決定은 이유를 붙이고 法務部長官이 記名·捺印하는 文書로써 행한다.</p> <p><b>第16條</b> (決定의 取消등) ①檢事は 法務部長官에게 保安觀察處分の 取消 또는 期間의 更新을 請求할 수 있다.</p> <p>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은 때에는 委員會의 議</p>	<p>①委員會의 운영·<b>사무</b>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13條</b> (被請求者の 資料提出등) ① <b>청구받은자</b>는 處分請求書謄本을 송달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法務部長官 또는 委員會에 書面으로 자기에게 <b>그 다음날에</b> 사실을 陳述하고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p> <p>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請求者 및 기타 關係者를 출석시켜 審問·調査하거나 公務所 기타 <b>公·私團體에게</b> 照會할 수 있으며, 關係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第14條</b> (決定) ①保安觀察處분에 관한 決定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法務部長官이 <b>한다</b>.</p> <p>②法務部長官은 委員會의 議決과 다른 決定을 할 수 없다. 다만, 保安觀察處分對象者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보다 유리한 決定을 <b>할 때에는 그 령지 않다</b>.</p> <p><b>第15條</b> (議決書등) ①委員會의 議決은 이유를 붙이고 委員長과 出席委員이 記名捺印하는 文書로써 <b>한다</b>.</p> <p>②法務部長官의 決定은 이유를 붙이고 法務部長官이 記名·捺印하는 文書로써 <b>한다</b>.</p> <p><b>第16條</b> (決定의 取消등) ①檢事は 法務部長官에게 保安觀察處分の 取消 또는 期間의 <b>연장을</b> 請求할 수 있다.</p> <p>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b>따라서</b> 請求를 받은 때에는 委員會의 議</p>

현행	개정안
<p>決을 거쳐 이를 審査·決定하여야 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와 그 請求의 審査·決定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請求 및 審査決定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b>第17條</b> (保安觀察處分の 執行) ②第1項의 指揮는 決定書謄本을  첨부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p> <p>③檢事は 被保安觀察者가 도주하거나 1月이상 그 所在가 불명한 때에는 保安觀察處分の 執行中止決定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p> <p><b>第18條</b> (申告事項) ①保安觀察處分을 받은 者(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保安觀察處分決定告知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住居地를 관할하는 支署 또는 派出所의 長(이하 “支·派出所長”이라 한다)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제공하는 居所를 住居地로 申告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原籍, 本籍, 住居(실제로 生活하는 居處), 姓名, 生年月日, 性別, 住民登錄番號</li> <li>2. 家族 및 同居人 狀況과 交友關係</li> <li>7. 保安觀察處分對象者 申告를 행한 管轄警察署 및 申告日字</li> </ol> <p>②被保安觀察者는 保安觀察處分決定告知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每3</p>	<p>決을 거쳐 이를 審査·決定하여야 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u>따라서</u> 請求와 그 請求의 審査·決定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請求 및 審査決定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b>第17條</b> (保安觀察處分の 執行) ②제1항의 지휘는 <u>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서면으로 한다.</u></p> <p>③檢事は 被保安觀察者가 도주하거나 1月이상 그 所在가 불명한 때에는 保安觀察處分の 執行中止決定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u>없어지면</u> 지체없이 그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p> <p><b>第18條</b> (申告事項) ①保安觀察處分을 받은 者(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保安觀察處分決定告知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住居地를 관할하는 <u>支署(삭제)</u> 또는 派出所의 長(이하 “支·派出所長”이라 한다)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제공하는 居所를 住居地로 申告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原籍(삭제)</u>, 本籍, 住居(실제로 生活하는 居處), 姓名, 生年月日, 性別, 住民登錄番號</li> <li>2. 家族 및 同居人 狀況과 <u>친구관계</u></li> <li>7. <u>保安觀察處分對象者를 申告한 管轄警察署 및 申告日字</u></li> </ol> <p>②<u>보안관찰처분을 받은자는</u> 保安觀察處分決定告知를 받은 날이 속한 달</p>

현 행	개정안
<p>月이 되는 달의 末日까지 다음 各號의 사항을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③被保安觀察者는 第1項의 申告事項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7日 이내에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被保安觀察者가 第1項의 申告를 한 후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거나 第20條第5項에 의하여 居所가 變更된 때에는  제공 또는 變更된 居所로 移轉한 후 7日 이내에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b>第19條 (指導)</b> ①檢事 및 司法警察官吏는 被保安觀察者의 再犯을 방지하고 健全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指導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被保安觀察者와 <b>긴밀한 接觸</b>을 가지고 항상 그 行動 및 環境등을 觀察하는 것</li> <li>被保安觀察者에 대하여 申告事項을 이행함에  적절한 指示를 하는 것</li> </ol> <p>②檢事 및 司法警察官은 被保安觀察者의 再犯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保安觀察該當犯罪를 범한 者와 의 會合·通信을 금지하는 것</li> <li>被保安觀察者의 보호 또는 調査를 위하여 特定場所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li> </ol>	<p>부터 每3月이 되는 달의 末日까지 다음 各號의 사항을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③被保安觀察者는 第1項의 申告事項에 <b>바뀐 것이 있으면</b> 7日 이내에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被保安觀察者가 第1項의 申告를 한 후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거나 第20條第5項에 <b>따라서 居所가 바뀐 때에는  제공 또는 바뀐 주소로 이전한 후</b> 7日 이내에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b>第19條 (指導)</b> ①檢事 및 司法警察官吏는 被保安觀察者의 再犯을 방지하고 健全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指導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被保安觀察者와 <b>긴밀한 만남</b>을 가지고 항상 그 行動 및 環境등을 <b>살피는 것</b></li> <li><b>保安觀察를 받은 자에게</b> 申告事項을 <b>이행하기 적절하게</b> 指示를 하는 것</li> </ol> <p>②檢事 및 司法警察官은 被保安觀察者의 再犯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保安觀察該當犯罪를 범한 <b>者와 모 입을 갖거나</b> 通信을 금지하는 것</li> <li><b>保安觀察를 받은 자를 보호</b> 또는 調査를 위하여 特定場所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li> </ol>

현행	개정안
<p><b>第20條 (보호)</b> ①檢事 및 司法警察官吏는 被保安觀察者가 自助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自衛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住居 또는 就業을 알선하는 것</li> <li>2. 職業訓練의 機會를 제공하는 것</li> <li>3. 環境을 개선하는 것</li> <li>4. 기타 本人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援助를 하는 것</li> </ol> <p>③法務部長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중 國內에 家族이 없거나 家族이 있어도 引受를 거절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居所를 제공할 수 있다.</p> <p>④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에 대한 居所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正當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b>第20條 (보호)</b> ①<u>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보안관찰을 받은 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을 바로잡고 방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u></p> <p>②第1項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住居 또는 <u>일자리</u>를 알선하는 것</li> <li>2. 職業訓練의 機會를 제공하는 것</li> <li>3. 環境을 <u>고치는 것</u></li> <li>4. 기타 <u>본인의 건전한 사회복지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u></li> </ol> <p>③法務部長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u>保安觀察를 받은 자중에서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함께 사는 것을 거절당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u></p> <p>④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u>保安觀察를 받은 者에게 거소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正當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u></p>
<p><b>第26條 (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則등)</b></p> <p>①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계기된 者에 대한 保安觀察處分에 관하여는 國防部長官은 法務部長官의, 軍事法院檢察官은 檢事의, 軍司法警察官吏는 司法警察官吏의 이 법에 의한 職務를 행한다.</p> <p>②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계기된 者에 대한 保安觀察處分</p>	<p><b>第26條 (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則등)</b></p> <p>①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u>해당하는 자에</u> 대한 保安觀察處分에 관하여는 國防部長官은 法務部長官의, 軍事法院檢察官은 檢事의, 軍司法警察官吏는 司法警察官吏의 이 법에 의한 職務를 행한다.</p> <p>②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u>해당하는 者에</u> 대한 保安觀察處分을</p>

현 행	개정안
<p>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防部に 軍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를 둔다.</p> <p>④國防部長官 또는 軍事法院檢察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b>게기된 者</b>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事案을 法務部長官 또는 檢事에게 移送한다. 이 경우 移送전에 한 審査 또는 調査는 移送후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p> <p>⑤法務部長官 또는 檢事は 保安觀察處分對象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b>게기된 者</b>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事案을 國防部長官 또는 軍事法院檢察官에게 移送한다. 이 경우 移送전에 한 審査 또는 調査는 移送후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p> <p><b>第27條 (罰則) ①</b>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가 保安觀察處分 또는 保安觀察을 免脫할 目的으로 隱身 또는 逃走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②정당한 이유없이 第6條第1項・第2項 및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그 申告를 함에 있어서 居住豫定地나 住居地를 명시하지 아니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⑤保安觀察處분에 관한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正當한 이유없이 그 職務遂行을 거부 또는 그 職務</p>	<p>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防部に 軍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를 둔다.</p> <p>④國防部長官 또는 軍事法院檢察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b>해당하는 者</b>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b>해당 事案</b>을 法務部長官 또는 檢事에게 移送한다. 이 경우 移送전에 한 審査 또는 調査는 移送후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p> <p>⑤法務部長官 또는 檢事は 保安觀察處分對象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b>해당하는 者</b>임이 명백한 때에는 해당 事案을 國防部長官 또는 軍事法院檢察官에게 移送한다. 이 경우 移送전에 한 審査 또는 調査는 移送후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p> <p><b>第27條 (罰則) ①</b>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가 <b>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숨거나 도망한(달아난)</b>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②정당한 이유없이 第6條第1項・第2項 및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그 <b>申告하면서</b> 居住豫定地나 住居地를 명시하지 아니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⑤保安觀察處분에 관한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正當한 이유없이 그 職務遂行을 거부 또는 그 職務를 유</p>

현행	개정안
<p>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이하의懲役 또는 5년이하의資格停止에處한다.</p> <p>⑥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를 은닉하거나 逃走하게 한者는 2년이하의懲役に處한다. 다만, 親族·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이 本人을 위하여 本文의 罪를 범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p> <p>⑦保安觀察處分の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第11條의 身元保證을 한 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保安觀察處分對象者에 관하여 이 法에 의하여 知得한 事實을 公表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懲役 또는 5년이하의資格停止에處한다.</p>	<p>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이하의懲役 또는 5년이하의資格停止에處한다.</p> <p>⑥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를 은닉하거나 逃走하게 한者는 2년이하의懲役に處한다. 다만, 親族·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이 本人을 위하여 本文의 罪를 범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p> <p>⑦保安觀察處分の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第11條의 身元保證을 한 <u>자가 이 법을 통하여 알게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때에는 .....처한다.</u></p>

## 참고문헌

- 강현철,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 고영신, 법률용어 바로쓰기, 사법연수25, 2000.10.
- 국회법제실,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기관 합동회의, 국회법제실, 2004.
- 김용준, 교정법학, 박영사, 2001.
- 류창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박영도, 法令用語에 관한 研究 : 用語整備를 위한 基礎理論, 한국법제연구원, 1995.
- 배종대/ 정승환 공저, 행정학, 홍문사, 2002.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제2집, 상,하, 법제처, 2003.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 일상생활공용법령용어, 법제처, 1996.
- 신각철,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기 용어의 정비, 새국어생활 95.6, 국립국어연구원, 1995
- 신근호, 법령순화사업의 발전방향과 관련사례 연구, 법제 통권 제423호, 법제처, 1993.9.
- 이상희, 법률 한글화작업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글사랑 14, 2000.8.
- 정완/윤동호/김정태 공저, 형사법령용어의 순화(醇化)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3.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문가회의자료집, 2002.

참 고 문 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형자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9.

허계욱, 교정학, 법문사, 2003.